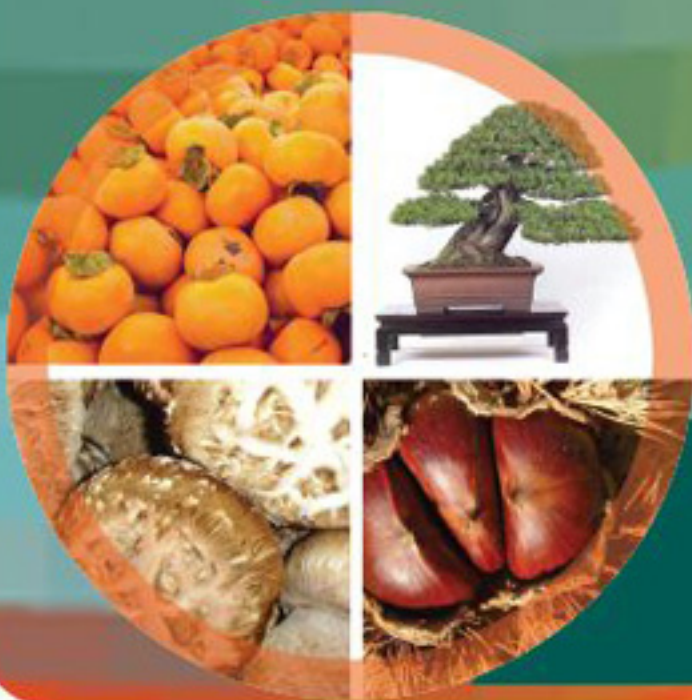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2012. 11



| 탈삼감 | 밤 | 표고 버섯 | 분재 |

■ 탈삼감

01. 브라질 13

- 1. 과일생산과 감생산 15
- 2. 과일수요와 유통 21
- 3. 시장가격 28
- 4. 시장과 외부요인 30
- 5. 수출입동향 31
- 6. 시장동향 41
- 7. 시장전망 42
- 8. 참고자료 43

02. 중국 45

- 1. 생산동향 47
- 2. 수출입 동향 51

■ 밤

01. UAE(아랍에미리트연합) 59

- 1. 수요동향 61
- 2. 경제동향 64
- 3. 유통구조 67
- 4. 참고자료 69



| | |
|--------------------------|-----------|
| 02. 사우디아라비아 | 83 |
| 1. 국가개요 | 85 |
| 2. 밤 수입업자 및 수입현황 | 88 |
| 3. 향후 밤 취급 가능 업체 | 90 |
| 4. 밤 시장규모 | 91 |
| 5. 밤 유통경로 | 92 |
| 03. 중국 | 95 |
| 1. 생산현황 | 97 |
| 2. 생산전망 | 99 |
| 3. 수출입 동향 | 101 |
| 4. 소비현황 | 1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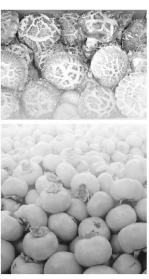
표고버섯

| | |
|---------------------------|------------|
| 01. 미국 | 109 |
| 1. 시장동향 | 111 |
| 2. 수출입 동향 및 수입관련 제도 | 114 |
| 3. 유통구조 및 소비동향 | 126 |
| 4. 한국산 수출확대 전략 | 134 |
| 02. 중국 | 137 |
| 1. 생산동향 | 139 |
| 2. 생산전망 | 142 |
| 3. 수출입 동향 | 144 |

■ 분재

| | |
|------------------------|-----|
| 01. 중국 | 149 |
| 1. 생산동향 | 151 |
| 2. 수입 관련정책 및 제도 | 165 |
| 3. 유통구조 및 주요 바이어 | 170 |
| 4. 수출 확대방안 | 177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조사결과(요약)

탈삼감

브라질

□ 생산동향

- 브라질은 과일생육에 적합한 기후조건으로 세계 세 번째로 과일 생산량이 많음. 감은 상파울루, 파라나 강 리오그란데 도술, 산타카타리나,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2~6월 수확하며 헥타르당 생산량은 15~35톤임. 2009년 8,740헥타르에서 171천 톤 생산되었으며, 브라질 과일 생산량의 0.42%를 차지하였음

□ 유통동향

- 가장 상업화된 감 품종은 Rama Forte이고, 대형유통업체 식료품 소매점, 편의점, 인터넷을 통해 신선 구매가 가능함

□ 수입동향

- 브라질은 감 수확이 없는 9~10월 사이에 감을 수입하며 스페인 산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매가격은 수확기 브라질산의 4배에 달함

□ 수입관세

-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사용하며 감수입시에는 수입관세, 공업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 적용되며, 한국산 감은 아직 수입허가목록에 없으므로 사전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걸쳐야 함



중 국

□ 생산동향

- 중국의 감은 대부분이 뚝은 감으로 성숙 후 탈삼을 거쳐야 식용이 가능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 생산량은 연평균 15% 증가함. 2010년 320만 톤을 생산함. 감의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2011년 360톤, 2012년 420톤 생산이 전망됨
- 2012년 8월 감의 가격은 2.9원/kg, 4월엔 7.23원/kg까지 상승했었음

□ 수출입동향

- 2012년 1~6월분 신선 감 수출은 주로 1~3월에 집중돼 있고 그중 2월 신선 감의 수출량이 687톤, 266천불로 가장 높았음. 주로 홍콩으로 78%이상 수출되고 베트남, 태국 순임. 이 기간 동안 수입량은 16톤으로 대만에서 신선 감을 수입함

밤

UAE(아랍에미리트연합)

□ 수입동향

- 밤 시장은 주로 중국산이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2011년 수입은 1,975천 달러로 전체 수입의 93%임. 한국산 밤도 수입이 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함

□ 소비동향

- 생밤, 군밤, 껍질 깬 밤, 가공 밤 등이 있고, 밤가루, 밤잼, 밤시럽 제품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가공밤은 껍질 깬 밤이 인기가 있고, 소비자들도 간이매점(Kiosk)나 슈퍼마켓에서 생밤보다 가공 밤을 선호함



□ 수출시 고려사항

- 해외 업체들은 원활한 물량공급, 원활한의사소통을 위해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함. 한국 업체 진출 시 UAE(아랍에미리트연방)와 중동국가에서 인기 있는 캐스타니아(Castanea)와 같이 거래량이 많은 유통업체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산 밤을 고려해 가격 책정을 해야 함
- 밤을 포함한 식품류를 수출 시 각 에미리트 식품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규정에 따른 라벨링을 마쳐야 함.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을 제외한 국가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됨

사우디아라비아

□ 수입동향

- 사우디 통계청은 밤과 밤 가공품이 수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사우디 내 밤을 수입하는 업체는 10개 이상이며, 업계에서는 밤수입규모를 20피트 60~80컨테이너로 추정함. 밤은 냉장 컨테이너로 9~12월 사이 수입되고, 1kg망으로 소포장되어 수입됨. 가격은 10kg에 10~12달러임

□ 유통동향

- 밤은 시장이 크지 않아 소규모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가 수입하지는 않음. 밤 수입업자 대부분은 냉장보관시설과 창고, 판매망을 갖고 있어서 자체로 밤을 유통시킴. 유통경로는 수입업자의 중앙창고시설에서 전국에 있는 창고시설로 가고 대형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1kg에 3달러 정도임

□ 소비동향

- 소매점에서 판매중인 밤 가공품은 시럽 밤과 구운밤이 판매되며 구운밤은 중국산으로 1.47달러임. 일반적으로 수입된 생밤은 찌서 먹거나 생으로 소비함



중 국

□ 생산동향

- 중국의 밤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수출량은 국제시장의 40%를 차지함. 2010년도 밤 생산량은 약 170만 톤으로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180~200, 200만 톤으로 추정됨

□ 수출입동향

- 2011년 밤 수입량은 총 9,289톤이고, HS08024010/신선, 건조(탈각, 비탈각 포함) 밤 수입량이 9,197톤에 달함. 이 코드에서는 한국산 밤 수입량이 8,620톤임
- HS08024010 품목 2011년 수출량은 일본 7,397톤으로 가장 많고, 태국, 대만이 그 뒤를 이음

□ 소비동향

- 밤 소비지역은 광범위하고 1인당 소비량은 0.7kg임. 간식용 소비 추세여서 구운 밤 전문점이 많음. 설탕군밤 소비가 대부분이며 대,중도시, 특히 연안도시지역에서 소비가 많음. 생밤, 당수밤, 냉동설탕밤, 밤가루 순으로 선호함
- 밤의 시장가격은 6~12원/kg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했으며 2012년 올해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표고버섯

미 국

□ 생산동향

- 표고버섯은 양송이, 느타리버섯에 이어 세 번째로 생산이 많은 버섯으로 미국 현지에서도 생산량이 타 버섯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2010년도 생산량이 6,702천 파운드이고 파운드당 가격은 2.99 달러임



□ 수출입동향

- 현재 중국이 세계 표고버섯 생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현지에 수입되는 건조 표고버섯의 95%이상이 중국산임. 미국 표고버섯 생산은 2008/2009년 시즌과 2010/2011시즌은 31% 감소했는데, 이는 표고버섯 수입 증가와 단가 하락에 의해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추측됨
- 한국의 대미 표고버섯 수출은 신선/냉장 제품은 단가 하락으로 2011년 6월 기준 1.32톤에서 2012년 6월 8.87톤으로 증가했고, 건조 표고버섯은 미미한 단가 상승이 있었고, 7.68톤에서 6.15톤으로 감소함.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한국 건조 표고버섯 “마수아”, “청림” 브랜드가 한국 토산물 특별코너에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판매율이 낮음. 신선 표고버섯은 중국산과 미국산이 유통되고 있으나 중국산이 약품 냄새가 강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함

□ 유통현황

- 포장된 건조표고버섯은 대부분이 중국산인데 한국식품 전문점과 레스토랑 아시안 푸드 전문 식당에도 중국산이 납품되고 있음
- 미국산 신선 표고버섯은 파운드당 2~4불선이고 등락폭이 거의 없음. 한국산은 1kg당 17,000원 선이며 미국산 최상품은 1kg당 5,280원임. 건조 표고버섯은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파운드당 1불 미만에서 3불을 넘기지 않고, 미국산 건조 표고버섯은 약 5~10불 정도임. 한인 식품점을 제외하면 한국산 표고버섯은 일부 대형 식품매장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어 중국산과 미국산 대비 차별성을 요함

중 국

□ 생산동향

- 중국 표고버섯은 절강성, 호북성, 하남성, 허북성 위주의 4대 생산구역으로 나뉘는데, 호북성 건조버섯 생산량과 수출규모가 전국 1위임. 2010년도 표고버섯 생산량은 427만 톤이고 세계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함. 2011년과 2012년은 3년간 수치에 근거해 각각 생산량 503.8만 톤과 277만 톤으로 추정함



□ 수출입동향

- 건조 표고버섯은 주로 미국, 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올해 1~6월 수입량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함. 일본산은 2011년 신선 표고버섯 30kg을 수입한 후, 올해 2012년 6월까지 수입이 없음
- 신선표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인데, 2011년 대비 2012년 총 수출량은 늘었지만, 주요 국가의 수출량은 감소추세임. 중국의 수출량 1위인 일본은 2011년 5,413톤을 수입함. 건조표고는 베트남, 홍콩이 주요수출국인데 마찬가지로 1위인 베트남은 전년도말 25,184톤에서 2012년 6월기준 5,21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2012년 3월 실시한 수출 환급세 취소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함

■ 분재

중 국

□ 생산동향

- 중국의 2010년 분재 재배면적은 14,007.7헥타아르이고, 매출량이 31,374만불, 수출액은 1,985.7만 불임. 품종은 섬잣나무, 나한송, 홍계목, 홍두삼, 비술나무, 단풍나무, 곰솔, 화극, 원백, 대절백랍 등이 있음. 홍두삼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중국 임업국에서 “홍두삼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함
- 분재 형식은 수목, 산수, 수한, 화초, 미니, 공예, 이형 분재가 있음.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어 분재의 유파도 상당히 많고 전통분재가 발전하여 새로운 유파가 많이 생겨났음

□ 수입동향

- 중국 분재는 별도의 HS코드가 없고, 0602(기타 산 식물(뿌리를 포함), 삼수, 접수 및 버섯의 종균)에 포함돼 있어 수입동향 분석은 어려움. 바이어 탐문 조사에 의하면 연간 분재 수입액은 2~3억 위안(30~50백만불) 수준으로 주 수입국은 일본(90%), 대만(10%)임. 중국은 분재 수입시 쿼터제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최혜국 관세율(한국산 적용)은 10~15%임



□ 유통동향

- 수목종류, 모양, 스타일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큼. 일본산 적송 상급이 약 80만 위안(약 144백만원)이며, 중국산의 경우 10만 위안(약 18백만원) 내외 가격임.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선호하고 시장성이 좋은 품종은 소나무임
-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분재는 일본, 대만산이 대부분이고, 중국 바이어가 한국산 분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함

탈 삽 감

브라질

1. 과일생산과 감생산
2. 과일수요와 유통
3. 시장가격
4. 시장과 외부요인
5. 수출입동향
6. 시장동향
7. 시장전망
8. 참고자료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1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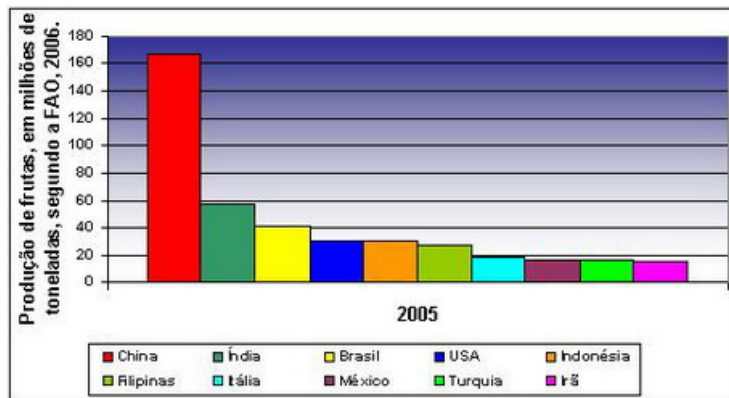
1 과일생산과 감생산

1) 생산 동향

- 브라질은 기후의 다양성, 규칙적인 강수, 태양 에너지, 풍부한 수자원, (지구 식용수자원의 약 13%) 9천만 헥타르의 비옥한 토지를 보유함
- 브라질은 커피, 콩, 육류, 오렌지 주스의 주요 수출국이며 라틴 아메리카의 유력 경제국가임
- 브라질의 과일류 경작은 최근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국내시장과 수출시장 규모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 통계청(IBGE)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2005년 총 과일류 생산량은 약 3,800만 톤이며 생산면적은 230만 헥타르임
- 브라질은 2005년 기준 중국(16,800만 톤)과 인도(5,800만 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의 과일 생산국임. 과일 생산의 약 45%는 오렌지(1,690만 톤), 바나나 680만 톤임

《 국별 과일생산량(2005년) 》

(단위 : 백만톤)



자료) FAO 2006,

Toda Fruta – www.todafruta.com.br/portal/icNoticiaAberta.asp?idNoticia=9773

- 브라질은 넓은 영토와 지리적 위치, 토양, 과일 생육에 적합한 기후조건으로 생산량이 풍부함. 북동부지역은 관개가 되고 고온이 1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생산이 보장되어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 과일들이 생산됨. 건조하고, 태양광이 높은 지역은 품질이 좋은 곡물이 생산되며 질병이 많지 않음
- 북부 지역의 열대 기후는 매우 습해서 이국적인 전통 과일 재배가 용이하고, 대중적이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소비되는 다양한 과실 종도 재배되고 있음
- 브라질의 남동부 기후는 온화하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생산되며 특히 오렌지 재배가 대규모화되었음
- 남부는 온대기후가 뚜렷하고, 계절성 온대기후 과일이 생산되는 것이 특징임. 동부지역은 바이아(Bahia) 남부와 리우데자네이루(Rid de Janeiro) 북부로 구성되며, 토양과 기후조건이 열대, 아열대, 온대기후 과실 재배에 적합함
- 과일재배는 6백만 명을 고용하고, 13.2십억 달러의 GDP를 발생시키며 집약적이고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며 헥타르 당 총 매출액은 1,000~ 20,000 헤알(R\$)임

| 지역별 과일 생산 비중 | |
|--------------------|-------|
| 북부 | 6.1% |
| 북동부 | 27.0% |
| 중앙 서부(Center West) | 2.7% |
| 남동부 | 49.8% |
| 남부 | 1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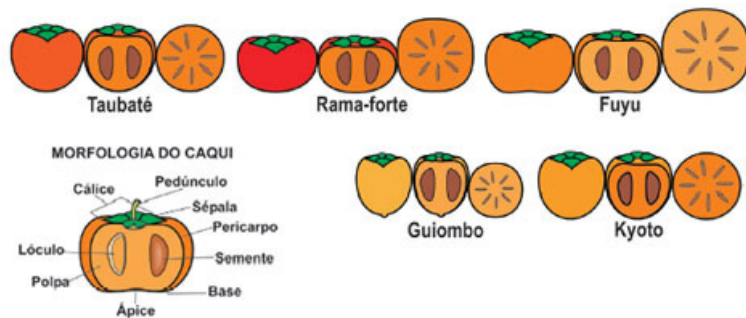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과일 산업, 새 시장으로 성장 - IBRAF (브라질 과일 협회)

2) 브라질의 감 생산동향

- 2005년 기준 세계의 감 생산국은(FAO, 2007) 중국(1,837톤), 일본(285,000톤), 한국(250,000톤), 그리고 브라질(150,000톤)순임. 브라질이 세계에서 감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 속하지만, 감 재배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 것임. Martins and Pereira (1989)에 따르면, 19세기말에 상파울루에 감이 소개되었고, 1920년 이후에 일본인 과수 농부가 정착하여 감 생산기술을 도입하였고, 그 이후 여러 종류의 감 생산이 대량 확대되었음

- 브라질에서 감은 상파울루(Sao Paulo), 파라나 강(Parana), 리오그란테 도 술(Rio Grande do Sul),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에서 재배되고 있음 수확은 2월과 6월에 하며, 헥타르 당 수확량은 15~ 35톤 사이임
- 브라질 시장에는 10월에 수입산 감이 공급되며, 스페인과 이스라엘에서 감을 수입하고 있음. 수입산 감은 브라질 감생산기의 소비자가격보다 훨씬 높은 네 배가량에 팔리고 있음

《 감의 품종별 단면 모습 》



Source : Bertoldo Borges Filho/CQH-Centro de Qualidade em Horticultura da CEAGESP

《 감 품종별 특징 》

| 품종명 | 색깔 | 모양 | 식감 | 맛 | 생산 시기 |
|--------------------|-----|--------|------|-----|--------|
| 타우바테 (Taubate) | 빨강 | 구 | 부드러움 | 타닌 | 계절적 변동 |
| 라마포르테 (Rama-Forte) | 빨강 | 납작함 | 부드러움 | 가변적 | 2월~6월 |
| 푸유(Fuyu) | 오렌지 | 둥글고 납작 | 아삭함 | 달콤함 | 2월~6월 |
| 교토(Kyoto) | 오렌지 | 타원형 | 아삭함 | 달콤함 | 3월~5월 |
| 귀움보 (Guiombo) | 오렌지 | 타원형 | 아삭함 | 가변적 | 2월~6월 |

자료) Bertoldo Borges Filho/Technique of CQH - 원예 품질 센터 CEAGESP

- 브라질의 2009년 과일 생산량은 4,100만 톤으로 이중 감 생산량은 8,740헥타르에서 171천 톤이 생산되었으며, 과일 생산량의 0.42%를 차지하였음

《 2009년 브라질 과일별 생산면적, 생산량, 생산금액, 비중 》

| 과일품목 | 면적(ha) | 물량(톤) | 금액(천레알) | 비중 |
|-----------------|-----------|------------|------------|--------|
| Laranja 오렌지 | 802,528 | 17,618,450 | 4,695,049 | 42.93 |
| Banana 바나나 | 483,562 | 6,783,482 | 3,160,040 | 16.53 |
| Abacaxi 파인애플 | 61,990 | 2,978,256 | 1,076,305 | 7.26 |
| Melancia 수박 | 94,871 | 2,056,309 | 707,217 | 5.01 |
| Coco-da-baia | 284,951 | 1,973,366 | 755,883 | 4.81 |
| Mamao | 34,379 | 1,792,594 | 1,348,294 | 4.37 |
| Uva 포도 | 81,677 | 1,365,491 | 1,612,043 | 3.33 |
| Maca | 39,081 | 1,222,885 | 943,761 | 2.98 |
| Manga | 75,416 | 1,197,694 | 602,125 | 2.92 |
| Tangerina만다린오렌지 | 54,909 | 1,094,429 | 524,944 | 2.67 |
| Limao 레몬 | 41,388 | 972,437 | 435,330 | 2.37 |
| Maracuja | 50,853 | 718,798 | 674,002 | 1.75 |
| Melao | 17,559 | 402,959 | 269,379 | 0.98 |
| Goiaba 석류 | 15,048 | 297,377 | 213,482 | 0.72 |
| Pessego 복숭아 | 19,102 | 216,236 | 244,359 | 0.53 |
| Caqui-persimmon | 8,740 | 171,555 | 146,674 | 0.42 |
| Abacate 아보카도 | 8,509 | 139,089 | 66,158 | 0.34 |
| Figo 무화과 | 3,072 | 24,146 | 37,692 | 0.06 |
| Pera 배 | 1,404 | 14,856 | 18,317 | 0.04 |
| Marmelo | 211 | 975 | 1,614 | 0.00 |
| 총계 | 2,179,250 | 41,041,384 | 17,532,668 | 100.02 |

자료) 브라질의 지리 및 통계 협회(IBGE)

- 상파울루 주는 감 생산지 약 4,296헥타르가 분포하고 있고(LUPA-CATI, 1995/96; IBGE, 2002), 상파울루터미널 창고 켄타레스(CEAGESP)에서 출하된 감은 43,700 톤으로 감이 감 생산의 92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상업화된 품종은 Rama Forte(28,000톤)임
- 많은 종류의 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세 가지 종류의 감이 있음

- 뚝은감(Shibugaki) 또는 탄닌산(tannins), 비탄닌산(non-tannins) 또는 단감(Amagaki), 그리고 변종이 있으며 감 재배 방법은 접목임

《 2001~2005 브라질 감생산량, 면적, 생산성 》

(단위 : 톤,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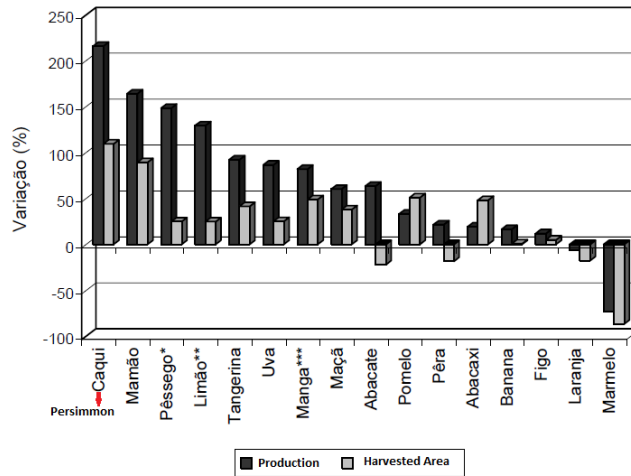
| 항목 | 상파울루 | 리오그란데 도술 | 파라나 강 | 리우데자 네이루 | 미нас 제라이스 | 산타카타리나 |
|-----------|--------|-------------|--------|-------------|--------------|--------|
| 생산량(톤) | | | | | | |
| 2001년 | 82,854 | 17,177 | 16,751 | 10,107 | 2,452 | 1,664 |
| 2002년 | 81,186 | 18,386 | 18,758 | 18,455 | 2,576 | 1,902 |
| 2003년 | 89,820 | 25,218 | 17,141 | 18,277 | 4,928 | 2,646 |
| 2004년 | 86,815 | 27,139 | 22,938 | 18,090 | 4,441 | 2,771 |
| 2005년 | 83,393 | 28,732 | 26,071 | 19,040 | 5,360 | 2,154 |
| 평균 | 84,814 | 23,330 | 20,332 | 16,794 | 3,951 | 2,227 |
| 수확면적(ha) | | | | | | |
| 2001년 | 3,119 | 1,593 | 1,221 | 611 | 191 | 157 |
| 2002년 | 2,955 | 1,627 | 1,365 | 636 | 203 | 164 |
| 2003년 | 3,017 | 1,906 | 1,211 | 621 | 499 | 210 |
| 2004년 | 3,076 | 1,963 | 1,756 | 613 | 451 | 245 |
| 2005년 | 3,136 | 2,045 | 1,733 | 643 | 527 | 217 |
| 평균 | 3,061 | 1,827 | 1,457 | 625 | 374 | 199 |
| 생산성(톤/ha) | | | | | | |
| 2001년 | 25.56 | 10.78 | 13.72 | 16.54 | 12.84 | 10.60 |
| 2002년 | 27.47 | 11.30 | 13.74 | 29.02 | 12.69 | 11.60 |
| 2003년 | 29.77 | 13.23 | 14.15 | 29.82 | 9.86 | 12.60 |
| 2004년 | 28.22 | 13.83 | 13.06 | 29.51 | 9.85 | 11.31 |
| 2005년 | 26.59 | 14.05 | 15.04 | 29.61 | 10.17 | 9.93 |
| 평균 | 27.71 | 12.77 | 13.95 | 26.87 | 10.56 | 11.19 |

자료) IBGE (2007)

- 감의 주요 생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991~2005년 사이 증가한 과일재배량을 보면 감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FAO(2007)에 따르면, 1991~2005년까지 감의 생산은 47,662톤에서 150,000톤으로 증가했고(214.7% 증가), 재배면적은 4,059헥타르에서 8,500헥타르로 증가함(109.4% 증가)

《 1991년 대비 2005년 브라질 16개과일 생산량과 수확면적 변화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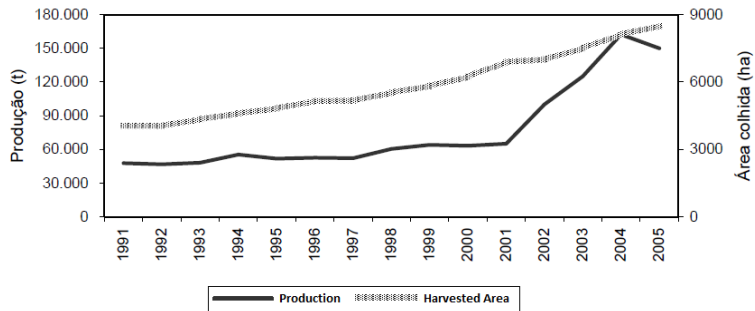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FAO (2007)

《 1991~2005 브라질의 감 생산과 수확 면적 》

(단위 : 톤, 헥타르)



자료) FAO (2007)

- 감의 생산 증가로 브라질은 많은 양의 감을 수출하게 되었음. Camargo Filho, Mazzei, Alves (2003)에 따르면, 1997~2001년 동안 감수출 평균 물량은 연 288,038kg, 수출금액은 연 250,773달러, 주요 수입국은 유럽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캐나다임

2 과일수요와 유통

- 2011년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 식료품 소매점들은 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동자인구가 증가하면서 포어코트 소매점, 편의점, 인터넷상점과 같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선한 과일을 구매하고 있음. 식료품점의 유통기술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은 상품검색·주문·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편리함 제공’은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 요소가 되었음
- 2011년에는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늘면서 신선한 과일 판매량도 증가하고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높아졌음. 전통 쌀, 카사바 이외에도 육류, 특히 가금류, 쇠고기와 채소, 과일을 구매 가능한 저소득층의 수가 증가함. 또한 중산층도 육류 중에서도 붉은 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두류, 특히 콩과 일부 채소와 같은 특정 신선 제품들은 소비가 다소 감소하였음
- 브라질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감의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탈삼 감의 수요가 커졌는데, 시장 거리가 멀지만, 식감이 좋고, 가격이 좋기 때문임
- 수입하여 유통 중인 감은 아래 사진처럼 판지 상자나 나무박스로 포장되어 유통됨

《 감 포장 및 유통 》



○ 과일 판매 관련 동향

- 총 과일 판매량은 2011년 2%(1,800만 톤)증가
- 바나나가 2011년 총 과일 판매량의 34% 차지(600만 톤)
- 오렌지와 감귤은 새로운 음료 제품 출시로 2011년 총 판매량이 5% 감소
- 딸기는 2011년 총 판매량 8% 증가
- 과일은 4%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임

《 품목별 과일 판매량 2006~2011 》

(단위 : 천 톤)

| 품목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사과 | 811.9 | 827.1 | 871.5 | 905.8 | 934.0 | 961.2 |
| 바나나 | 5,173.5 | 5,250.0 | 5,516.8 | 5,644.0 | 5,802.0 | 5,970.0 |
| 체리 | 2.1 | 2.2 | 2.3 | 2.4 | 2.6 | 2.8 |
| 크랜베리/블루베리 | 1.9 | 2.0 | 2.1 | 2.3 | 2.4 | 2.6 |
|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 | 0.5 | 0.6 | 0.6 | 0.6 | 0.6 | 0.6 |
| 포도 | 658.4 | 672.4 | 701.7 | 722.2 | 744.5 | 769.1 |
| 레몬과라임 | 462.6 | 475.8 | 497.5 | 513.5 | 530.9 | 559.0 |
| 오렌지, 감귤, 만다린 귤 | 3,107.2 | 3,167.8 | 3,280.7 | 3,360.5 | 3,451.2 | 3,286.0 |
| 복숭아/천도복숭아 | 193.0 | 199.7 | 213.6 | 226.1 | 239.6 | 254.5 |
| 배/모과 | 150.0 | 157.8 | 167.5 | 176.4 | 186.1 | 196.7 |
| 파인애플 | 1,087.5 | 1,100.9 | 1,143.3 | 1,179.0 | 1,219.1 | 1,316.0 |
| 자두/야생자두 | 36.2 | 37.1 | 40.1 | 42.8 | 45.7 | 48.7 |
| 딸기 | 59.3 | 61.4 | 66.6 | 71.1 | 76.2 | 82.0 |
| 다른과일들 | 3,531.7 | 3,610.4 | 3,805.0 | 3,942.5 | 4,096.2 | 4,268.3 |
| 합계 | 15,275.7 | 15,565.1 | 16,309.2 | 16,789.0 | 17,331.3 | 17,717.3 |

자료) Euromonitor, 무역 협회, 무역 신문, 기업 리서치, 상점 확인, 무역상, 바이어 인터뷰 자료

- 과일소비는 높은 가격과 유통 시스템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과일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사과, 포도, 파파야, 망고, 메론이며, 베이커리나 보테코스(전통 술집), 주스 바에서 신선한 과일 주스를 일상적으로 소비함. 건강을 염려하는 이들의 과일 소비가 늘어나고, 노동시간의 증가는 간편한 식사를 찾게 하여

소비자의 생활방식도 소비에 영향을 받고 있음

- CEASA는 공공공급센터(Supply Centers)로 주가 소유한 기업 또는 조인트벤처형태이며, 도매와 지역 차원의 원예(hortifructiculture) 마케팅, 홍보, 규제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있음. 주, 지역 정부와 동업관계를 맺는 Ceasas는 브라질 수도에 있음
- 브라질에 있는 Ceasas 그룹은 1,400만 톤의 작물을 취급하고, 연간 운영 재정이 100억을 넘어섬. 분권화된 네트워크와 약 40개의 행정 단위, 53개의 주요 비즈니스 단위와 많은 소규모 단위로 구성되며, 도시에 식품 공급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짐
- 미나스 제라이스(MG)의 주요매장은 전국 400개이며,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약 50,000헥타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책임을 지는데, 130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이 있음. 품질책임, 특히 과일 시장가 형성에 책임이 있음. 공공의 목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지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10,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57개의 도매 창고에 35개의 회사들이 속해 있고, 21개의 브라질 자치주에 위치해 있음
- 이 시스템은 70년대에 생겼으며, 국립 공급 시스템(SINAC)의 설립이후 전체적인 시스템이 됨. 스페인의 공적모델(Mercasa)에 기원을 두고 있음. SINAC의 첫 계획은 공급과 가격 사이의 최상의 균형을 주면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업계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역 도매상 사이의 기술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음. 자치주,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SINAC과 중앙 공급(Central Supply)으로 명명된 21개 기업들, Ceasas, 크고 작은 도시에 소재한 34개 도시 도매 시장들과 지역 도매 시장, 32개의 크고 작은 소매 시장들에 영향을 끼침
- 90년대 후반, 브라질 주와 조합에 속한 두 개의 가장 큰 도매상 Ceagesp(SP), Ceasaminas(MG)은 채무 재협상 과정에서 국가의 과일과 채소 도매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연방화되었다가 후에 민영화되었음
- 지역 도매 공급업자들의 하위 시스템으로, 큰 창고가 있어 전국유통센터의 역할을 하고 지역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브라질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씨아제스삐(CEAGES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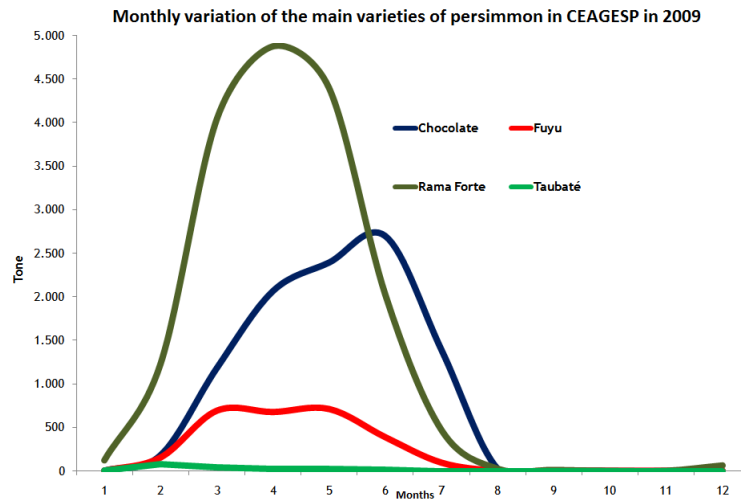


자료) 씨아제스삐(CEAGESP)

- 브라질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씨아제스삐(CEAGESP)는 13개 도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는 수도에, 12개는 주에 소재함. 생산자와 판매자, 거리 시장, 슈퍼마켓, 도매 시장, 식당과 생산 유통업자를 위한 지역생산, 유통경로임. 아라사투바(Araçatuba), 아라리콴라(Araraquara), 바우루(Bauru), 프랑카(Franca), 구아라칭게타(Guaratinguet), 마릴리아(Marília), 피라시카바(Piracicaba), 프레지덴테 프루덴테(Presidente Prudente), 히베이랑프레투(Ribeirão Preto), 상조제두스캄푸스(São José dos Campos), 상조제두히우프레투(São José do Rio Preto), 소루카바(Sorocaba), 상파울루(São Paulo)의 도소매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할인가격 제공 등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음
- 수도에 위치한 센터는 전국적·세계적으로도 상업적 규모가 크며 중요도가 높음. 만 톤 이상의 과일, 두류, 야채, 어류와 화훼류가 매일 센터를 거쳐, 상파울루 지역공급의 60%이상을 차지함. 해외 18개 국가뿐만 아니라 23개 브라질 주의 1,500개의 도시에서 도착한 다양한 생산물이 팔리고 있음. 상품을 실은 트럭은 다른 주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 700평방미터인 수도에 소재한 센터는 하루에 약 만 여대의 차량과 3만~5만 명이 유동 인구임. 씨아제스삐(CEAGESP)의 도매 센터들은 모두 한 달에 약 350만 톤을 판매하고 있음
- 곡물 창고는 처리, 건조, 세척 등 여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실을 감소시키고 생산물 상품상태를 높이는데 기여함

- 쎬아제스뻬(CEAGESP)에는 지역 생산업자, 정부 기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협력업체와 생산공장이 있고, 품질 유지를 위해 브라질 상품 선물거래소(Brazilian Commodities and Futures Exchange)가 품질을 인증함. 또한 주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보증서도 발행함. 쎬아제스뻬(CEAGESP)는 도매기능에 원예작물, 화훼, 가금류와 여타 상품들의 소매 시장인 “Varej es(큰 도매 시장)의 서비스도 있음. 첫 번째 소매 시장은 1979년 9월 상파울루 터미널 창고 내에서 시작되었으며 ESTP의 소매 시장은 현재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3회 열림. 거리 시장과 유사하지만, 품질 보증과 가격통제가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쎬아제스뻬의 소매시장은 매월 약 2000톤의 상품이 거래되며 내부 소매 시장은 소루카바(Sorocaba)에서 열림
- 1997년 쎬아제스뻬(CEAGESP)는 연방정부로 인계되어, 농축산공급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Supply) 소속임

《 2009 쎬아제스뻬(CEAGESP)의 주요 감 품종별 월별 취급량 》



자료) Horti Brasil

- CEASAMINAS는 미나스 제라이스 S/A의 중앙 공급처이면서 혼합 경제 기업이고 농축산공급부(MAPA) 산하에 있으며, 1974년 2월 28일 개관함 해당 주에 6개의 매장이 있으며, Contagem, Barbacena, Caratinga, 고베르나도르 발라다레스(Governador

Valadares), 주이즈 데포라(Juiz de Fora), 우베르랑디아(Uberlandia)에 있음
Contagem에 있는 창고는 브라질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국 원예 판매 3위임

- 모든 판매장에 698개 기업, 약 13,700명의 생산업자들이 등록돼 있고, 약 4,200명의 생산자들이 속해 있음
매해 원예작물, 곡류, 가공식품과 비식품 매출금액과 생산량은 각각 33억 헤알(R\$), 277백만 톤임

《 2010 CEASAMINAS 일반사항 》

| 정보/단위 | 콘타젼 (Grand BH) | 바르바세나 | 카라팅가 | 고베르나도르 발라다레스 | 주이즈 데포라 | 우베르랑디아 | 총 계 |
|-----------------------|-------------------|-----------|-----------|-----------------|------------|------------|--------------|
| 총면적(m ²) | 2,286,000 | 44,324.00 | 60,000.00 | 69,381.27 | 165,000.00 | 200,452.00 | 2,825,157.27 |
| 도시지역(m ²) | 1,163,006 | 11,748.59 | 15,400.00 | 49,905.00 | 20,340.00 | 110,000.00 | 1,370,399.59 |
| 건설지역(m ²) | 262,388 | 6,637.06 | 2,813.77 | 4,511.00 | 8,542.05 | 16,874.39 | 301,766.27 |
| 점유지역(m ²) | 185,551.96 | 3,340.04 | 981.10 | 1,875.85 | 6,936.78 | 6,943.58 | 205,629.31 |
| 설립 기업 | 556 | 25 | 22 | 17 | 40 | 84 | 744 |
| 등록 농부 | 11,195 | 128 | 879 | 608 | 702 | 2,118 | 15,630 |
| 활동 농부 | 2,500 | 79 | 170 | 70 | 151 | 340 | 3,310 |
| Chargers, 등록번호판 | 1,050 | 35 | 80 | 100 | 235 | 272 | 1,772 |
| 직접관련직업 | 15,000 | 134 | 300 | 115 | 630 | 1,500 | 17,679 |
| 지방 공급자 | 1,400 | 48 | 58 | 60 | 95 | 170 | 1,831 |
| 지방 바이어 | 500 | 19 | 50 | 70 | 60 | 100 | 799 |
| 평균 유동 인구(1일) | 40,000 | 850 | 1,000 | 1,200 | 3,500 | 6,000 | 52,550 |
| 최대 유동인구(1일) | 70,000 | 1,180 | 1,250 | 1,800 | 5,000 | 8,000 | 87,230 |
| 월평균 비상차차량 | 438,456 | 3,807 | 3,550 | 4,820 | 8,158 | 38,006 | 496,797 |
| 월평균 상차차량 | 25,445 | 710 | 1,438 | 1,530 | 1,260 | 5,239 | 35,622 |
| 직접 고객 | 40,000 | 650 | 700 | - | 1,500 | 2,000 | 44,850 |
| 간접 고객 | 8,500,000 | 500,000 | 450,000 | - | 1,600,000 | 2,500,000 | 13,550,000 |
| 2010, 판매량(천톤) | 2,333 | 19 | 39 | 34 | 73 | 201 | 2,699 |
| 2010, 판매금액(천불) | 3,576,867 | 23,446 | 35,958 | 40,976 | 91,076 | 255,305 | 4,023,628 |

자료) CEASAMINAS - <http://www.ceasaminas.com.br/Unidades.pdf>

- 국내외 시장 관련 브라질회사인 De Marchi(<http://www.demarchi.com.br>)는 신선 과일을 대량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상파울루(Sao Paulo),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파라나 강(Parana), 리오그란데 도 술(Rio Grande do Sul)에 있는 자체농장

에서 주로 포도, 딸기, 귤, 감, 자두 생산을 많이 함. 과일취급상들은 국내외 생산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공급처의 상품을 수입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을 제공하고 있음. 신선한 과일은 리오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캄피나스(Campinas), 상파울루(Sao Paulo), 포르탈레자(Fortaleza)의 CEASAS(도매 생산 시장)에 있는 De Marchi 소유의 상점으로 유통됨

- De Manchi는 다른 유통단위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다논(Danone), 파마랏(Parmalat)과 같은 세계적 브랜드업체를 포함하여, Casa do Pao de Queijo, Habbi's, Outback Steak House, T.G.I Friday's와 같은 식품서비스 기업과 소매상에서 거대 하이퍼마켓에 이르기까지 소매매장에도 유통하고 있음

《 브라질의 감 유통흐름 》



자료) 상파울루(Sao Paulo) 코트라(KOTRA)

3 시장가격

《 CEASA에서 판매된 수입 감(2000~2012) 》

(단위 : kg, %, US\$)

- 남부/파라나 강(PR)/CEASA-PR UNIT. 마링가(Maringa)

| 연도 | 물량(kg) | 비중(%) | 평균가격(US\$/kg) |
|-------|--------|--------|---------------|
| 2000년 | 275.00 | 78.57 | 2.66 |
| 2009년 | 75.00 | 21.43 | 0.00 |
| 총계 | 350.00 | 100.00 | 1.33 |

- 남부/파라나 강(PR)/CEASA-PR UNIT. LONDR

| 연도 | 물량(kg) | 비중(%) | 평균가격(US\$/kg) |
|-------|----------|--------|---------------|
| 2000년 | 100.00 | 6.02 | 2.26 |
| 2007년 | 1,430.00 | 86.14 | 4.96 |
| 2009년 | 130.00 | 7.83 | 0.00 |
| 총계 | 1,660.00 | 100.00 | 2.41 |

- 남부/파라나 강(PR)/CEASA-PR UNIT. 그란지 꾸리찌바(Grande Curitiba)

| 연도 | 물량(kg) | 비중(%) | 평균가격(US\$/kg) |
|-------|----------|--------|---------------|
| 2001년 | 150.00 | 2.61 | 1.34 |
| 2002년 | 160.00 | 6.79 | 1.78 |
| 2003년 | 710.00 | 12.36 | 1.94 |
| 2004년 | 510.00 | 8.88 | 2.76 |
| 2005년 | 1,170.00 | 20.37 | 2.63 |
| 2006년 | 1,025.00 | 17.84 | 2.79 |
| 2007년 | 550.00 | 9.57 | 4.03 |
| 2008년 | 1,065.00 | 18.54 | 1.78 |
| 2009년 | 325.00 | 5.66 | 0.00 |
| 2010년 | 80.00 | 1.39 | 0.00 |
| 총계 | 5,745.00 | 100.00 | 1.90 |

- 남동부/미나스 제라이스(MG)/CEASA-MG UNIT. 우베르랑디아(Uberlandia)

| 연도 | 물량(kg) | 비중(%) | 평균가격(US\$/kg) |
|-------|-----------|--------|---------------|
| 2006년 | 4,000.00 | 10.15 | 1.52 |
| 2008년 | 2,000.00 | 5.08 | 0.91 |
| 2009년 | 7,820.00 | 19.85 | 2.68 |
| 2010년 | 9,240.00 | 23.45 | 0.00 |
| 2011년 | 14,240.00 | 36.14 | 0.00 |
| 2012년 | 2,100.00 | 5.33 | 0.00 |
| 총계 | 39,400.00 | 100.00 | 0.85 |

자료) CEASA/ 농림부(<http://www.ceasa.gov.br>)

《 2005~2012 CEASA 우베르랑디아(MG)의 월별 감 평균 시장가 》

(단위 : US\$,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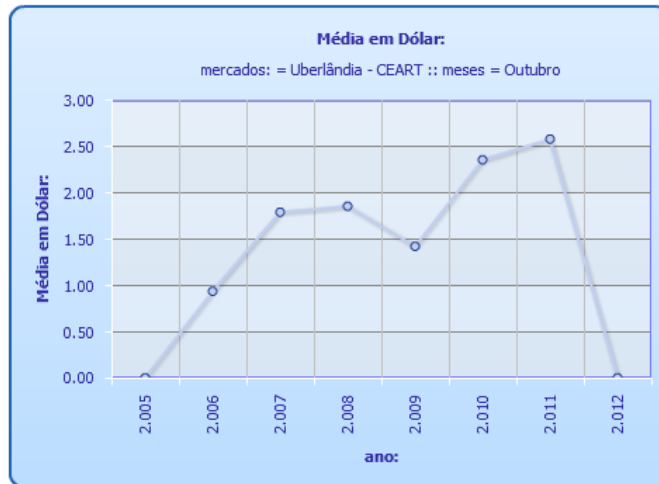
| Resumo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Total |
|--------------------|-----------------|-----------------|-----------------|-----------------|-----------------|-----------------|-----------------|-----------------|-----------------|
|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Média em Dólar: |
| Uberlândia - CEART | 0.84 | 0.70 | 1.34 | 1.76 | 1.74 | 1.84 | 1.88 | 2.32 | 12.43 |
| January | 0.79 | 0.88 | 1.00 | 0.63 | 0.96 | 1.20 | 1.47 | 2.52 | 9.43 |
| February | 0.63 | 1.33 | 0.87 | 1.50 | 1.16 | 1.49 | 1.67 | 1.97 | 10.63 |
| March | 0.62 | 0.81 | 0.77 | 1.08 | 1.16 | 0.98 | 1.49 | 2.46 | 9.36 |
| April | 0.56 | 0.55 | 0.81 | 1.21 | 0.92 | 1.18 | 1.45 | 0.00 | 6.68 |
| May | 0.70 | 0.52 | 0.95 | 1.18 | 1.24 | 1.38 | 1.43 | 0.00 | 7.39 |
| June | 1.02 | 0.49 | 1.16 | 1.55 | 1.91 | 2.02 | 1.59 | 0.00 | 9.74 |
| July | 1.54 | 0.77 | 1.79 | 2.46 | 2.45 | 3.71 | 2.74 | 0.00 | 15.45 |
| August | 1.50 | 0.35 | 1.38 | 2.93 | 1.98 | 0.00 | 3.03 | 0.00 | 11.18 |
| September | 0.00 | 0.00 | 0.00 | 0.00 | 1.40 | 0.00 | 0.00 | 0.00 | 1.40 |
| October | 0.00 | 0.93 | 1.79 | 1.85 | 1.42 | 2.35 | 2.58 | 0.00 | 10.92 |
| November | 0.50 | 0.00 | 2.01 | 4.02 | 0.00 | 0.00 | 1.24 | 0.00 | 7.77 |
| December | 0.57 | 0.33 | 2.26 | 0.97 | 4.60 | 2.23 | 2.02 | 0.00 | 12.97 |

자료) CEASA MG

- 아래 표는 감을 수입하여, 수입된 감의 상당량인 2,100kg을 판매한 CEASA Uberlandia의 감 10월 평균 시장가격임. 이 표는 10월의 가격변화로, 10월은 한국산 탈삼감이 수입되는 경우 판매가 예상되는 시기임

《 CEASA 우베르랑디아(Uberlândia)(MG)의 10월 평균 감 가격(2005~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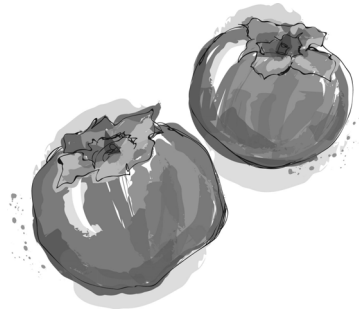
(단위 : US\$)



자료) CEASA MG

4 시장과 외부요인

- 과거 30년 동안 브라질의 식품 생산은 150%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브라질의 향후 성장 가능성 및 농업의 빠른 성장세를 알 수 있음. 사회의 중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고품질 식품 구매가 가능하고, 점차 패키지 식품과 같은 편리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발전은 신선식품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5 수출입동향

1) 국별 감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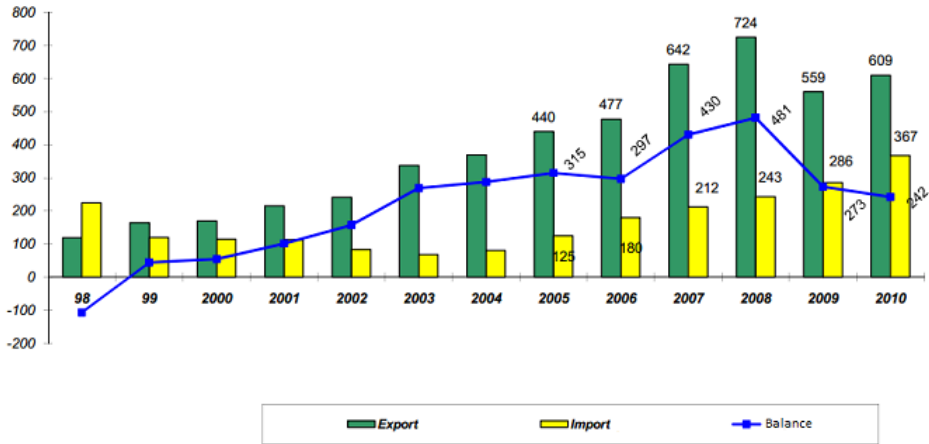
- 현재 브라질은 비행기,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상품 수출도 하고 있으며, 이는 좀 더 고부가가치 기술시대로 가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그 기술력을 기업농 발전에 응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신선 과일 수출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성장하여 1998~2004년까지 국제시장에서 과일 판매가 296,000톤에서 850,000 톤으로, 300%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금액은 1억2천만 달러에서 3억7천만 달러로 증가함
- 브라질 농업은 몇 년 전부터 고품질 상품을 대량 공급하면서 국제 시장이 요구하는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브라질의 주요 과일 수출 상품은 망고, 멜론, 오렌지, 생식용 포도, 파파야, 사과, 키 라임과 바나나임
- 브라질이 주요 생산국임에도 일부 과일은 충분한 생산이 어려우며 특히 온대기후 과일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과일 수입량은 1999년 이후로 감소했으며, 온대기후 과일로는 주로 배, 사과, 복숭아, 천도복숭아, 키위를 수입하고 있음

《 1998~2010 신선 과일 무역수지 》

(단위 : US백만불)

| 연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수출 | 119 | 165 | 170 | 215 | 241 | 337 | 369 | 440 | 477 | 642 | 724 | 559 | 609 |
| 수입 | 225 | 120 | 115 | 113 | 84 | 68 | 81 | 125 | 180 | 212 | 243 | 286 | 367 |
| 무역수지 | -106 | 45 | 55 | 102 | 157 | 269 | 288 | 315 | 297 | 430 | 481 | 273 | 242 |

자료) Secex/Datafruta-Ibrafi



자료) 브라질 과일 협회(Brazilian Fruit Institute) - IBRAF

- IBRAF(브라질 과일 협회 프로그램)는 1998년 이래 브라질 수출진흥투자기구인 Apex-Brazil과 파트너십으로 브라질 과일과 관련제품 수출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함. 프로젝트의 목표는 브라질의 신선한 과일과 가공 과일을 전략적으로 세계로 홍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상품의 다양성과 품질, 맛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20개 이상의 제품이 프로젝트 중임
 - 신선 과일 : 파인애플, 아보카도, 체리, 바나나, 감, 무화과, 구아바, 오렌지, 레몬, 사과, 파파야, 망고, 멜론, 그리고 워터멜론, 귤, 포도, 핵과
 - 가공 과일 : 열대 주스, 과육, 아사이 열매, 쿠파아수, 코코넛 즙, 포도 주스, 견과

《 브라질의 신선 과일 수입동향 》

(단위 : US천불, 톤, %)

| 연도 | 신선과일 | | 증감률(%) | | 평균가격 | |
|------|---------|---------|--------|--------|------|--------|
| | US천불 | 톤 | 가격 | 양 | 달러/톤 | 증감률(%) |
| 2001 | 112,949 | 809,869 | - | - | 139 | - |
| 2002 | 84,197 | 194,351 | -25.5% | -76.0% | 433 | 210.6% |
| 2003 | 68,453 | 140,906 | -18.7% | -27.5% | 486 | 12.1% |
| 2004 | 81,773 | 153,569 | 19.5% | 9.0% | 532 | 9.6% |
| 2005 | 125,982 | 224,772 | 54.1% | 46.4% | 560 | 5.3% |
| 2006 | 180,873 | 268,801 | 43.6% | 19.6% | 673 | 20.1% |
| 2007 | 212,953 | 279,321 | 17.7% | 3.9% | 762 | 13.3% |

| 연도 | 신선과일 | | 증감률(%) | | 평균가격 | |
|------|---------|---------|--------|-------|-------|--------|
| | US천불 | 톤 | 가격 | 양 | 달러/톤 | 증감률(%) |
| 2008 | 243,962 | 255,598 | 14.6% | -8.5% | 954 | 25.2% |
| 2009 | 286,356 | 311,039 | 17.4% | 21.7% | 921 | -3.5% |
| 2010 | 367,890 | 374,085 | 28.5% | 20.3% | 983 | 6.8% |
| 2011 | 495,389 | 459,460 | 34.7% | 22.8% | 1,078 | 9.6% |

자료) Agrostat Brasil, a partir de dados da SECEX/MDIC

《 브라질 신선과일 수입 》

(단위 : US\$, kg, %)

| 과일명 | 수입 신선과일 비교 | | | | | |
|------------|--------------|---------------|------------------|----------------|----------------|----------------|
| | 2010/2009 증감 | | 2010년 | | 2009년 | |
| | 금액(%) | 물량(%) | 금액(US\$ FOB) | 물량(Kg) | 금액(US\$ FOB) | 물량(Kg) |
| 배 | 20.16 | 17.28 | 161,974,250 | 189,840,518 | 134,796,557 | 161,874,729 |
| 사과 | 30.01 | 25.33 | 60,046,723 | 76,879,090 | 46,187,228 | 61,343,068 |
| 포도 | 66.26 | 32.84 | 36,074,860 | 24,794,695 | 21,697,296 | 18,665,476 |
| 자두 | 13.87 | -8.96 | 32,417,159 | 24,278,543 | 28,467,364 | 26,667,739 |
| 키위 | 42.00 | 28.29 | 21,867,849 | 20,596,664 | 15,400,335 | 16,054,765 |
| 복숭아 | 33.01 | 12.39 | 13,322,481 | 11,074,033 | 10,016,368 | 9,853,008 |
| 천도복숭아 | 35.34 | 20.00 | 13,221,893 | 10,421,857 | 9,769,121 | 8,684,650 |
| 오렌지 | 183.37 | 229.09 | 4,841,635 | 6,002,603 | 1,708,565 | 1,824,017 |
| 체리 | 8.55 | 42.97 | 14,839,209 | 3,490,792 | 13,669,940 | 2,441,619 |
| 감귤 | 138.15 | 146.33 | 2,960,118 | 3,438,598 | 1,242,960 | 1,395,929 |
| 레몬 | 75.18 | 35.90 | 1,315,342 | 1,247,616 | 750,836 | 918,021 |
| 감 | 99.81 | 122.99 | 1,722,810 | 831,792 | 862,231 | 373,015 |
| 포멜로 | 2.02 | -2.57 | 303,989 | 313,447 | 297,974 | 321,712 |
| 살구 | -31.01 | -24.53 | 462,142 | 259,685 | 669,859 | 344,081 |
| 코코넛 | - | - | 274,518 | 231,000 | 0 | 0 |
| 딸기 | 1020.44 | 1051.43 | 544,894 | 97,261 | 48,632 | 8,447 |
| 크랜베리와 블루베리 | 161.73 | 94.40 | 572,164 | 63,147 | 218,610 | 32,483 |
| 퀸스 | -36.48 | -50.03 | 39,064 | 44,271 | 61,501 | 88,592 |
| 파인애플 | 124.36 | 172.12 | 99,713 | 36,900 | 44,443 | 13,560 |
| 멜론 | 155.70 | -52.46 | 83,716 | 28,200 | 32,740 | 59,320 |
| 대추 | -20.66 | -28.03 | 174,562 | 19,816 | 220,025 | 27,535 |
| 블랙베리 | 118.40 | 87.86 | 230,687 | 19,105 | 105,624 | 10,170 |
| 무화과 | - | - | 43,704 | 11,760 | 0 | 0 |
| 바나나 | 43.69 | 44.41 | 23,698 | 4,985 | 16,493 | 3,452 |
| 망고 | 338.86 | 331.19 | 20,161 | 4,700 | 4,594 | 1,090 |
| 파파야 | - | - | 6,459 | 2,400 | 0 | 0 |
| 구아바 | 2.09 | 66.67 | 6,160 | 2,000 | 6,034 | 1,200 |
| 아보카도 | - | - | 1,947 | 1,820 | 0 | 0 |
| 총계 | 28.36 | 20.27 | 367,491,907 | 374,037,298 | 286,295,330 | 311,007,678 |

자료) Secex/Elaboracao Ibraf em 12/01/2011/ Caqui:Vide Outras Frutas/ 감

《 2010 국별 신선 과일 수입 》

(단위 : US\$, kg)

| 국가 | 금액(US\$ FOB) | 물량(Kg) |
|----------|--------------|-------------|
| 아르헨티나 | 193,313,283 | 225,497,290 |
| 칠레 | 69,201,988 | 62,394,929 |
| 에스파냐/스페인 | 36,247,101 | 27,778,769 |
| 포르투갈 | 27,664,738 | 25,971,704 |
| 이탈리아 | 13,769,035 | 10,719,776 |
| 미국 | 14,265,845 | 8,848,039 |
| 우르과이 | 5,114,316 | 7,515,399 |
| 프랑스 | 3,033,785 | 2,798,883 |
| 뉴질랜드 | 1,515,694 | 1,121,537 |
| 페루 | 1,103,563 | 509,374 |
| 멕시코 | 1,025,498 | 432,639 |
| 스리랑카 | 180,268 | 156,000 |
| 콜롬비아 | 490,880 | 87,596 |
| 인도네시아 | 94,250 | 75,000 |
| 중국 | 178,174 | 55,994 |
| 태국 | 170,682 | 53,600 |
| 터키 | 43,704 | 11,760 |
| 이스라엘 | 73,838 | 8,100 |
| 필리핀 | 1,679 | 435 |
| 볼리비아 | 3,038 | 324 |
| 핀란드 | 548 | 150 |
| 총계 | 367,491,907 | 374,037,298 |

자료) Secex/ Elaboracao lbraf em 19/01/2011 / 총 국가 : 21개국

- 브라질의 감 수입은 스페인 산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수입감 마케팅 사례를 보면 브라질 기업, BENASSI SAO PAULO IMPORTACAO E EXPORTACAO LTDA, (<http://www.grupobenassi.com.br>)사임. 스페인 기업인 Anecoop, S. Coop. (<http://www.anecoop.com/en>)에서 감을 수입하고 있으며, 스페인 기업은 다양한 감을 생산함. Anecoop이 상업화한 Diospyros kaki의 품종은 Roxo Brilhante(밝은 자주색)으로 9-10월 사이에 수입되며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은 감 수확이 없음. 미국산 감인 샤론감(Sharon fruit)도 수입함

《 2010 국별 감수입 》

(단위 : US\$, kg)

| 국가 | 금액(US\$ FOB) | 물량(Kg) |
|------|--------------|---------|
| 스페인 | 618,597 | 396,072 |
| 칠레 | 197,197 | 179,071 |
| 미국 | 416,136 | 169,053 |
| 콜롬비아 | 490,880 | 87,596 |
| 총계 | 1,722,810 | 831,792 |

자료) Secex/Elaboracao Ibraf em 19/01/2011

- 또 다른 기업으로 De Marchi은 아르헨티나(Argentina)와 프랑스(France), 미국(USA)에서 사과를, 아르헨티나(Argentina), 포르투갈(Portugal), 미국(USA)에서 배를, 칠레(Chile)와 이탈리아(Italy)에서 키위를, 그리고 칠레(Chile)와 미국(USA)에서 포도를 수입하고 있음

2) 수입 관세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및 주 세법에 있어 브라질 공항 세관사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지불할 때까지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 SISCOMEX는 약자로 브라질의 외국 무역 거래를 처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뜻하는데, 자동적으로 예정된 배송 세금을 계산함. 세금은 브라질 통화를 기준으로 당일 환율을 적용함. 세금 지불은 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수출업자도 세금 예측을 하는 것이 상품 경쟁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은 아래 목록과 같고 적용순서도 이와 같음. 괄호 안에 있는 포르투갈 약어로 보통 사용함
 - 해양 상인 갱신 세금(AFRMM)
 - 수입 세금 (II)
 - 산업화된 상품 세금 (IPI)
 - 상품 및 서비스 유통 세금 (ICMS)
 - 사회 통합 프로그램과 시민 서비스 자산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PIS/PASEP)

- 사회보장 재무 기여 (COFINS)
 - AFRMM은 브라질 해양 상인과 해군 건설 산업의 개발을 위해 도입된 연방 사회 기여 세금임 해상으로 수입하는 것만 적용하고, 해상화물의 25%에 모든 항구 처리 요금이 들어감
 - 수입세(II)는 브라질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함. 관세율 범위는 상품에 따라 0~35% 까지며 브라질의 경제 정책에 맞춰 수시로 변경 가능함. 수입 관세율은 상품의 ‘관세대 상금액’에 적용됨 : 원가, 배송 시 보장 보험과 해양 또는 항공 화물의 합계임
 - 산업화된 상품세(IPI)는 소비와 사용을 위해 변형된 상품 모두에 부과됨. 관세율은 보통 0~20%까지 다양함. 상품의 관세금액은 IPI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금액에 수입세 (II) 금액을 더함
 - 상품과 서비스 유통세(ICMS)는 주 정부의 부가가치세임. 주 정부는 타주 상품, 외국 상품에 모두 이 세금을 부과함. 비율은 필수품에서 고가품까지 범위가 0~25%임. 또한 주마다 그 비율이 다름. 대부분의 주는 18%를 적용 ICMS 계산은 복잡한데, 세관금액, II, IPI, 수입과정과 관련한 관세와 ICMS를 포함하기 때문임
 - PIS/PASEP와 COFINS은 사회 보장 기금을 위해 고안된 연방 사회 기부세로수입산은 국내 상품에 적용 가능한 같은 비율을 할당함. PIS/PASEP는 1.65%, COFINS은 7.6%임
 - 세금부과는 아주 복잡한 공식을 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세금계산이 이루어지며 계산을 위한 기본 총액은 세금을 포함하고 있음 : 총 관세금액, ICMS, PIS/PASEP 및 COFINS
 - 감 수입과 관세적용
 - I.I 및 ICMS(HS코드 08107000)이 적용됨. ICMS의 경우 관세는 브라질 자치주마다 각기 다르며, 여기서는 17%를 적용하였으며,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모든 브라질 주에서는 수입 감에 대한 통상 관세가 17%임. 이 사례에서 적용된 관세는 여타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브라질 관세체계(0810 70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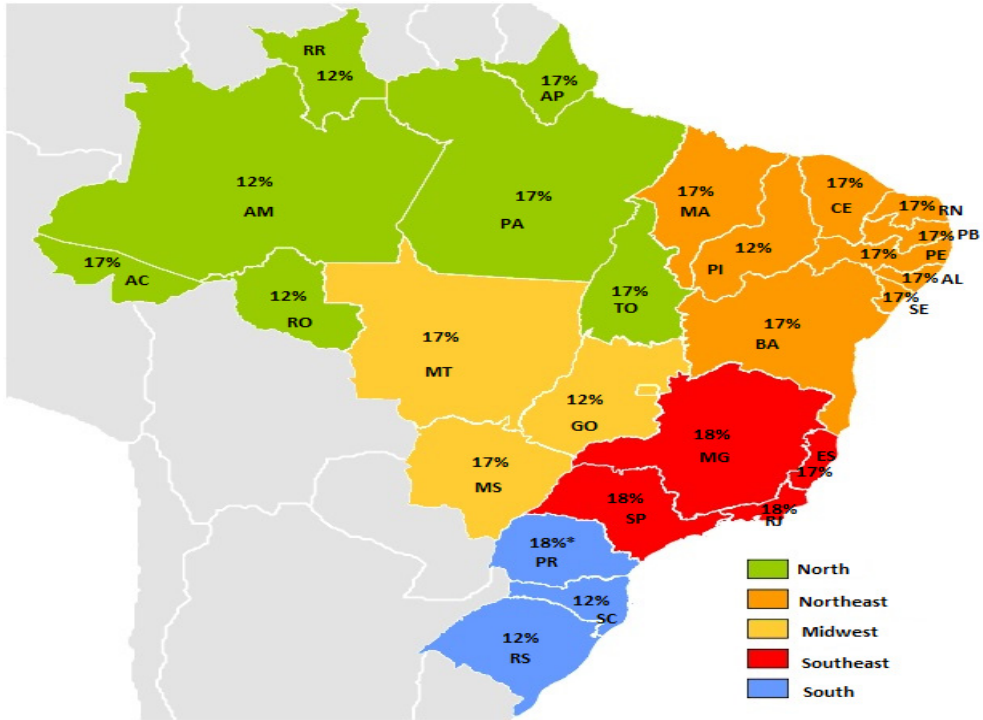
-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수입관세, 공업세, 유통세, 사회보장세가 누진 적용됨
- 유통세의 경우 주마다 유통세율이 상이하며 상파울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내게 됨
- 아래 계산은 수입제품가격을 100불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최종가격을 사례로 계산하여 본 것이며, 실제 세금적용 시 주(state) 유통세, 사회보장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00달러 상품 수입 시 세금 예상 》

| 구분 | 금액 | 단위 |
|--------------------|-----|-----|
| CIF 가격 | 100 | USD |
| 수입관세 (I.I) | 10 | % |
| 공업세 (IPI) | 0 | % |
| 유통세 (ICMS) | 17 | % |
| 사회보장세 (PIS/Cofins) | 0 | % |

| 〈사례 계산〉 | 금액 | 단위 |
|--|--------|-----|
| CIF 가격 | 100.00 | USD |
| 수입관세 (I.I) | 10.00 | % |
| 수입관세 산정가격 | 10.00 | USD |
| 공업세 산정기준 (CIF+I.I) | 110.00 | USD |
| 공업세 (IPI) | 0.00 | % |
| 공업세 산정가격 | 0.00 | USD |
|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 | 110.00 | USD |
|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100]/(100-ICMS) | 132.53 | USD |
| 유통세 (ICMS) | 17.00 | % |
| 유통세 산정가격 | 22.53 | USD |
| 사회보장세 산정기준 (CIF+I.I+IPI+ICMS) | 155.06 | USD |
| 사회보장세 (PIS/Cofins) | 0.00 | % |
| 사회보장세 산정가격 (수입자부담) | 0.00 | USD |
| 최종가격 | 132.53 | USD |

《 브라질 자치주의 과일에 대한 ICMS 관세 》



* 예를 들어, 파라나 강(PR) 주의 경우, 학교 식자재용 과일을 정부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18% 대신 7%임 (자료) TEC Win - Tarifa Externa Comum (<http://tecwinweb.aduaneiras.com.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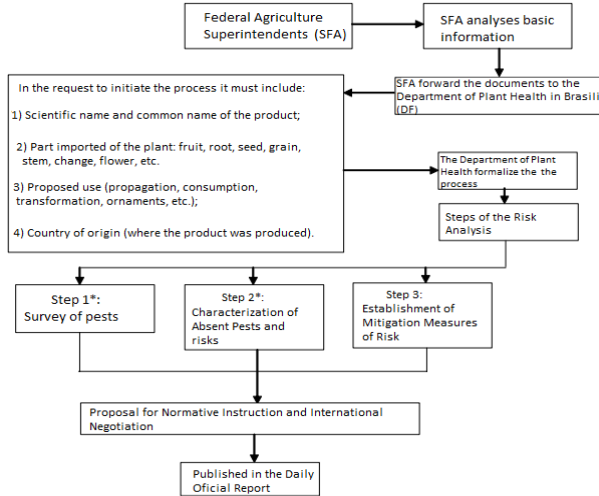
3) 수입 관련 규제와 수입 과정

- 국가 간 식물과 농업상품 수송에 대한 브라질 법과 국제 협약은 품질과 안전 보장과 제품 준수와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기 규정을 정함. 브라질에서 감독과 통제는 국제농업감시 시스템(Vigiagro)으로 농림부 관할임
- 절차와 식물 위생 요건들은 씨앗과 묘목, 음료, 식품과 농업성 물품을 포함한 각각의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국제 농업 감시 시스템(Vigiagro)은 농업 보호 사무국(SDA)과 연결되어 식물과 상품, 부산물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수행하며 검사는 항구와 국제공항, 국경검역소, 그리고 특별 세관에서 이루어짐

- 국제 농업 감시를 위한 공식 통제 기관인 농업, 가축, 공급부서는 수입업자 또는 식물과 식물성 상품 수입자는 브라질에 도착한 일자에 상품 특성에 대해 미리 통지하여야 함. 제정법에 따르면, 농업 감시시스템은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것과 수입상품품질보장과 브라질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식물은 권한이 부여된 수입 상품 목록(PVIA)에 있을 시에만 수입될 수 있음. 그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특정 식물 종/ 식물 부분/ 제안된 사용법/ 원산지에 대한 식물 위생 요건에 대한 공식 문서(Diário Oficial da União)를 발행
 - 1997년 8월 12일부터 2005년 7월 16일까지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한 제안된 사용법과 브라질에 전염을 위한 차단과 격리 등록이 없이 수입한 증거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함. 이 경우, 수입 증거 뒤에 생산/ 채소 일부/ 제안된 사용법/ 해충 위험 분석(ARP)과 관련해 권한이 부여된 수입품목 리스트(PVIA)에 제시된 원산지 승인
 - 수입 감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사례는 없으므로 한국 감을 수출하기 위해 식물 위생 브라질 당국이 발행한 ARP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과정에는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될 것임. 수입 요건을 갖추려는 기업은 ARP 비용과 검사를 위한 한국 방문 비용까지 책임져야 함

《 전염성 위기 분석(ARP) 개시 과정 》

- 상업용 식물 수입 시 적용하는 ARP과정임



* Step may be carried out by a Collaborating Certified Centre

(상기 내용)

연방 농업 감독관(SFA) → 기본 정보 분석

↓

SFA는 문서를 브라질리아식물위생부(DF)로 송부

↓

분석 과정 시작 요청을 위해 포함돼야 할 것

- 1) 상품의 과학적 이름과 일반적인 이름
- 2) 식물의 수입 부분 : 과일, 뿌리, 씨앗, 곡물, 줄기, 변화, 꽃, 그 외.
- 3) 제안된 사용법(번식, 소비, 형질전환, 장식, 그 외.)
- 4) 원산지(상품이 생산된 곳)

↓

식물위생부는 과정을 공식화함

↓

위기 분석 과정

- 1단계 : 해충 조사*
- 2단계 : 해충 부재와 위험 요소 정의*
- 3단계 : 위험 요소 완화 조치 설립

↓

규범지침과 국제 협상 제안

↓

관보에 공고

* 위기분석과정의 1,2단계는 협력인증센터(Collaboration Certified Ctr)에서 수행

자료) 브라질 농림부

www.agricultura.gov.br/arq_editor/file/PROCEDIMENTOS_risco%20pragas.pdf

6 시장동향

- 신선 식품은 향후 소비 전망은 긍정적이며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신선식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임.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선,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 2011년 브라질 경제지표는 안정적이었음. 유로모니터(Euromonitor) 국제전망치에 따르면, 매달 가처분 소득이 750달러가 넘는 가계 수가 2011년에 2%까지 오르고, 가처분 소득이 2011년 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 오를 것으로 전망됨. 최저임금의 경우 2011년 550 헤알(R\$), 가족연금(Bolsa Familie) 등과 같은 사회정책으로 브라질 저소득층 구매력이 증가함. 모든 경제단위에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며, 많은 수의 과일채소 가게가 2011년 문을 열었음
- 과일의 경우, 비효율적인 유통과정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가격이 비싸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함
- 유기농 과일
 - 2011년 총 과일 판매량에서 유기농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유기농 과일은 오렌지와 바나나가 높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되었음. 유기농 과일생산은 향후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소매업자들은 유기농기준을 준수하는 지역 생산업자들과의 동업관계를 모색하고 있음. 한 예로 Grupo Pao de Acucar사는 일부 유기농 생산업자들과 동업관계를 형성했고, 유기농 과일 생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함

7 시장전망

- 최근 브라질 통화 레알(R\$)의 평가 절하가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음. 레알(R\$)은 1달러에 1.55레알에서 현재 1달러에 2레알이 되어 일부는 차익 회복과 수출 재촉진으로, 생산증가, 생산성, 수확 규모, 수확 효율성, 그리고 국제 시장 상품공급이 늘어날 것임
- 최근 환율은 브라질생산품 유통가격을 높이는 높은 세금, 충분하지 않은 실행계획과 임금인상(건설과 같은 다른 경제 부문과 경쟁하는), 토지가격, 에너지 비용, 엄격한 환경 제약과 같은 식품생산비용증가를 보상해주고 있음
- 그럼에도 과일 판매는 식습관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브라질 경제소득 증가는 딸기, 자두, 복숭아, 체리와 같은 수입 과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늘어난 가처분 소득과 소비증가는 과일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
- 과일 판매 규모는 품질과 단가, 수확량은 날씨 조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과일과 채소를 전문으로 하는 Hortifruti 식료품 상점들이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식품에 대한 트렌드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브라질 정부는 균형 잡힌 음식 소비를 계속해서 권장할 것이며, 가처분 소득 증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미네랄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인 과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 FAO와 브라질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적정 과일소비량보다 현재의 브라질 과일 소비량이 작은 것은 과일을 여전히 식품보충제로 여기고 있는 인식 때문임

8 참고자료

- CEAGESP
www.ceagesp.gov.br/cotacoes/index_html?consultar=Consultar&b_start:int=20&grupo=1&data=04/07/2012&grupo_nome=Frutas
 CEASA MG
- 농림부
dw.agricultura.gov.br/dwagrostat/seg_dwagrostat.principal_dwagrostat
www.agricultura.gov.br/comunicacao/noticias/2009/02/caqui-irrigado-e-opcao-para-semiarido
www.agricultura.gov.br/internacional/indicadores-e-estatisticas
- 원예
www.todafruta.com.br/portal/icNoticiaAberta.asp?idNoticia=4106
- IBRAF
www.ibraf.org.br/estatisticas/Importa%C3%A7%C3%A3o/Comparativo_das_Importa%C3%A7%C3%B5es_Brasileiras_de_Frutas_Frescas_2010-2009.pdf
www.ibraf.org.br/estatisticas/est_frutas.asp
- Appefrutas - Association of Fruit Producers
www.frutadoce.com.br/imprimir_noticia.php?id=24
- Portal Sao Francisco
www.portalsaofrancisco.com.br/alfa/caqui/caqui-11.php
- Appackaki
www.appckaki.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1&Itemid=75
- TEC Win - Tarifa Externa Comum tecwinweb.aduaneiras.com.br

- 브라질 기업 BENASSI SAO PAULO IMPORTACAO E EXPORTACAO LTDA
www.grupobenassi.com.br
- Anecoop, S. Coop. www.anecoop.com/en
- 브라질 농업통계 AgroStat
- 공식 통계, 무역 협회, 무역 신문, 기업, 리서치, 상점 체크, 무역 인터뷰, 유로모니터 (Euromonitor), FAO, 브라질 지리 및 통계 협회 (IBGE)

탈삼감

중 국

1. 생산동향
2. 수출입 동향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2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생산동향

1) 시장 개요

- 감은 중국의 특색 과일로서 충분한 영양가치가 있으나 사과, 바나나에 비해 소비하는 사람이 적음. 중국의 감은 대부분이 뚝은 감으로서 성숙한 후 탈삼을 거쳐야만 식용이 가능함. 현재 탈삼 기술로서는 탈삼 후 감이 부드럽고 검게 변하여 저장과 운송에 불리함
- 북방지역은 홍시, 냉동감을 즐겨 소비하고 남방지역은 아삭하고 단단한 단감을 즐겨 소비함. 현재 꺾감을 제외한 기타 가공품이 너무 적어 신선 감의 판매에 영향을 겪고 있음
- 중국산은 농업대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국가에서 감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우위가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또한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영양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감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2) 생산량 현황

- 감 생산지역은 광범위하며 산둥, 산서, 하남, 하북, 섬서, 북경, 안휘 등 지역에서 많이 재배됨. 대부분지역에서 뚝은 감이 생산되며 단감 재배면적은 2%에도 미치지 못하며 단감 생산량의 60-70%가 하남, 산둥, 섬서성에 분포되고 남방지역은 재배면적이 적음

《 2006~2012년 중국 감 생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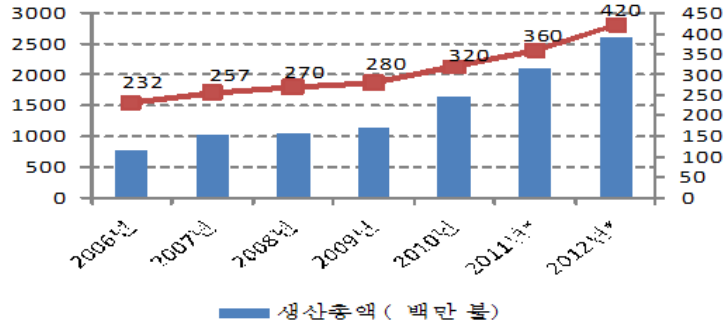
(단위 : 만 톤, US백만불)

| 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생산액 | 771 | 1025 | 1059 | 1143 | 1647 | 2100 | 2600 |
| 생산량 | 232 | 257 | 270 | 280 | 320 | 360 | 420 |

자료) FAO 통계 데이터베이스

※ 2011년과 2012년 수치는 전년도에 근거한 추정치임

《 2006~2012년 중국 감 생산량 및 생산총액 성장추세도 》



* 추세선은 만톤 기준임

- 2011년, 2012년 감의 공식통계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음.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생산총액의 성장추세에서 예측할 수 있듯 2011, 2012년 감의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 생산량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였고, 2011년과 2012년 기상이 양호하여 감의 성장에 적합하였음. 게다가 감의 수요량과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여, 2011년, 2012년 감 생산량은 각각 360만 톤과 4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2011년 감 수확은 보편적으로 양호하여 중국 광시성 통계국에 따르면, 2011년 광시성 원림과일총생산량은 943.81만 톤으로 작년보다 12.1% 증가. 그 중 제 1의 과일 품종인 감귤의 연간 생산량은 224.7만 톤, 감 생산량은 67.3만 톤으로 10.3% 증가하여 전국 감 생산량 2위 차지함
- 2006년부터 2010까지의 중국 감 생산총액에서 보면, 중국 감 생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6년의 771백만 달러에서 2010년의 1,647백만 달러로 연평균 28.4% 증가함. 2011, 2012년의 감 생산총액은 각각 2,100백만 달러와 260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최근 2,3년간 감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하여, 수많은 감 생산지에서 감을 중점 과일품종으로 삼아 재배면적을 확대함. 특히 소비자의 소비수준 및 감에 대한 영양 가치가 올라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식용 과일품종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 졌고, 감의 과일품종 지위도 올라갔으며, 과일품종으로서의 감의 생산은 더욱 확대되어

감의 생산량도 끊임없이 상승함

- 2011년, 2012년 기후가 양호해 감의 성장에 적합하여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3) 생산 발전추세

○ 제품의 브랜드화

- 중국의 포장된 감 제품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서 소비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가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 제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시장 경쟁률이 제고될 것임

○ 안전식품 및 기능성 식품 생산

- 안전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일의 생태환경, 생산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면역력 제고, 보건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판매가 빠르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안전한 고급제품 생산이 발전추세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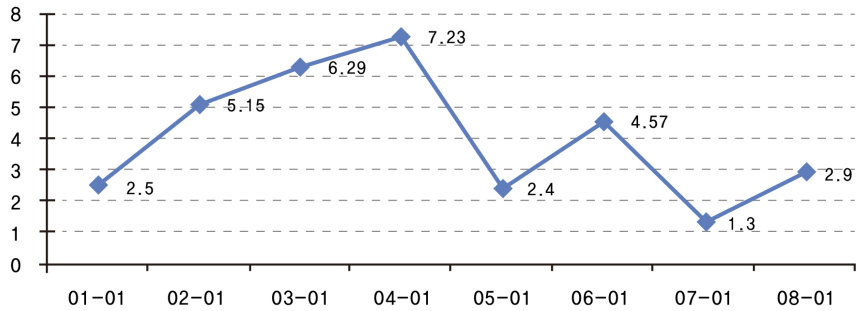
4) 가격 현황

《 2012년 1~8월 중국 감 가격표 》

| 2012년 | 가격(元/kg) |
|-------|----------|
| 1월1일 | 2.5 |
| 2월1일 | 5.15 |
| 3월1일 | 6.29 |
| 4월1일 | 7.23 |
| 5월1일 | 2.4 |
| 6월1일 | 4.57 |
| 7월1일 | 1.3 |
| 8월1일 | 2.9 |

자료) www.ymt360.com

《 2012년 1~8월분 중국 감 가격 》



- 2012년 1~8월 중국 감 가격에서 보면, 감의 가격은 파동이 컸음. 4월분 감의 가격은 최고 7.23₩/kg에 달했으나, 7월 1일 감 가격은 1.3₩/kg 으로 하락함
- 7~8월 한 달분의 전국 감 평균 가격 동향을 보면 감 가격이 거의 매일 변했음을 알 수 있음

2 수출입 동향

1) 2012년 1~6월분 중국 신선 감 수출입량 및 수출입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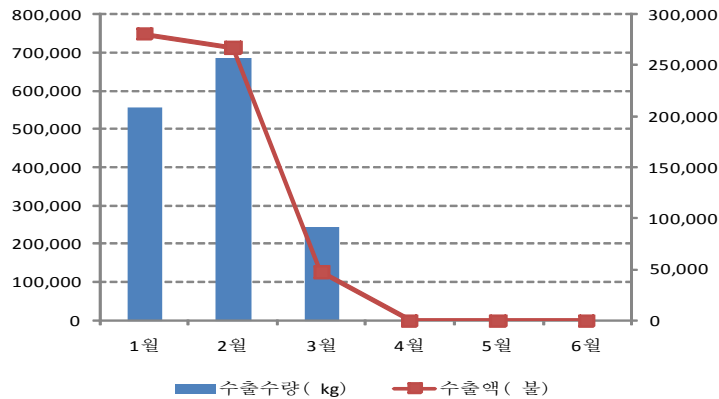
《 2012년 1~6월분 중국 신선 감 수출입 현황 》

(단위 : kg, US\$)

| 월 | 수출량 | 수출금액 | 평균FOB가격 | 수입량 | 수입금액 | 평균CIF가격 |
|----|-----------|---------|----------|--------|--------|----------|
| 1월 | 557,064 | 280,497 | 0.503527 | 16,800 | 25,211 | 1.500655 |
| 2월 | 687,033 | 266,924 | 0.388517 | --- | --- | --- |
| 3월 | 247,000 | 47,782 | 0.193449 | --- | --- | --- |
| 4월 | --- | --- | --- | --- | --- | --- |
| 5월 | ---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
| 합계 | 1,491,097 | 595,203 | 0.399171 | 16,800 | 25,211 | 1.500655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2012년 1-6월분 중국 신선 감 수출입량 및 수출액 분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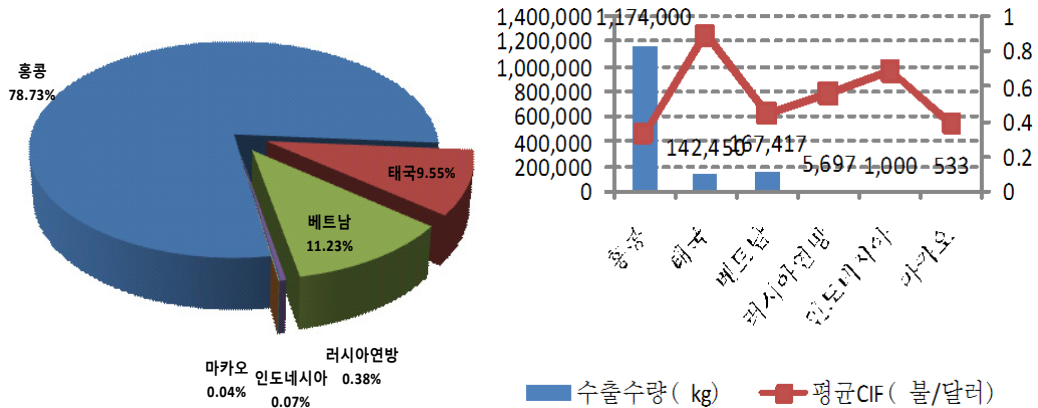
- 2012년 1~6월분 신선 감 수출은 주로 1,2,3월에 집중돼 있음. 그중 2월 신선 감의 수출액이 가장 높았음
- 4, 5, 6월분 중국은 수출이 없었음. 그 원인은 감의 수확시기와 저장기간과 관계가 있음

- 전체적으로 중국 2012년 1~6월분의 신선 감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매우 낮음. 중국은 감 생산대국으로써 매년 대량을 수출하고 있고, 과거 신선 감 수입수량은 모두 비교적 낮았음
- 수출입금액은 수출입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했지만, 중국 신선 감의 수입가격은 수출가격 보다 상당히 높음. 2012년 1월분의 신선 감 수출 평균가격은 약 0.5달러/kg였음(FOB기준)

《 2012년 1~6월분 중국 신선 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단위 : kg, US\$)

| 국가 | 수출량 | 수출액 | 평균FOB | 국가 | 수입량 | 수출액 | 평균CIF |
|-------|-----------|---------|-------|-----|--------|--------|-------|
| 홍콩 | 1,174,000 | 388,533 | 0.33 | 대만 | 16,800 | 25,211 | 1.50 |
| 태국 | 142,450 | 127,384 | 0.89 | --- | --- | --- | --- |
| 베트남 | 167,417 | 75,206 | 0.44 | --- | --- | --- | --- |
| 러시아연방 | 5,697 | 3,183 | 0.55 | --- | --- | --- | --- |
| 인도네시아 | 1,000 | 690 | 0.69 | --- | --- | --- | --- |
| 마카오 | 533 | 207 | 0.38 | --- | --- | --- | --- |
| 합계 | 1,491,097 | 595,203 | 0.39 | 합계 | 16,800 | 25,211 | --- |



- 2012년 1~6월분의 신선 감 수출 국가는 주로 홍콩으로, 중국 신선 감 수출량의 78% 이상을 점유함. 다음으로 동남아국가인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중국 신선 감 수출량의

11.23%와 9.55%를 점유 기타국가의 점유량은 비교적 적음. 동시에 2012년 1~6월분 한국에서 수입된 신선 감은 없음. 한국 감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0%임

- 2012년 1~6월분 중국 오로지 대만에서만 신선 감을 수입함, 그러나 수입량은 비교적 적음
- 그래프에 나타나듯, 중국 신선 감 수출국가 중, 태국의 수출FOB가격이 가장 높음.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임. 홍콩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이 가장 낮음

2) 2011년 1~12월 중국 신선 감 수출량 및 수출금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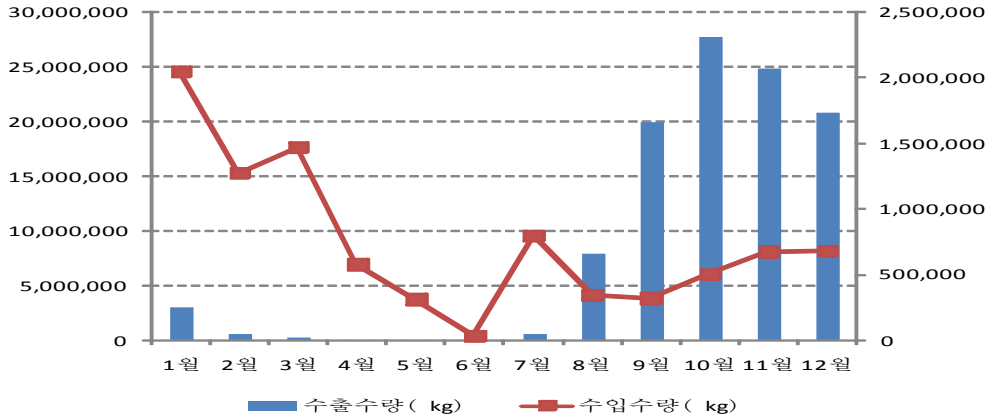
- 2011년 이전까지 신선 감의 단독 해관코드가 없었음. 기타 신선 과일 중에서 회귀한 해관코드는 08109090. 감은 이런 종류의 상품 중에서 비교적 큰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고로 이런 종류 상품의 수출입 추세는 동시에 감의 수출입 추세를 반영하는 것임

《 2011년 1~12월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입 현황 》

(단위 : kg, US\$)

| 월 | 수출량 | 수출액 | 수입량 | 수입액 |
|-----|-------------|-------------|-----------|-----------|
| 1월 | 3,032,301 | 2,839,980 | 2,040,499 | 836,242 |
| 2월 | 574,878 | 430,275 | 1,271,633 | 677,526 |
| 3월 | 185,687 | 70,234 | 1,464,183 | 1,417,105 |
| 4월 | 18,588 | 28,712 | 576,927 | 633,875 |
| 5월 | 35,052 | 16,137 | 313,314 | 346,441 |
| 6월 | 26,079 | 11,639 | 35,247 | 86,852 |
| 7월 | 574,478 | 456,975 | 794,637 | 220,096 |
| 8월 | 7,904,702 | 7,051,727 | 345,499 | 221,558 |
| 9월 | 19,950,037 | 21,146,390 | 322,795 | 381,066 |
| 10월 | 27,785,513 | 26,662,532 | 503,075 | 499,934 |
| 11월 | 24,920,120 | 22,872,430 | 674,427 | 717,168 |
| 12월 | 20,851,183 | 21,411,856 | 680,771 | 814,039 |
| 합계 | 105,858,618 | 102,998,887 | 9,023,007 | 6,851,902 |

《 2011년 1~12월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입액 분석도 》



- 2012년 1~12월분의 기타 신선과일 수출을 주로 9,10,11,12월 4개월에 집중돼 있음.
그중 10월 신선과일 수출량과 수출액이 가장 높았음
- 1~7월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량과 수출액은 비교적 적었으며, 그 원인은 과일 수확시기와 저장기간과 관계있음
- 전체적으로 2011년의 기타 신선과일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수출보다 상당히 낮음
- 기타 신선과일 수출이 비교적 적었을때 기타 신선과일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러나 6월분 기타 신선과일 수입수량과 수출수량은 비교적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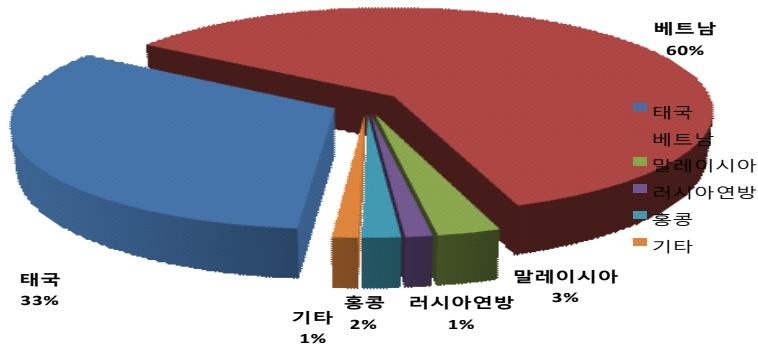
《 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입 국가별 수출현황 》

(단위 : kg,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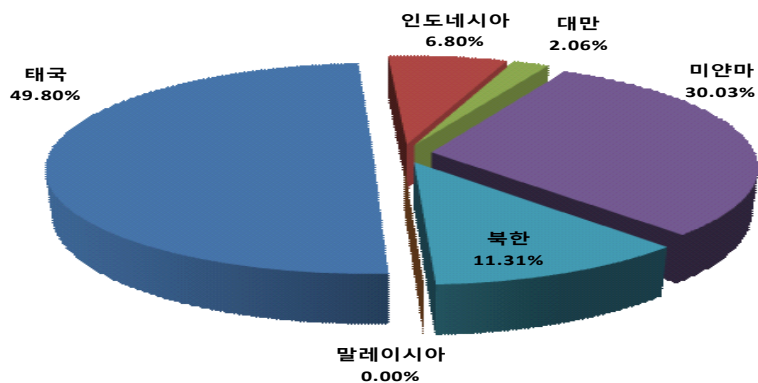
| 국가 | 수출량 | 수출금액 | 국가 | 수입량 | 수입금액 |
|-------|------------|------------|-------|-----------|-----------|
| 태국 | 34,803,397 | 53,649,710 | 태국 | 4,493,732 | 4,403,855 |
| 베트남 | 63,890,444 | 43,522,462 | 인도네시아 | 613,247 | 1,684,140 |
| 말레이시아 | 2,927,544 | 3,957,696 | 대만 | 186,015 | 314,786 |
| 러시아연방 | 1,258,438 | 778,036 | 미얀마 | 2,709,616 | 224,570 |
| 홍콩 | 1,785,600 | 457,054 | 북한 | 1,020,377 | 224,481 |
| 인도네시아 | 274,966 | 315,987 | 말레이시아 | 20 | 70 |
| 마카오 | 854,937 | 211,804 | -- | -- | -- |

| 국가 | 수출량 | 수출금액 | 국가 | 수입량 | 수입금액 |
|------|-------------|-------------|-----|-----------|-----------|
| 싱가포르 | 23,284 | 46,562 | --- | --- | --- |
| UAE | 29,260 | 45,675 | --- | --- | --- |
| 필리핀 | 7,700 | 9,121 | --- | --- | --- |
| 캐나다 | 148 | 2,500 | --- | --- | --- |
| 북한 | 2,900 | 2,280 | --- | --- | --- |
| 합계 | 105,858,618 | 102,998,887 | 합계 | 9,023,007 | 6,851,902 |

《 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 국가별 비율도 》



《 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입 국가별 비율도 》



- 2011년 기타 신선과일의 수출 국가는 주로 동남아국가로, 그중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60%, 33%의 비교적 많은 양을 점유하고 있음
- 기타지역의 수출액은 비교적 적음. 중국의 기타 신선과일 수출국가는 비교적 집중되어, 수출국가의 시장변동이나 상황이 쉽게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에 영향을 미침
- 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의 수입국가 중 태국이 약 50%를 점유. 기타지역도 모두 아시아 국가임. 동남아 국가 기후는 열대과일의 성장에 적합하고 중국과의 거리 또한 가까움.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은 열대지역이 비교적 적어, 이러한 요소들이 동남아 국가 기타 신선과일 수입과 가장 큰 관계가 있음
- 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은 한국에서 수입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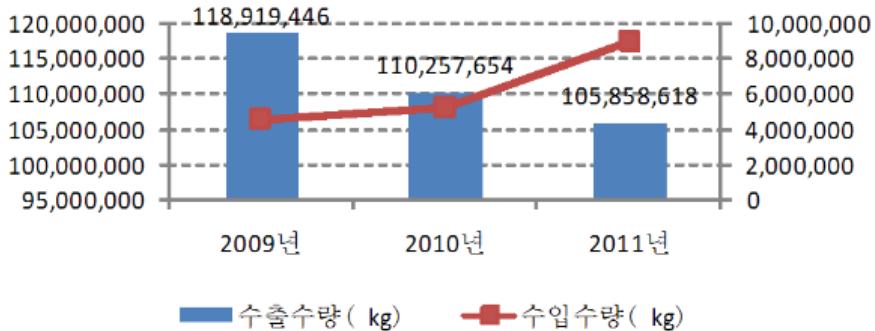
3) 2009~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입 추세분석

《 2009~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출입 현황 》

(단위 : US\$, kg)

| 연도 | 수출량 | 수출금액 | 수입량 | 수입금액 |
|-------|-------------|-------------|-----------|-----------|
| 2009년 | 118,919,446 | 59,084,000 | 4,561,625 | 2,731,000 |
| 2010년 | 110,257,654 | 78,942,000 | 5,258,582 | 4,266,000 |
| 2011년 | 105,858,618 | 102,998,887 | 9,023,007 | 6,851,902 |

《 2009~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 수입 추세도 》



- 전체적으로 볼 때, 2009~2011년 기타 신선과일의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큼
- 2009~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의 수출량은 매년 소폭 감소 중임. 그러나 수출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9~2011년 중국 기타 신선과일의 수입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장속도도 비교적 빠름. 연평균 성장률은 약 49%임. 소비자의 소비수준과 과일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수입과일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밤

UAE

(아랍에미리트연합)

1. 수요동향
2. 경제동향
3. 유통구조
4. 참고자료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1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수요동향

- 밤의 수요는 지난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기타 견과류에 비해 그 수요는 미미함
 - 밤의 주요 공급국은 중국,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태국 등이며 중국산 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 한국산 밤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공급량이나 수요가 타 국가산 밤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시장에 유통되는 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생밤(Raw Chestnuts), 군밤(Roasted Chestnuts), 껍질 깬 밤(Peeled Chestnuts), 가공 밤(Water Chestnuts, Glazed Chestnuts (Sugar Coated))
 - 밤 관련 제품인 밤가루(Chestnut Flour), 밤잼(Chestnut Spread), 밤시럽 등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 다음은 바이어의 의견을 종합한 국가별 시장 점유율임

《 국가별 시장점유율 》

(단위 : %)

| 생산국 | 시장점유율 |
|-------|-------|
| 중국 | 70 |
| 인도 | 5 |
| 아르헨티나 | 5 |
| 미국 | 5 |
| 태국 | 5 |
| 프랑스 | 3 |
| 이탈리아 | 3 |
| 영국 | 2 |
| 한국 | 2 |

자료) 바이어 의견종합

- 밤은 다양한 국적 및 연령대에게 인기 있는 식품으로, 주요 소비자층은 10대 및 중년층임
 - 가공 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껍질 깬 밤(Peeled Type)이며 가공 밤(Glazed Type & Water Chestnut) 또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소비자들은 생밤보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간이매점(Kiosk),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 밤을 선호함

1) 관세율

- UAE(아랍 에미리트 연방)내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음.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간에는 관세가 없으며, 기타 국가에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됨

《 관세율 》

(단위 : %)

| H.S 코드 | 품목 | 관세율 |
|--------|--------------|-----|
| 080240 | 밤(Chestnuts) | 5 |

자료) Dubai Customs

2) 수입통계

《 2009-2011 수입통계 》

(단위 : US\$, %)

| 순위 | 국가 | 수입액 | | | 수입비중 | | | 전년대비 증감율 |
|-----|-------|-----------|-----------|-----------|-------|-------|-------|----------|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1 | 중국 | 1,758,515 | 1,234,011 | 1,975,485 | 98.1 | 97.5 | 93.0 | 60.1 |
| 2 | 아르헨티나 | 0 | 0 | 40,651 | 0 | 0 | 1.9 | 0 |
| 3 | 터키 | 20,026 | 15,143 | 31,121 | 1.1 | 1.2 | 1.5 | 105.5 |
| 4 | 미국 | 0 | 0 | 27,867 | 0 | 0 | 1.3 | 0 |
| 5 | 프랑스 | 11,800 | 0007,165 | 16,476 | 0.7 | 0.6 | 0.8 | 130.0 |
| 6 | 인도 | 0 | 0 | 14,524 | 0 | 0 | 0.7 | 0 |
| 7 | 이탈리아 | 0 | 0 | 12,081 | 0 | 0 | 0.6 | 0 |
| 8 | 태국 | 0 | 4,020 | 3,604 | 0 | 0.3 | 0.2 | -10.4 |
| 9 | 한국 | 0 | 509 | 2,349 | 0 | 0 | 0.1 | 361.5 |
| 10 | 영국 | 0 | 0 | 735 | 0 | 0 | 0 | 0 |
| 총 계 | | 1,793,316 | 1,266,063 | 2,125,385 | 100 | 100 | 100 | 67.9 |

자료) World Trade Atlas(HS Code : 080240)

-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World Trade Atlas)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당 HS코드의 2011년 UAE(아랍 에미리트 연방) 수입액은 2백 1만 달러로 2010년 대비 수입액이 67.9% 대폭 증가하였음
- 중국이 1백 9십만 달러를 수출, 전체 수입의 93%로 수입대상국 1위를 차지함. 이는 전년대비 60.1%나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아르헨티나는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였으며, 터키는 2010년 대비 105.5% 가량 증가한 3만 달러를 수출함. 그 뒤로 미국, 프랑스, 인도, 한국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에 포함됨
- 한국은 2010년 대비 361.5% 가량 증가한 2천만 달러를 수출하며 9위에 올랐으나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편임

2 경쟁동향

- 밤 유통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산, 태국산 밤을 취급 중임. 소수 업체가 한국산 밤을 취급한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 높은 가격을 이유로 단발성 거래에 그침
- 유통업체들은 생밤보다 가공 밤(Peeled type, Glazed Chestnuts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다음은 바이어의 의견을 종합한 시장에 유통되는 주요 밤 브랜드임

《 주요 밤 브랜드 》

(단위 : US\$)

| 제품명 | 원산지 | 유통기간 | 제품사진 | 가격 |
|------------------|-----|------|--|-----------|
| American Classic | 중국 | 2년 |  | US\$ 1.56 |
| Good Luck | 중국 | 2년 |  | US\$ 1.48 |
| Golden Swan | 태국 | 2년 |  | US\$ 1.45 |

자료) 무역관 코트라 두바이 자체조사

1) 밤 마케팅 사례, 'Castanea'

- UAE(아랍 에미리트 연방)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서 인기 있는 Castanea
 - UAE의 가장 인기 있는 밤 브랜드는 Royal Crown Catering Services사의 Castanea임
 - 2002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키오스크 디자인, 브랜드 로고 노출, 제품 믹스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였음
 - 대부분의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동 브랜드는 UAE,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 UAE 전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극장, 놀이동산 등에 간이매점(Kiosk)을 설치, 제품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다양한 제품 컬렉션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음
 - Castanea가 판매하는 제품은 구운밤(Fresh Roasted Chestnuts), 껍질 깬 구운밤(Peeled Roasted Chestnuts),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 밤잼(Chestnut Spreads (Regular & Light)), 밤 초콜릿(Chestnut Chocolate) 등임

《 제품별 세부사항 》

| | |
|----------------------|---|
| 생밤(Raw Chestnuts) | - 1kg, 2kg, 5kg, 10kg 단위로 판매됨 - 10kg는 약 US\$ 32.69 |
| 껍질 깬 밤(Peeled Type) | - 120gm US\$2.31 (Petrol Bunk 소매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 120gm US\$ 2.72 (Castanea Kiosk) |
| 마롱글라세(Marron Glaces) | - 300gm 단위로 판매, U\$ 25.88 |

제품 이미지



생밤



껍질 깬 밤



마롱글라세

자료)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판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껍질 깬 밤과 마롱글라세이며, 밤 관련제품인 밤잼, 밤시럽 등도 인기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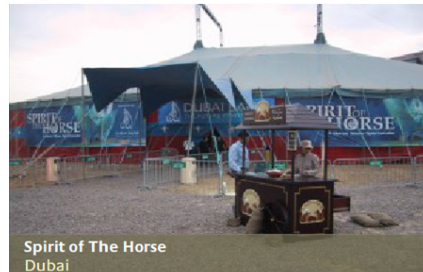
껍질 깬 밤



밤 판매 키오스크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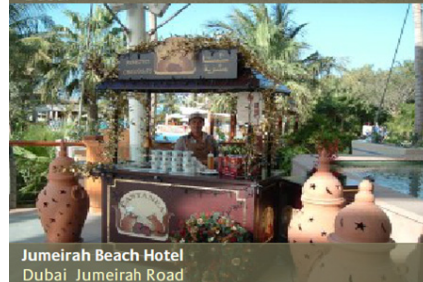
Shopping Festival
Dubai



Spirit of The Horse
Dubai



Global Village
Dubai



Jumeirah Beach Hotel
Dubai Jumeirah Road



FIFA Beach Soccer World Cup 2009
Umm Suqqeim Beach Dubai



Al Qasr Hotel
Jumeirah Dubai

3 유통구조

1) 유통경로

- 대부분의 해외 제조업체들은 현지 에이전트(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함. 간혹
실 수요자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활한 물량공급 및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대부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함
- 한국 업체는 진출 시 Castanea와 같이 규모 있고 최종 수요처와의 거래량이 많은
유통업체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astanea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는 중국산 밤을 대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
로 한국 업체도 중국산 밤을 고려해 가격 책정을 해야 함
- 밤(생밤, 가공 밤 포함)을 포함한 식품류의 수출 시 각 에미리트 식품 당국(Emirates
Food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수출업체 또한 정부기관의 라벨링을 마쳐야
함 (참고자료 ‘수출입통관제도’ 참고)

2) 밤 취급 대형 유통업체

| | |
|------|--|
| 업체명 | Carrefour |
| 주소 | P. O. Box -22797, Dubai, UAE |
| 전화번호 | 971-4-230-2100 |
| 팩스 | 971-4-295-5009 |
| 이메일 | |
| 홈페이지 | www.carrefouruae.com |
| 업체명 | Lulu |
| 주소 | P. O. Box -4048, Abu Dhabi, UAE |
| 전화번호 | 971-2-642-1800 |
| 팩스 | 971-2-642-1716 |
| 이메일 | |
| 홈페이지 | www.lulumea.com |

| | |
|------|--|
| 업체명 | Union Co-operative Society |
| 주소 | P. O. Box -294448, Dubai, UAE |
| 전화번호 | 971-4-333-1816 |
| 팩스 | 971-4-320-1612 |
| 이메일 | |
| 홈페이지 | www.ucs.ae |

| | |
|------|--|
| 업체명 | Spinneys |
| 주소 | P. O. Box -677, Dubai, UAE |
| 전화번호 | 971-4-355-5250 |
| 팩스 | 971-4-355-5261 |
| 이메일 | |
| 홈페이지 | www.spinneys-dubai.com |

| | |
|------|--|
| 업체명 | Al Maya Group |
| 주소 | P. O. Box -8476, Dubai, UAE |
| 전화번호 | 971-4-282-1555 |
| 팩스 | 971-4-282-6660 |
| 이메일 | |
| 홈페이지 | www.almayagroup.com |

4 참고자료

※ 수출입 통관제도

1) 수입관련제도

□ 수입 관련제도

- UAE(아랍 에미리트 연방)는 현지에 제조업 기반이 미비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음료 및 생활 소비재를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쿼터제와 같은 수입관련 제도가 없음

□ 수입금지 품목

- 무기, 마약 및 일부 의약품
 - 의약품은 미국의 FDA 승인과 유럽의 CE승인을 획득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 외설 비디오와 DVD, 책
 - 수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직접 반입도 금지되어 있음

□ 관세

- 수입관세 5%
 - 수입관세는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GCC 관세협정에 따라 GCC국가(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모두가 역외 공산품에 대해 공통 수입관세 5%를 적용하고 있으며,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간에는 관세가 없음
 - UAE에서는 술과 담배에 한해 'No.(19) of 2002' 개정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술 50%, 담배100%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VAT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발효되지 않은 상태임

○ 재수출용 물품 관세 환급

- 재수출용 물품 수입 시 B. E. (Bill of Entry)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산정된 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 E. 상의 날짜로부터 180일 내에 재수출하고 재수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함

○ 면세품목

- 산동물 (말, 양, 염소, 가금류, 노새, 당나귀 등)
- 생고기, 냉동고기, 염장고기, 내장류 (소과 동물, 말, 노새, 당나귀)
- 활어
- 냉동 또는 생 생선살 (생선각 등 법조항 No. 03.04 조항에 해당치 않는 것)
- 건조, 염장, 훈제된 생선 등
- 가공하지 않은 원유(소, 양 등의)
- 가공유, 요구르트, 치즈 등
- 조류의 알, 천연꿀
- 산식물, 야채(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파류식물,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상추, 치커리)
- 견과류, 과일, 향신료(계피, 바닐라, 씨앗, 생간, 사프론 등)
- 곡류(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등)
- 파종용 씨앗
- 음료용 생수, 소금, 수혈용 혈액, 법조항 No.30.01, 30.05, 30.06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
- 비료, 인쇄물(서적, 브로셔, 신문, 잡지 등)
- 다이아몬드 원석 및 가공석 (세팅되기 전단계), 천연 및 양식 진주(세팅되기 전단계)
- 금, 은
- 비합금 철강원자재 등
- 기타 - 상세내역은 UAE(아랍 에미리트 연방) 두바이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dxbcustoms.gov.ae/>)에 있는 면세품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함

2) 통관 및 검역제도

□ 통관/검역제도

- UAE(아랍 에미리트 연방)는 각 에미레이트별로 세관을 운영해 독자적인 통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음
 - 두바이 지방자치단체(Dubai Municipality)는 E-Service의 하나로 식품 수입 및 재수출 체제(Food Import Re-Export System, FIRS)를 운영하고 있음. FIRS는 라벨링, 증명서 발급 등 식음료 수입의 일련과정을 총괄함
 - 두바이중앙연구소(Dubai Central Laboratory)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음료에 한해 통관 시 모든 컨테이너마다 각 제품의 샘플군의 화학성분 및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입고, 알코올 성분 함유, 할랄증명서가 없는 제품의 유통 등)의 경우 수거하여 현지에서 처리하였으나 요즘은 다시 수입국으로 돌려보냄
- 두바이 중앙 연구실 검사대상 품목
 1. 우유와 유제품
 2. 영아 및 유아 식품
 3. 물과 미네랄워터
 4. 청량음료와 캔 주스
 5. 과일과 채소
 6. 고기와 식육 가공품
 7. 난제품
 8. 곡류, 지방 종자, 견과
 9. 향신료와 약초
 10. 파스타와 마카로니 제품
 11. 간식용 음식 및 베이커리 제품
 12. 완숙된 당과제품, 토피 사탕, 초콜릿

- 13 유지
14. 레디푸드
15. 꿀과 설탕 대용물
16. 농장 제품
17.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
18. 식품이 아닌 상품들
19. 가공 과일과 채소 제품
20. 생선과 생선 제품
21. 음식산업을 위한 재료

※ **참고자료** : 식품환경연구과(Food & Environment Lab.)에 자주 묻는 질문(FAQ)

1) 식품검역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식품환경연구과(Food and Enviromental Laboratory Section)의 LIMS시스템에 식품검역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사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식품검역 이후 샘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 제출하신 식품의 양이 충분했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3) 검역소에서 샘플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수수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 예, 수수료 지불 원본 영수증을 재정부(Financial Department)에 제출하시면 환불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식품검역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UAE 식품수입 기준에 적합한 식품인지 화학물 및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5)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돼지고기 성분도 감지가 가능한가요?

- 예, 모든 육류(가공)제품에 포함된 돼지고기 성분감지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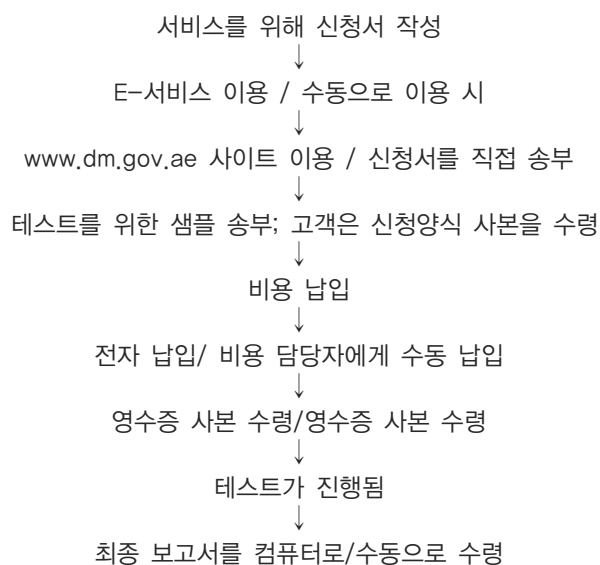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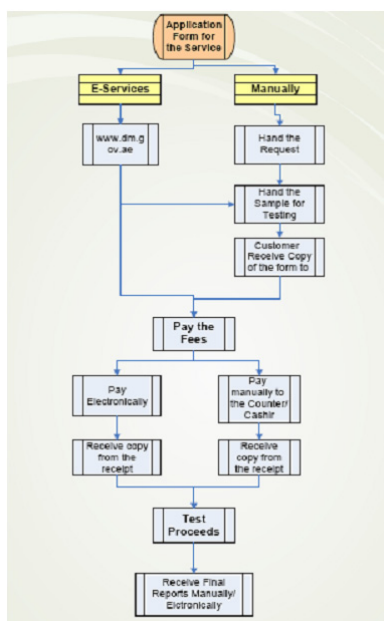
6) 성분감지에 어떤 기술이 사용되나요?

- 돼지고기 성분(DNA)을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분자 분석시스템을 사용합니다.

7) 식품 내 박테리아 성분을 빠르게 분석해 낼 수 있나요?

- 예, 분자분석 기술을 통해 박테리아 존재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검역 프로세스 순서도



□ 통관절차

○ 두바이 세관 수입/수출 통관절차

〈수입과 수출 통관절차〉

※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다음과 같은 통관 절차에 따름

1. 통관 신고양식에 상세한 식품정보를 기입하고 통관에 필요한 문서를 함께 제출
2. 승객들의 물품과 현금에 대한 세관신고
3. 관할세관에 세관신고 등록
4. 식품성분 검사를 위한 식품샘플 송부
5. 관세 산정을 위한 수입식품 가치 평가
6. 물품출하

〈수입〉

1. 해외에서 현지시장으로의 수입

○ 절차 :

- 1) 세관신고 서류 수령 및 확인
- 2) 수입제한품목 확인 및 관세율 적용
- 3) 관세 및 등록비 징수
- 4) 수입자에게 서류 인도, 세관은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

○ 필요서류 목록 :

- 1) 수입신고서
- 2) 화물인도 지시서(D/O), 인도 회사는 UAE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 업체여야 함
- 3) 선하증권(B/L) 원본
- 4) 수입식품이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기관들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서

- 5) 수출업체가 발급한 물품수량, 상세내역 및 총가치가 명시되어 있는 원본송장
- 6) 원산지의 상공회의소에서 승인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 7) 중량, 포장방법 및 HS코드가 명시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8) 수입품목이 면세품인 경우 관세청에서 발급한 공문서(Local Purchase Order 포함)
- 9) 수입업체(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2. 재수출을 위한 국가 외부에서의 상품 수입

○ 절차 :

- 1) 세관신고 서류 수령 및 확인
- 2) 은행지불보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정보 제공
- 3) 보증금(결제수단이 현금인 경우) 및 등록비 징수
- 4) 수입자에게 서류인도, 세관은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

○ 필요서류 목록 :

- 1) 수입신고서
- 2) 화물인도 지시서(D/O), 인도회사는 UAE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여야 함
- 3) 선하증권(B/L) 원본
- 4) 수입식품이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기관들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서
- 5) 수출업체가 발급한 식품수량, 상세내역 및 총가치가 명시되어 있는 원본송장
- 6) 원산지의 상공회의소에서 승인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 7) 중량, 포장방법 및 HS코드가 명시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8) 수입업체(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3. 가통관 (Temporary Admission)

전시회 상품진열 및 고장제품 수리 등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식품포함)이 임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제품에 따른 관세율을 보증금으로 징수, 재수출시 환급됨

○ 절차 :

- 1) 세관신고 서류 수령 및 확인
- 2) 은행지불보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정보 제공
- 3) 보증금 및 등록비 징수
- 4) 수입자에게 서류 인도, 세관은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

○ 필요서류 목록 :

- 1) 수입신고서
- 2) 화물인도 지시서(D/O), 인도회사는 UAE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여야 함
- 3) 선하증권(B/L) 원본
- 4) 수입식품이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기관들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서
- 5) UAE내 수입업체가 발급한 수입물품의 반출목적, 체류기간, 제품가치 등 세부적인 내용을 표기한 공문
- 6) 수출업체가 UAE내 수입업체에게 발급한 제품의 총수량, 상품내역 및 총가치를 명기한 원본 송장
- 7) 원산지의 상공회의소에서 승인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 8) 중량, 포장방법 및 HS코드가 명시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9) 수입업체(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 두바이 세관 통과/환적별 통관절차

〈세관 통과 및 환적 통관 절차〉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업자(외국인 회사) 또는 UAE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돼야 함. 총 상품가치에 비례한 보증금을 징수, 물품 도착 30일 내 환적이 이뤄져야 함. 수입물품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 후 등록함

○ 절차 :

- 1) 세관신고 서류 수령 및 확인
- 2) 보증금(결제수단이 현금인 경우) 및 등록비 징수
- 3) 수입자에게 서류 인도, 세관은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

○ 필요서류 목록 :

- 1) 외국 수입업자 또는 UAE내 관할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에이전트 이름이 명시된 화물인도 지시서(D/O)
- 2) 수출업체가 외국 수입업체에게 발급한 판매 송장(Sale Invoice) 사본
판매 송장에는 총수량, 상세상품기술, 각 물품에 대한 가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3) 수입상품에 대한 중량, 포장방법, HS코드가 각 상품별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환적〉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입업자(외국인 회사) 또는 UAE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돼야 함. 수입물품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 후 등록함

○ 절차 :

- 1) 환적 통관을 위한 서류 수령 및 확인
- 2) 환적 서류(Transshipment order)에 세관신고 번호 기입
- 3) 고객(client)에게 서류 인도, 세관은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

○ 필요서류 목록 :

- 1) 화물 인도 지시서 (D/O)
- 2) 선하증권(B/L)

※ 식음료 제품 수입관련 문제발생 사례

- 1) 드링크 제품의 경우 유통 중 알코올이 발생하는 것을 담당 무역업자가 알지 못하였으나 통관 후 두바이 정부 실험 테스트 결과 발견됨. (통관 시 컨테이너에서 샘플을 채취 테스트함)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에 현지에서 파기하였으나 지금은 원산지로서 돌려보내 운송비에 대한 이중부담을 겪고 있음
- 2) 현지슈퍼를 운영하는 담당자에 따르면 통관에서 검사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검역원이 국가별로 나뉘어 있지 않은데다, 대부분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제2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어 아랍어 라벨링의 경우 잘못 부착되더라도 식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3) 일부 제과류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0.03%의 알코올 처리를 해서 이로 인해 UAE내에 수입이 안 됨

3) 라벨링 규정

□ 관련법 및 규정

- 라벨링 규정은 UAE의 각 에미레이트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① 두바이 : 두바이 지방 자치단체(Dubai Municipality)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epartment)에서 라벨링 규정을 담당함
 - 두바이 지방자치단체 : www.dm.gov.ae
 - ② 아부다비 : 아부다비 지방자치단체(Abu Dhabi Municipality)의 아부다비 식품관리국(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에서 라벨링 규정을 담당함
 - 아부다비 식품관리국 : www.adfca.ae
- 두바이의 경우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epartment) 소속 식품무역부(Food Trade Section)의 식료품 수출입, 라벨허가, 건강 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 등의 업무 관련 지원을 하고 있음

- 식품수입 및 재수출체제(Food Import Re-Export System, FIRS)를 통해 라벨링 허가를 진행해야 함
- FIR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한 뒤, 식품샘플과 라벨(원본 또는 복사본)을 식품무역부(Food Trade Section)에 제출해야 함. 샘플과 라벨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식품무역관리사무소(Food Trade Control Office)에서 허가서를 발급함
- 가공하지 않은 야채나 과일의 경우 아래 라벨링 표시 사항에서 1, 2, 6, 7, 10, 12번만 준수하면 됨
- 라벨은 GCC 기준 9-2007에 준해야 하며 라벨 사본 요청 및 기준 관련 문의는 에미리트 기준 및 계측 당국(Emirates Standard & Metrology Authority)에 하기바람
- ☎ 두바이 : +971-4-294-4434 / 아부다비 : +971-2-671-1110

□ 라벨링 규정

- 라벨링 표시 및 준수사항
 - ① 브랜드명
 - ② 제품명(식품에 대한 간략설명)
 - ③ 식품성분(중량이나 양에 따라 나열)
 - ④ 모든 상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⑤ 식품의 제조, 포장, 유통 또는 수입자의 이름
 - ⑥ 순 중량 또는 양
 - ⑦ 원산지
 - ⑧ 상품 바코드
 - ⑨ 일련번호
 - ⑩ 저장상태
 - ⑪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 언급
 - ⑫ 라벨은 아랍어로 써야 함. 승인된 스티커는 식품 라벨을 아랍어로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최소 2, 3, 7번은 라벨이나 스티커에 아랍어로 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10, 11, 13, 14번은 요구될 시 표시함

⑬ 상품 사용설명서(필요시)

⑭ 영양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유아 및 환자를 위한 기능식품은 제외)

○ 모든 식품류는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면 안 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의 라벨 표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없음(UAE는 소비자 권리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미약함)
- 칼로리 표시에 대한 사항은 의무는 아니나 점차 당뇨병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비만 방지를 위해 추후에 적용할 예정임.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이나 내용은 없음
- 식품에 육류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증명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함
-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판매 불가능

밤

사우디아라비아

1. 국가개요
2. 밤 수입업자 및 수입현황
3. 향후 밤 취급 가능 업체
4. 밤 시장규모
5. 밤 유통경로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2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국가개요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내륙에서 가장 큰 나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제2의 석유 수출국임. 석유는 수출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수익의 약 75퍼센트를 구성함. 또한 국가의 복지혜택이 잘 된 나라임



| | |
|--------------|--|
| 수도 | 리야드(동경 46°46′ 북위 24°39′) |
| 공식 언어 | 아랍어 |
| 정부 | 단일 이슬람교(절대군주제) |
| 왕 |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Abdullah bin Abdul Aziz) |
| 왕자 | 나이프 빈 압둘 아지즈(Nayef Bin Abdul Aziz) |
| 설립(왕국 설립연도) | 1932년 8월 14일 |
| 총면적 | 2,149,690 km ² (13th) / 830,000 sq mi |
| 물(%) | 0.7 |
| 인구(2010년 기준) | 27,136,977 (46th) |
| 밀도 | 12/km ² (216th) / 31/sq mi |

| | |
|--------------------|--------------------------|
| 국내총생산(GDP)(PPP) | 2010년 기준 |
| 2010년 GDP | \$976.223 billion (22th) |
| 2010년 1인당 GDP | \$25,345 |
| 인간개발지수(HDI) (2011) | 0.770 (high) (56th) |
| 통화 | 사우디 리얄 (SR) (SAR) |
| 표준 시간대 | AST (UTC+3) |

-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라
 -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보유국이면서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지역에서 가장 진취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으로 조성하는데 성공함. 나라의 이점을 자본화하기 위해 전략적 목표들을 설정함
- 메나(MENA)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용이한 곳
 - 해외 사업 리더들이 중동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호 투자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우디는 저가로 시설운영사업을 하면서 국제사업 환경 조성을 하였음. 현재 세계에서 국제사업을 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 11위에 올랐고, 전년도에서 두 단계, 2005년 이후로 56단계 오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중동의 가장 큰 경제지역
 -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와 삶의 질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임. 국가의 실제 GDP증가율은 2011년 7%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가 상승과 더 많은 석유 생산, 그리고 정부의 높은 소비에 따른 것임. 재정 흑자는 소비가 커졌음에도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평균 12%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높아진 국제 유가와 생산량의 증가로 수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사우디는 중동에서 유력한 집단으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고 현재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고자 다방면의 개혁 전략에 힘쓰고 있음. 지속적으로 정유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을 높이는 반면 다른 지역에 경제적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를 다각화함. 더 많은 직업창출과 다른 지역들에 부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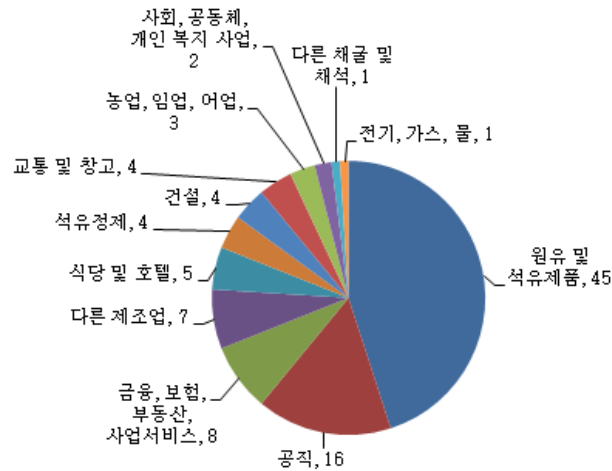
《 사업수행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순위 》

| 항 목 | 순 위 |
|---------|-----|
| 사업하기 용이 | 11 |
| 사업 개시 | 13 |
| 자산 등록 | 1 |
| 투자자 보호 | 16 |
| 세금 지불 | 6 |

자료) 세계은행

《 2010 부분별 사우디아라비아 GDP 》

(단위 : %)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청(Sama) / (GDP=국내총생산)

2 밤 수입업자 및 수입현황

- 사우디 내 밤을 수입하는 업체는 10여 개 사 이상으로 파악되며, 그 중 3개 업체와 접촉, 각각의 회사로부터 시장 정보를 입수하였음. 이들 3개사는 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 물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함
- 사우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입 통계자료에는 밤(HS080240)과 밤 가공품(HS081290, HS200600)에 대한 별도의 수입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수입량이 미비하기 때문임. 사우디의 경우 수입 금액이 적은 품목일 경우 별도의 수입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 밤은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되고 기간은 9월~12월이며, 1kg 단위 양파망 모양으로 포장되어 수입됨. 수입가격은 10kg에 10~12달러임
- 다음 3개사 중 Maher Khalid Al Harbi Est사의 경우 중국산보다 품질이 뛰어난 밤에 대해 큰 관심을 표했으며,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힘. 따라서 한국산 밤 수출조건이 맞는 경우 연락필요

1) Mohammed Abdallah Sharbatly Co, Ltd.

- Al Safa District 11, N 25 St., Abdallah Al-Sharbatly St. (2053)
P.O.Box 4150, Jeddah 21491, Saudi Arabia
- Tel : 00966-2-679-0000
- Fax : 00966-2-693-2929 / 678-2200
- 이메일 : jeddah@sharbatlyfruit.com
- 웹사이트 : www.sharbatlyfruit.com
- 담당자1 : Mr. Ted Lao, 내선 : 345
- 담당자2 : Mr. MajdiAbdulMonemat, 내선 : 641
휴대폰 : #00966-50-636-5957

- 이 업체는 사우디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수입 및 유통하는 가장 큰 업체임. 1930년에 설립되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사가 있으며 바레인과 두바이에도 있음. 담당자 (Ted Lao)에 따르면 동사가 매해 시즌마다 4~5개 컨테이너의 밤을 수입하며, 수입량은 사우디 전체 밤 소비량의 약 5%로 추정하고 있음. 한국의 밤 수출업체에도 관심이 있으며 샘플과 가격제시를 요청함

2) Abdullah Abbar and Sons Cold Stores

- Abbar and Zainy Cold Stores Building, Hind Bint Al Walid Street, Petromin Area, P.o.box 2495, Jeddah 21451, Saudi Arabia
- Tel : 00966-2-637-1315
- Fax : 00966-2-637-3012
- 웹사이트 : www.abbar.com / www.abbarcoldstores.com
- 담당자1 : Mr. Naseem Azam, 내선 : 1207
- 담당자2 : Mr. Ishtiaq, 내선 : 1208
- 이 업체는 사우디에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수입 및 유통하는 주요 업체임. 전국에 유통망이 있음. 담당자(Ishtiaq)는 매년 2개의 컨테이너에 밤을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업체와 거래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 샘플과 가격제시를 요청함

3) Maher Khalid Al Harbi Est.

- Al Safa District, Jeddah, Saudi Arabia
- 담당자 : Mr. Mohammed Shaher Daas (Abu Subhi)
- Mobile : # 00966-55-559-0260
- 동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밤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전문업체로, 유통 가능한 가격

대비 품질도 괜찮다면 시즌에 3개의 컨테이너를 수입할 수 있다고 함. 본 조사차 가격과 샘플을 요청하자 큰 관심을 보임

3 향후 밤 취급 가능 업체

- 견과류 및 농산물 전문 수입 바이어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재 밤을 직접 수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밤 수입 및 유통에 관심을 보인 바이어들이 있었으며, 동바이어들의 정보는 아래와 같음. Universal사의 경우 사우디 내 최대 농산물 수입 및 유통상으로 현재 밤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취급 가능하며, 관련정보 제공을 희망하였음. ALNUKALY사의 경우 생밤보다는 밤 가공제품에 관심을 표하였으며, 특히 군밤과 밤 시럽 제품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 수신을 희망함

1) Universal Cold Stores Trading Company Limited

- P.o. Box 983 Dammam 31421, Saudi Arabia
- TEL : 00966-3-8425072 / 8426599 / 8425465
- Fax : 00966-3-8151898 - 8150107
- 웹사이트 : www.universalcsc.com
- 담당자 : Mr. Sheraz, 내선 : 251
- 동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최대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로 7개의 냉장보관시설과 15개의 창고를 소유함. 담당자(Sheraz)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밤을 수입하여 유통한 적은 없지만, 향후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포함. 한국산 샘플 및 가격과 협력조건 제시를 요청함

2) ALNUKALY INTERNATIONAL TRADING CO.

- P.o. box 11380, Jeddah 21453, Saudi Arabia
- Tel : 00966-2-635-0009
- Fax : 00966-2-638-0728
- 웹사이트 : <http://www.alnukaly.com>
- 담당자 : Mr. Sikander Kasim
 - 동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견과 수입 및 유통업체 중 하나로 구운밤과 시럽 밤에 관심이 있음. 담당자(Sikander)는 밤 시장이 잘 형성되어있으므로 제품 취급 고려를 위해 한국산 샘플과 가격제시를 요청함

4 밤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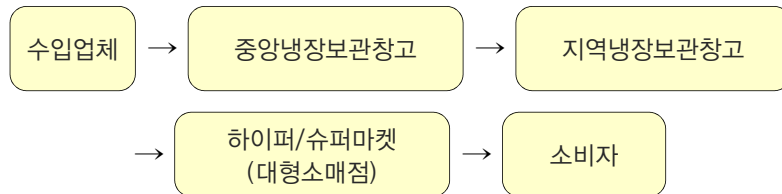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업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결과 : Mohammed Abdallah Sharbatly사는 그들의 밤 시장점유율이 5%이고, 시장규모는 약 80컨테이너라고 한 반면, 가장 큰 수입업자이자 유통업자라고 소개한 모하메드(Mohammed Shaher Daas)씨는 그의 시장점유율이 총 시장의 20%이고, 전체 시장규모가 약 60컨테이너라고 함
- 그 외 업체들 및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밤 시장은 최소 60컨테이너 이상, 최대 80컨테이너로 추정함



5 밤 유통경로

- 밤은 과일이나 야채처럼 시장이 크지 않아 2차 업체나 소규모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로 수입되지 않음
- 밤 수입업자 대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냉장보관시설과 창고, 판매망을 갖고 있어서 자체로 밤을 유통시킴
- 밤이 일단 수입되면, 먼저 수입업자의 중앙창고시설로 이동되어 거기서 전국에 있는 창고시설로 가고, 그 다음에 소매상이 유통함. 수입 바이어가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10kg에 13.33달러에서 16달러임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밤은 구매가 쉽지 않으며, 하이퍼/슈퍼마켓 체인과 일부 대형 과일채소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소매점들은 고정 공급업자로부터 밤을 제공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함. 소비자는 1kg에 3달러 정도로 구매함

1) 유통경로



2) 판매 및 소비 현황

- 밤 가공품의 경우 소매점 조사 결과 시럽과 구운 밤이 판매되고 있었음. ALNUKALY사의 경우 밤 시럽을 호주와 터키로부터 소량 수입하고 있었음
- 구운밤의 경우 한 종류만 있고, 마트 진열대 하단에 위치하여 찾기가 쉽지 않음. 원산지는 중국이고 판매가는 약 US 1.47 달러(SAR 5.5)임

《 구운 밤 상품(중국산) 》



앞면



뒷면

- 수입되는 밤 형태는 생밤으로 소비 형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찐밤이나 생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밤을 제빵재료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사우디에서 소비하는 빵 종류는 그 종류가 크로와상이나 케이크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제빵재료에 밤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밤

중 국

1. 생산현황
2. 생산전망
3. 수출입 동향
4. 소비현황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3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시장개요

- 중국의 밤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수출량은 국제시장의 40%를 차지하며 재배면적은 3,000만무(1무≒200평)로 중국의 26개성에 분포되어 있음
- 중국산 밤은 밤알맹이인 소부분이 수출되는 외 대부분이 중국내 시장에서 소비됨. 2009~2011년 중국의 밤 공급량과 수요량은 갈수록 증가되고 수요량은 매년 6~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가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음. 향후 몇 년간 전체적인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2012년 수요량은 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지역은 광범위하며 소비량은 전체 공급량의 60%를 차지하고 1인당 소비량은 0.7kg에 달함. 소비습관의 변화로 요리를 통한 소비로부터 간식용 소비로 변하고 있어 구운 밤 전문점이 많아짐

2)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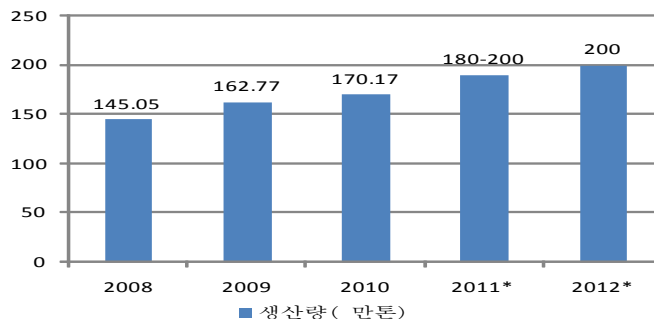
(단위 : 만 톤)

| 연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생산량 | 145.05 | 162.77 | 170.17 | 180-200 | 200 |

자료) 중국농산품가공업년감

※ 2011년과 2012년 정부통계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전 3년간 수치에 근거한 추정치임

《 중국 밤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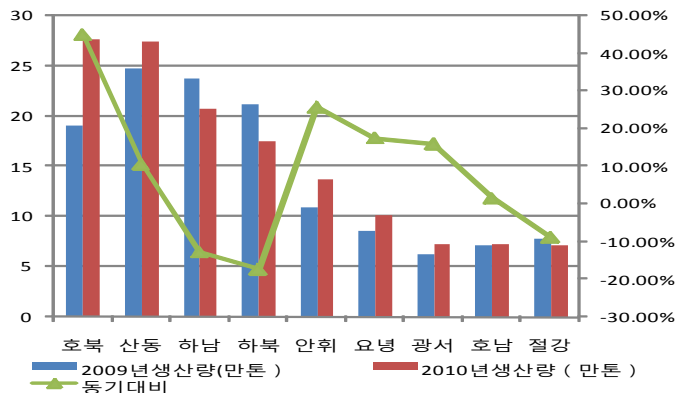
- 2008-2010년 중국의 밤 생산량은 각각 145.05만톤, 162.77만톤, 170.17만톤으로 중국경제림협회가 각 지역에 대한 생산량 조사결과 2011년 중국 중북부 지역의 강수량이 충족하고 재배면적의 확대로 2011년 생산량은 2010년 대비 10%의 증가를 보여 총 생산량은 180~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09~2010년 주요 생산지 생산량 》

(단위 : 만 톤)

| 지역 | 2009년 | 2010년 | 동기대비 |
|-----|-------|-------|--------|
| 호 북 | 19.1 | 27.7 | 45.0% |
| 산 동 | 24.8 | 27.4 | 10.5% |
| 하 남 | 23.8 | 20.7 | -13.0% |
| 하 북 | 21.2 | 17.5 | -17.5% |
| 안 휘 | 10.9 | 13.7 | 25.7% |
| 요 녕 | 8.6 | 10.1 | 17.4% |
| 광 서 | 6.3 | 7.3 | 15.9% |
| 호 남 | 7.1 | 7.2 | 1.4% |
| 절 강 | 7.8 | 7.1 | -9.0% |

자료) 농산물가공업년감



- 2010년 중국의 밤 주요 생산지는 호북, 산동, 하남, 하북, 안휘, 요녕성으로 총 생산량은 2009년대비 4.5% 증가함. 그중 호북성은 45%의 증가폭을 보였고 안휘성은 25.7%, 요녕성은 17.4% 증가하고 하남성과 하북성은 각각 13.0%와 17.5% 하락함

2 생산전망

1) 2012년 밤 생산량 분석

- 추석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석 소비품인 밤이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밤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20~3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원인

- 기후가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면 모두 밤 생산에 영향이 있음. 올해 산둥, 호북, 안휘, 하북성의 대부분 지역은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될 것이며 또한 밤은 한해는 풍년 다음해는 흉년(一大年一小年) 규칙에 따라 지난해 풍작을 거둬 올해는 약간의 감소가 예상됨

○ 병충해 원인

- 올해 산둥, 호북, 안휘, 하북성은 병충해 원인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하락할 것이며 그중 산둥성 연태, 일조 등 지역은 붉은매미나방 병충해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밤 소출이 거의 없음. 이외 호북성 라전, 흥안, 수주, 익창 등 지역도 병충해 원인으로 밤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주요 생산지인 호북성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원인

- 올해 밤이 금방 출시하기 시작하였고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 정도 상승하고 있음. 올해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4~7월 CPI 수치로 볼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점 하락하나 농산물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올해 하북성의 천서(迁西)지역의 밤 가격도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이 외 호북, 하남, 안휘, 운남, 광서 등 지역의 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올해 밤 생산량의 하락으로 가격 상승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이외 일부 지역의 밤 생산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품질이 지난해에 비해 낙후한 원인으로 공급이 수요를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향후 밤 생산 발전추세

○ 안전표준화 생산기술 강구

- 밤은 중국의 전통 과실 중 하나이며, 게다가 대부분이 산릉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서 오염이 되지 않아 유기 밤 식품 개발에 적합함. 때문에 현재 밤 재배 기초 상에서, 안전표준화 생산기술 강구는 밤나무의 생산량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으로 우량종 접목, 합리적인 밀식, 과학적 관리, 경영 집약하여, 밤나무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해, 합당한 기술관리 조치를 강구하여 밤 생산량 향상과 성장을 이룰 것임

○ 신제품 연구개발역량 확대

-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밤은 주로 원재료가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음. 계절적 영향은 밤의 원재료 판매와 산지, 성숙기, 과일대소에 영향을 미침. 각 지역의 밤은 일반적 현지 도시와 인근 지역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음. 또한 밤의 수출도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음. 이런 것들은 밤의 공급과 판매량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선 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신선 밤의 신선도유지냉장처리 시스템을 실행할 것임

3 수출입 동향

1) 해관 HS코드

| HS 코드 | 2011년 | 2012년 |
|----------|--------------------|-------------|
| 08024010 | 신선, 건조, 탈각, 비탈각 포함 | - |
| 08024110 | - | 비탈각/신선, 건조밤 |
| 08024210 | - | 탈각/신선, 건조 밤 |
| 08119010 | 비탈각/ 냉동 밤 | 비탈각/ 냉동 밤 |
| 20081991 | 기타 조제 저장처리 | 기타 조제 저장처리 |

※ 2012년부터 신선, 건조 밤을 탈각과 비탈각으로 분류

2) 수입현황

○ 2010~2012년 밤 수입현황

(단위 : 톤, US천불)

| HS코드 | 품명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1~6월 | |
|----------|-------------------|--------|--------|-------|--------|------------|-----|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08024010 | 신선, 건조 탈각, 비탈각 포함 | 11,978 | 22,067 | 9,197 | 17,893 | - | - |
| 08024110 | 비탈각/신선, 건조 | - | - | - | - | 13 | 33 |
| 08024210 | 탈각/신선, 건조 | - | - | - | - | - | - |
| 08119010 | 비탈각/냉동밤 | 49 | 182 | 25 | 149 | - | - |
| 20081991 | 기타 조제 저장처리 | 163 | 463 | 67 | 448 | 46 | 281 |
| | 총 계 | 12,190 | 22,712 | 9,289 | 18,490 | 59 | 314 |

○ 2011년 국가별 밤 수입현황

HS코드 : 08024010(신선, 건조, 탈각, 비탈각 포함)

(단위 : 톤, US천불)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한국 | 8,620 | 15,464 | 호주 | 13 | 32 |
| 일본 | 444 | 1,875 | 대만 | 0,004 | 0,004 |
| 이탈리아 | 120 | 522 | - | - | - |

○ 2012년 1~6월 비탈각/신선, 건조밤 수입현황

HS코드 : 08024110(비탈각/신선, 건조)

(단위 : 톤, US천불)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호주 | 13 | 33 | - | - | - |

○ 2012년 1~6월 탈각/신선, 건조밤 수입현황

- HS코드 : 08024210(탈각/신선, 건조)
- 올해 1~6월까지 탈각/신선, 건조밤 수입은 없음

○ 2011년~2012년 비탈각/냉동밤 국가별 수입현황

- HS코드 : 08119010(비탈각/냉동)

(단위 : 톤, US천불)

| 연도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2011년 | 일본 | 25 | 149 |
| | 이탈리아 | 0.004 | 0.32 |
| 2012년 1~6월 | | | 0.32 |

○ 2011년~2012년 기타 조제 저장처리 밤 국가별 수입현황

- HS코드 : 20081991(기타 조제 저장처리)

(단위 : 톤, US천불)

| 연도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2011년 | 스위스 | 67 | 448 |
| | 영국 | 0.010 | 0.2 |
| | 일본 | 0.006 | 0.1 |
| | 이탈리아 | 0.003 | 0.04 |
| 2012년 1~6월 | 프랑스 | | 0.32 |
| | 스위스 | 30 | 166 |
| | 이탈리아 | 0.002 | 0.05 |

3) 수출현황

○ 2010~2012년 밤 수출현황

(단위 : 톤, US천불)

| HS코드 | 품명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1~6월 | |
|----------|----------------------|--------|---------|--------|--------|------------|--------|
| |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 08024010 | 신선, 건조 탈각, 비탈각 포함 | 37,002 | 73,434 | 37,767 | 75,865 | - | - |
| 08024110 | 비탈각/신선, 건조 | - | - | - | - | 5,825 | 13,767 |
| 08024210 | 탈각/신선, 건조 | - | - | - | - | 534 | 1,445 |
| 08119010 | 비탈각/냉동밤 | 261 | 931 | 161 | 724 | 267 | 658 |
| 20081991 | 기타 조제 저장처리 | 13,809 | 52,338 | 1,135 | 5,001 | 5,132 | 20,355 |
| | 총 계 | 51,072 | 126,703 | 39,063 | 81,590 | 11,758 | 36,225 |

○ 2011년 국가별 수출현황

- HS코드 : 08024010 (신선, 건조, 탈각, 비탈각 포함)

(단위 : 톤, US천불)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일본 | 7,397 | 22,476 | 캐나다 | 985 | 1,445 |
| 태국 | 5,300 | 13,196 | 필리핀 | 858 | 1,358 |
| 태만 | 4,319 | 9,903 | 시리아 | 1,059 | 1,294 |
| 아랍에미리트 | 2,290 | 3,238 | 쿠웨이트 | 785 | 1,078 |
| 한국 | 2,077 | 3,140 | 미국 | 610 | 1,076 |
| 사우디아라비아 | 2,219 | 3,050 | 싱가폴 | 430 | 898 |
| 말레이시아 | 1,366 | 2,826 | 러시아 | 654 | 863 |

○ 2012년 1~6월 비탈각/신선, 건조밤 수출현황

- HS코드 : 08024110(비탈각/신선, 건조)

(단위 : 톤, US천불)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태국 | 1,829 | 4,680 | 미국 | 87 | 177,438 |
| 일본 | 1,121 | 3,281 | 아랍에미리트 | 52 | 105,722 |
| 한국 | 1,191 | 1,791 | 이집트 | 28 | 45,523 |
| 대만 | 675 | 1,626 | 사우디아라비아 | 28 | 44,800 |
| 말레이시아 | 544 | 1,430 | 베트남 | 11 | 33,588 |
| 싱가폴 | 140 | 338 | 홍콩 | 32 | 9,313 |
| 이스라엘 | 83 | 197 | 인도네시아 | 5 | 7,098 |

○ 2012년 1~6월 탈각/신선, 건조밤 국가별 수출현황

- HS코드 : 08024210(탈각/신선, 건조)

(단위 : 톤, US천불)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대만 | 225 | 573 | 싱가폴 | 19 | 46 |
| 일본 | 138 | 512 | 한국 | 12 | 12 |
| 태국 | 99 | 230 | 인도네시아 | 1 | 1 |
| 말레이시아 | 39 | 71 | - | - | - |

○ 2010년~2012년 비탈각/냉동밤 국가별 수출현황

- HS코드 : 08119010(비탈각/냉동밤)

(단위 : 톤, US천불)

| 연도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2011년 | 일본 | 127 | 671 |
| | 한국 | 34 | 54 |
| 2012년 1~6월 | 한국 | 216 | 417 |
| | 일본 | 51 | 2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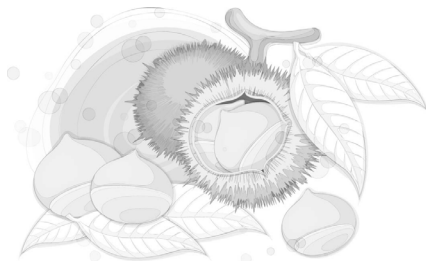
○ 2011년~2012년 기타 조제 저장처리 밤 국가별 수출현황

- HS코드 : 20081991(기타 조제 저장처리)

(단위 : 톤, US천불)

| 연도 | 국가명 | 수입량 | 수입금액 |
|------------|------|-------|--------|
| 2012년 1~6월 | 일본 | 2,653 | 14,471 |
| | 한국 | 1,594 | 3,045 |
| | 포르투갈 | 570 | 1,564 |
| | 미국 | 116 | 553 |
| | 대만 | 96 | 312 |
| | 태국 | 33 | 127 |
| | 일본 | 2,653 | 14,471 |
| | 한국 | 1,594 | 3,045 |
| | 포르투갈 | 570 | 1,564 |
| | 미국 | 116 | 553 |
| | 대만 | 96 | 312 |
| | 태국 | 33 | 127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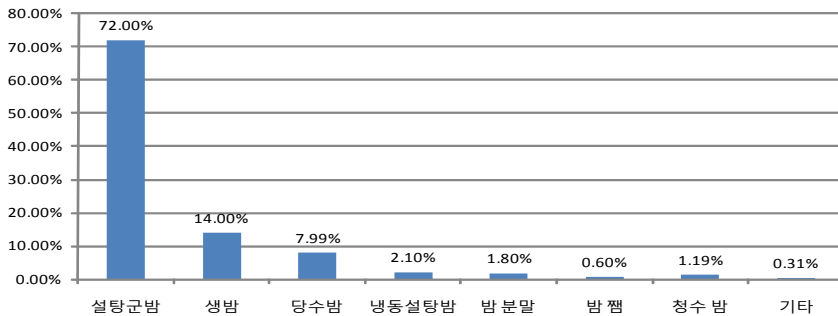


4 소비현황

1) 소비형태

- 최근 소비습관의 변화로 요리 위주로부터 설탕군밤(糖炒栗子: 설탕과 모래를 넣은 팬에 밤을 넣어 센 불로 구움)으로 소비가 대부분이며 대중도시에 소비가 집중되고 특히 연해지역에서 소비가 더 많음

- 소비량 분석



2) 가격동향

- 지역별 도매가격(8월)

| 품명 | 지역 | 가격(kg/元) |
|-----|-------|-------------|
| 생 밤 | 호남장사시 | 7.80~8.50 |
| 생 밤 | 북경부유구 | 4.20~4.50 |
| 생 밤 | 호북무한시 | 17.00~17.60 |
| 생 밤 | 절강장흥현 | 18.00~20.00 |
| 생 밤 | 하북준화시 | 30.00~35.00 |
| 생 밤 | 하남낙양시 | 11.50~12.00 |
| 생 밤 | 산동태안시 | 9.00 |
| 생 밤 | 절강건덕시 | 7.00~9.00 |
| 생 밤 | 강소률양시 | 40.00~45.00 |
| 생 밤 | 요녕단동시 | 30.00~40.00 |

자료) www.alibaba.com

- 8월부터 각 지역의 밤이 새로 출시하기 시작하였고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함. 시장 평균 가격은 6元 /kg~12元 /kg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하였으며 올해 전체적인 가격은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3) 유통형태

| | | | | |
|------|---|---|---|---|
| 사진 |  |  |  |  |
| 제품명 | 대명 밤왕 | 동원 밤 | 밤 가공식품 | 간밤 |
| 생산지 | 하북연산 | 광둥 | 하북천서 | |
| 생산업체 | 북경부억농밤유한공사 | 동원현밤식품가공공장 | 원양식품유한공사 | 당산장리식품유한공사 |
| 중량 | 40g | 4kg | - | 50g |
| 사진 |  |  |  |  |
| 제품명 | 밤 죽 | 밤 주스 | 밤 통조림 | 밤 통조림 |
| 생산지 | 산둥 태산 | 하남 신양 | 산둥 | 호북 |
| 생산업체 | 태안시민생식품유한공사 | 신양시금하원차업유한공사 | 산둥녹윤집단 | 전춘라식품유한책임공사 |

표고버섯

미 국

1. 시장동향
2. 수출입 동향 및 수입관련 제도
3. 유통구조 및 소비동향
4. 한국산 수출확대 전략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3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시장동향

1) 생산동향

□ 미국 시장 현황

- 표고버섯은 과거 수세기동안 아시아 문화의 영향으로 미국 원주민과 미국현지 각 지역 소수민족들의 음식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음. 양송이와 느타리버섯에 이어 세 번째로 생산이 많은 표고버섯은 이미 미국현지에서도 생산량이 타 버섯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최근 항바이러스, 항암, 각종 종양치료용으로 의학계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사들에 의해 추천되는 건강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 생산현황

《 미국 내 생산현황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외 기타버섯류) 》

| 생산작기 | 생산(1,000파운드) | | | 판매량(1,000파운드) | | | 파운드당 가격(US\$) | | |
|---------|--------------|-------|-------|---------------|-------|-------|---------------|------|------|
| | 표고 | 느타리 | 기타 | 표고 | 느타리 | 기타 | 표고 | 느타리 | 기타 |
| 1990/91 | 2,553 | 1,242 | 692 | 2,323 | 1,203 | 622 | 3.73 | 2.67 | 3.15 |
| 1991/92 | 2,802 | 1,098 | 776 | 2,537 | 1,046 | 684 | 4.01 | 3.14 | 3.78 |
| 1992/93 | 2,965 | 1,089 | 961 | 2,752 | 1,000 | 817 | 3.88 | 2.58 | 3.79 |
| 1993/94 | 5,732 | 2,062 | 993 | 5,559 | 1,939 | 906 | 3.7 | 2.5 | 3.6 |
| 1994/95 | 5,649 | 1,980 | 1,165 | 5,396 | 1,800 | 1,046 | 3.86 | 2.65 | 3.56 |
| 1995/96 | 6,140 | 1,941 | 1,495 | 5,665 | 1,791 | 1,379 | 3.49 | 2.49 | 4.15 |
| 1996/97 | 7,025 | 2,695 | 1,609 | 6,661 | 2,542 | 1,485 | 3.39 | 2.59 | 4.7 |
| 1997/98 | 6,624 | 2,210 | 1,277 | 6,281 | 2,073 | 1,168 | 3.15 | 1.94 | 4.18 |
| 1998/99 | 8,680 | 3,729 | 1,256 | 8,254 | 3,547 | 1,201 | 3.15 | 2.16 | 4.21 |
| 1999/99 | 8,635 | 3,573 | 1,326 | 8,173 | 3,346 | 1,211 | 3.29 | 2.16 | 3.87 |
| 2000/01 | 9,778 | 3,817 | 1,397 | 8,939 | 3,629 | 1,316 | 3.17 | 2.13 | 4.69 |
| 2001/02 | 8,454 | 4,273 | 1,541 | 8,024 | 4,035 | 1,424 | 2.92 | 2.01 | 4.02 |
| 2002/03 | 7,476 | 3,997 | 1,431 | 7,059 | 3,562 | 1,287 | 3.08 | 1.91 | 4.56 |
| 2003/04 | 7,762 | 4,208 | 1,692 | 7,542 | 3,968 | 1,651 | 3.24 | 2.05 | 4.47 |

| 생산작기 | 생산(1,000파운드) | | | 판매량(1,000파운드) | | | 파운드당 가격(U\$) | | |
|---------|--------------|-------|-------|---------------|-------|-------|--------------|------|------|
| | 표고 | 느타리 | 기타 | 표고 | 느타리 | 기타 | 표고 | 느타리 | 기타 |
| 2004/05 | 9,085 | 5,428 | 1,436 | 8,616 | 5,128 | 1,327 | 3.25 | 2.35 | 4.9 |
| 2005/06 | 8,014 | 4,765 | 1,377 | 7,685 | 4,563 | 1,188 | 3.25 | 2.15 | 4.85 |
| 2006/07 | 7,155 | 5,265 | 2,180 | 6,985 | 5,055 | 2,113 | 3.36 | 2.41 | 4.84 |
| 2007/08 | 9,848 | 4,371 | 1,330 | 9,673 | 4,253 | 1,330 | 2.69 | 2.88 | 5.16 |
| 2008/09 | 9,715 | 5,384 | 1,605 | 9,458 | 5,057 | 1,364 | 3.19 | 2.46 | 4.14 |
| 2009/10 | 6,684 | 6,294 | 3,434 | 6,417 | 5,840 | 3,172 | 2.75 | 2.56 | 2.18 |
| 2010/11 | 6,702 | 8,196 | 3,276 | 6,420 | 7,739 | 2,740 | 2.99 | 2.37 | 4.58 |

자료)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al Sciences; IFAS Extention, Taylor County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University of Florida, USDA; <http://usda.mannlib.cornell.edu>

□ 지역별 생산현황

- 지난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신선 표고버섯 생산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미국 전체 생산량의 50%에 근접했었으나 현재는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오레곤, 델라웨어, 텍사스, 미주리, 뉴욕, 뉴저지 등 이미 해당 지역 상권을 포함 근접 지역 상권까지의 신선 표고버섯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

《 미국 지역별 버섯 생산현황 (1985~2011) 》

(단위 : 1,000파운드)

| 작기 (Cropyear). 1 | 동부(East). 2 | | 중부(Central). 3 | | 서부(West). 4 | | 계 | |
|---------------------|-------------|---------|----------------|--------|-------------|--------|---------|---------|
| | 신선 | 가공 | 신선 | 가공 | 신선 | 가공 | 신선 | 가공 |
| 1985/86 | 221,785 | 116,919 | 48,988 | 26,740 | 156,431 | 17,093 | 427,204 | 160,752 |
| 1986/87 | 248,011 | 112,845 | 46,412 | 27,780 | 162,876 | 16,469 | 457,299 | 157,094 |
| 1987/88 | 253,476 | 115,215 | 49,509 | 27,046 | 165,910 | 20,663 | 468,895 | 162,924 |
| 1988/89 | 253,039 | 130,141 | 54,588 | 25,425 | 177,048 | 27,518 | 484,675 | 183,084 |
| 1989/90 | 270,655 | 153,504 | 56,598 | 21,164 | 184,651 | 28,420 | 511,904 | 203,088 |
| 1990/91 | 266,060 | 177,985 | 57,891 | 30,181 | 187,970 | 29,064 | 511,921 | 237,230 |
| 1991/92 | 259,017 | 196,158 | 56,716 | 24,071 | 181,226 | 29,644 | 496,959 | 249,873 |
| 1992/93 | 277,338 | 194,841 | 57,026 | 26,465 | 188,017 | 32,670 | 522,381 | 253,976 |
| 1993/94 | 266,629 | 188,713 | 67,079 | 13,296 | 183,128 | 31,954 | 516,836 | 233,963 |
| 1994/95 | 266,229 | 194,134 | 66,522 | 15,798 | 198,646 | 39,649 | 531,397 | 249,581 |

| 작기 (Cropyear). ¹ | 동부(East). ² | | 중부(Central). ³ | | 서부(West). ⁴ | | 계 | |
|--------------------------------|------------------------|---------|---------------------------|--------|------------------------|--------|---------|---------|
| | 신선 | 가공 | 신선 | 가공 | 신선 | 가공 | 신선 | 가공 |
| 1995/96 | 273,695 | 186,283 | 94,352 | 33,355 | 169,077 | 21,108 | 537,124 | 240,746 |
| 1996/97 | 293,164 | 170,090 | 94,514 | 32,531 | 166,102 | 20,276 | 553,780 | 222,897 |
| 1997/98 | 342,635 | 139,495 | 103,173 | 27,015 | 175,729 | 20,631 | 621,537 | 187,141 |
| 1998/99 | 379,410 | 144,443 | 100,701 | 27,765 | 177,722 | 17,719 | 657,833 | 189,927 |
| 1999/00 | 395,683 | 141,896 | 100,549 | 26,448 | 172,309 | 17,509 | 668,541 | 185,853 |
| 2000/01 | 430,478 | 120,475 | 87,183 | 17,294 | 174,969 | 15,810 | 692,630 | 153,579 |
| 2001/02 | 435,209 | 114,859 | 89,241 | 14,614 | 165,518 | 11,666 | 689,968 | 141,139 |
| 2002/03 | 442,972 | 118,220 | 92,947 | 10,158 | 161,329 | 10,772 | 697,248 | 139,150 |
| 2003/04 | 451,339 | 114,808 | 93,305 | 16,219 | 158,852 | 6,639 | 703,496 | 137,666 |
| 2004/05 | 470,915 | 123,933 | 72,485 | 11,648 | 152,919 | 6,183 | 696,319 | 141,764 |
| 2005/06 | 480,993 | 112,929 | 71,377 | 11,241 | 152,214 | 4,923 | 704,584 | 129,093 |
| 2006/07 | 469,774 | 103,239 | 69,696 | 10,125 | 157,239 | 3,776 | 696,709 | 117,140 |
| 2007/08 | 464,105 | 100,654 | 67,111 | 9,948 | 148,470 | 7,060 | 679,686 | 117,662 |
| 2008/09 | 458,395 | 111,552 | 64,995 | 9,360 | 156,938 | 2,656 | 680,328 | 123,568 |
| 2009/10 | 456,516 | 96,769 | 69,967 | 7,387 | 143,472 | 2,953 | 669,955 | 107,109 |
| 2010/11 | 504,313 | 108,404 | 73,218 | 7,524 | 146,219 | 5,215 | 723,750 | 121,143 |

¹ Crop year runs from July to June(생산작기는 전년도 7월~익년도 6월).

² Includes Federal Regions I-IV (CT, MA, NY, NJ, PA, MD, DE, VA, FL, KY, and TN).

³ Includes Federal Regions V and VII (IL, IN, MI, MN, OH, WI, and MO).

⁴ Includes Federal Regions VI, VIII, IX, and X (TX, CO, LA, OK, SD, UT, CA, HA, OR, and WA).

자료) Compiled by ERS from data of USDA, NASS, "Mushrooms".

2 수출입 동향 및 수입관련 제도

1) 수출입 동향

- 미국 농림부(USDA)자료에 의하면 2010/2011년 미국 버섯 생산량은 6억 7000만 파운드로 집계됐고 총 판매액은 6억 4200만 달러로 추산됨
- 버섯의 영양학적 우수성이 알려지고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인식되면서 버섯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버섯 수요가 신선제품 중심에서 기능성 식품, 약품,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화되어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현재 세계적으로 표고버섯 생산의 90%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며 미국현지에 수입되는 건조 표고버섯의 95% 이상이 중국산임
- 미국 표고버섯 생산은 2008/2009와 2010/2011 동기대비 31% 가량 감소함. 이는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 증가 및 미국현지 표고버섯 단가 하락에 의한 표고버섯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국 주요 임산물 대미 수출 현황 2012년 6월 기준 》

| HS코드 | 품목명 | 2011.06 | | | 2012.06 | | |
|------------|-------------|-----------|------------|--------------|-----------|------------|--------------|
| | | 물량 (톤) | 금액 (천불) | 단가 (US\$) | 물량 (톤) | 금액 (천불) | 단가 (US\$) |
| 0706903000 | 더덕 | 0.01 | 0.01 | 1 | 0 | 0 | 0 |
| 0706904000 | 도라지 | 0 | 0 | 0 | 0.01 | 0.12 | 12 |
| 0709592000 | 표고버섯(신선/냉장) | 1.32 | 21.87 | 16.57 | 8.87 | 81.49 | 9.19 |
| 0712320000 | 목이버섯(건조) | 21.42 | 52.35 | 2.44 | 0 | 0 | 0 |
| 0712391020 | 표고버섯(건조) | 7.68 | 46.74 | 6.09 | 6.15 | 42.18 | 6.86 |
| 0712902010 | 고사리(건조) | 0.11 | 7.09 | 64.45 | 0.22 | 13.84 | 62.91 |
| 0802120000 | 아몬드(탈각) | 0 | 0 | 0 | 8.72 | 41.84 | 4.8 |
| 0802320000 | 호두(탈각) | 37.76 | 307.37 | 8.14 | 4.77 | 42.61 | 8.93 |
| 0802410000 | 밤(미탈각) | 13.01 | 32.4 | 2.49 | 16.5 | 76.55 | 4.64 |

□ 국별 수입현황

《 미국 버섯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파운드)

| 7월~ 6월 | 1999/ 2000 | 2000/ 2001 | 2001/ 2002 | 2002/ 2003 | 2003/ 2004 | 2004/ 2005 | 2005/ 2006 | 2006/ 2007 | 2007/ 2008 | 2008/ 2009 | 2009/ 2010 | 2010/ 2011 |
|--------|---------------|---------------|---------------|---------------|---------------|---------------|---------------|---------------|---------------|---------------|---------------|---------------|
| 중국 | 8.7 | 25.3 | 32.0 | 50.9 | 72.8 | 83.1 | 67.2 | 101.0 | 100.6 | 87.6 | 96.7 | 94.7 |
| 캐나다 | 31.5 | 39.5 | 43.5 | 51.7 | 56.5 | 54.9 | 63.2 | 53.7 | 49.2 | 48.7 | 59.1 | 65.2 |
| 네덜란드 | 25.8 | 23.3 | 18.7 | 21.1 | 14.9 | 13.6 | 11.9 | 15.6 | 14.6 | 10.2 | 9.7 | 22.4 |
| 인도 | 31.7 | 29.1 | 32.0 | 19.9 | 33.9 | 27.8 | 28.0 | 31.0 | 26.9 | 22.1 | 15.2 | 18.2 |
| 인도네시아 | 33.6 | 29.8 | 26.0 | 23.8 | 23.5 | 26.4 | 20.0 | 18.9 | 21.9 | 18.4 | 14.7 | 8.8 |
| 멕시코 | 6.7 | 5.5 | 5.1 | 6.9 | 5.9 | 4.1 | 4.6 | 4.9 | 4.2 | 6.3 | 7.1 | 6.9 |
| 한국 | 0.1 | 0.3 | 0.6 | 0.7 | 0.3 | 0.6 | 0.8 | 2.6 | 4.7 | 6.1 | 8.0 | 6.7 |
| 베트남 | 0.0 | 0.0 | 0.6 | 2.6 | 3.5 | 6.0 | 8.8 | 12.8 | 10.8 | 4.9 | 8.1 | 5.8 |

자료) USDA, www.FAS.USDA.gov/ustrade

(million pounds)

2) 수입품 현황 (동부, 서부 구분)

(1) 수입품 판매현황, 포장 및 판매형태

□ 건조 표고버섯

- 현재 2012년 7월 기준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강원도 “마수아” 브랜드와 전라도 “청림” 브랜드의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이 유일하게 한남체인 매장내 진열 방식이 아닌 한국 토산물 특별코너에 판매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율이 낮음

《 미국현지 대형 도매상(주요 Wholesale 판매점) 》

| CostCo | Jetro/Restaurant Depot | MexGrocer |
|---|---|---|
|  |  |  |
| 중국산, 6 oz. \$ 6.99 (1년 유효기간) | 중국산, 1 lb. \$18.84 (1년 유효기간) | 중국산, 12 oz. \$31.95 (실은 3년 보관) |

《 한인 밀집지역 식품점 》

한아름 마트 (H Mart) 주요 브랜드; 해오름, 초립동 우선 진열(일부 일본제품도 함께 진열)

| | | |
|--|--|---|
|  |  |  |
| 해오름 : 중국산 8 oz. \$ 6.99 | 해오름 : 중국산 1 lbs. \$13.99 | 초립동이 : 중국산 1 lbs. \$12.99 |

한양마트와 아씨/롯데 주요 브랜드; 해오름 브랜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브랜드 진열

| | | |
|---|---|--|
|  |  |  |
| 아씨 : 중국산 7.05oz. \$ 6.79 | 아씨 : 중국산 8 oz. \$ 8.59 | 왕 : 중국산 3.5 oz. \$ 4.99 |

한남마트 주요 브랜드; 해태 브랜드와 아씨/롯데 주요 브랜드 함께 진열



해태 : 중국산 5 oz.\$ 5.99



해태 : 중국산 8 oz.\$ 9.29



해태 : 중국산 4 oz.\$ 4.99

일본 식품 전문점 미쯔와(Mitsuwa) (대부분의 한인 밀집지역에서도 널리 유통)



Shirakiku : 중국산 2 oz.\$,2.29



Dynasty : 중국산 1 oz.\$,1.49



JFC : 중국산 3.5 oz.\$,4.99

미국 현지 일반 식품점에서 널리 유통되는 건조 표고버섯류



\$4.99/7.05 oz, 중국산



\$2.19/1.76oz, 중국산



\$2.29/3 oz, 중국산

|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 (한국 지역 특산물 전문 코너 진열) | | 일본산 건조 표고버섯 |
|---|---|--|
|  |  |  |
| 한국산, \$10.00 / 100g (3.527 oz.) | 한국산, \$9.99 / 100g (3.52 oz.) | 일본산, \$3.99/30g (1.05 oz.) |

□ 신선 표고버섯

- 대부분의 미국현지 대형 식품점과 지역별 식품 전문점에서는 미국산 신선 표고버섯과 중국산 버섯이 함께 유통되고 있음. 소량이지만 매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이 판매되기도 함. 대부분 중국산 신선 표고버섯이 유통되고 있으나 각 지역 식품점 매니저들에 따르면, 중국산이 미국산에 비해 품질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약품 냄새가 강하다는 불만이 있었음

《 미국현지 주요 식품점의 신선 표고버섯의 포장 형태 》

| 한남체인점 | 한아름 | 한양 |
|---|---|--|
|  |  |  |
| \$8.99/lbs, 미국산 | \$6.99/lbs, 미국산 | \$3.99/lbs, 미국산 |

| Mitsuwa(일본식품 전문점) | Whole Food(올가닉 전문점) | Shop Rite(미동부 지역체인점) |
|---|---|--|
|  |  |  |
| \$5.99/lbs, 중국산 | \$10.99/lbs, 미국산 | \$4.99/lbs, 미국산 |

| Walmart (Ridgefield, NJ) | 중국 식품 전문점 (Flushing, NY) | Know Thy Food (Portland, OR) |
|--|--|---|
|  |  |  |
| \$3.99/lbs, 미국산 | \$3.99/lbs, 중국산 | \$6.50/lbs, 미국산 |

(2) 제품별 유통기간

- 건조 표고버섯은 제품 포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음
- 신선 표고버섯은 현지 유통과정을 포함해 대체로 4주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3) 수입관련 제도

(1) 통관규정 및 검역절차

- 통관 평균소요기간은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2~5일 소요되며 평균 경비는 관세

이외에 통관비, 운송비등을 포함해 품대의 약 3~5% 수준임

(2) 통관 및 수입 검사

○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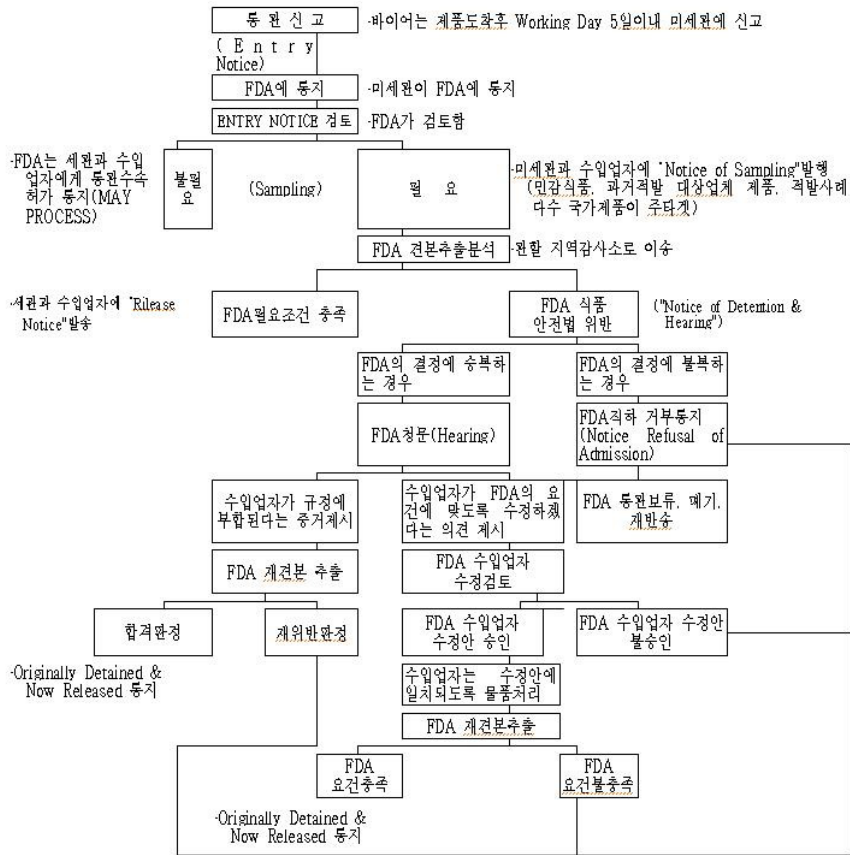
○ FDA 검역 절차

- FDA 서류 접수증을 받고 서류심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약 3일 후에 Release Notice나 Notice of Sampling을 보냄
- 통관서류 검토 시 문제점이나 주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전수 검사나 샘플 검사를 함. 샘플 채취기간은 1주일이며 FDA 실험실 검사(2주)후 통관이나 통관 보류 통보를 보냄
- 기록 자료 검사 시 전례(예 : 문제가 있었던 수입업자, 국가, 제조업자)에 따라 정밀 검사함
-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표본검사를 하며 입항된(보세구역 보관)화물에 하자가 있을시 우선적으로 수입 거절(Refusal of Admission)의사를 보내고 이에 맞춰 수입 업체는 폐기나 재수출을 해야 함
- * 일단 수입식품이 도착하여 샘플 검사가 필요하다는 FDA의 결정이 내려지면 RELEASE NOTICE를 받게 되기까지의 창고료, 검사료(Laboratory Fee) 및 FDA 검사료(Supervision Fee)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FDA 규정 및 미국 현지 버섯시장 분위기 파악이 필요함

○ 수입 규제 사항

- 기본적으로 물리적 오염과 생물학적, 화학적 오염이 없어야 함. 1차 농산물에서 영양분석표는 필수표기사항이 아니지만 버섯의 경우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영양분석표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버섯위원회에서 버섯 품종별 영양분석표를 제작 배포하고 있음(<http://www.mushroomcouncil.org>)

* 미국 식품수입 통관 절차도



(3) 이슈 현안 사례(식품 안전성)

- 건조 표고버섯, 위해성물질 발견으로 리콜사례 발생

○ 일시 : 2012년 5월 24일, 업체(브랜드) : L.A. Link Corporation

- 미국 서부지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에 체인망을 둔 “CostCo”에서 판매되는 슬라이스 건조 표고버섯을 자진 리콜조치를 취함. 이번 조치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무작위 샘플링 조사에서 독성물질인 carbendazim, fluoranthene, 그리고 pyrene 등이 발견되었음. 이번 리콜은 Southern California Company 의 “Shiitake-Ya”상품명인 말린 표고버섯 제품으로 2013년 4월 16일 까

지 유효기간이 적힌 6온스 크기의 제품임

○ 일시 : 2011년 12월 4일, 업체(브랜드) : Shirakiku

-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CDPH)는 미국소비자들에게 경고성 안내를 발표했다. Shirakiku 상표의 건조 표고버섯과 슬라이스 건조 표고버섯에 높은 수치의 아황산염이 검출되어 중국에서 들여오던 Nishimoto Trading Co.의 “Shirakiku” 브랜드에 리콜 조치를 취함

(4) 라벨링 규정 (USDA Country of Origin Labeling ; COOL)

- 최근 미국 FDA는 식품업계의 과장된 건강식품 표기 폐단을 막기 위해 식품포장용기 앞부분에 식품영양정보를 표기하는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라벨링 규정을 새롭게 개정함
- 식품라벨링, 영양분석표, 전이지방 함량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성분표시제 등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 다양한 라벨링 제도를 두고 있음
- 2009년 8월부터 미국 대형식품업체들이 저콜레스테롤, 설탕 및 소금함량이 적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A, C, E와 섬유질 등 높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에 ‘스마트초이스프로그램’이라는 표기를 부착해 판매함. 특히 식품은 신선과일, 야채, 잡곡, 저지방 유제품일수록 스마트초이스 레이블이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포장용기 앞부분에 표기함

*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LabelClaims/ucm180146.htm>

참조

- 한국산 수입제품은 대부분 스티커로 라벨이 붙어 있음. 라벨링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입력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쉽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임. 그렇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 부정 표시식품(Misbranded Food)으로 간주해 수입이 금지됨
-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더라도 현지에 반입될 때 스티커 작업을 하면 통관시

문제가 없음. 하지만 반입된 제품의 내용물과 라벨링이 다를 경우에는 FDA 테스트를 거쳐 부정표시로 간주되어 반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인지 철저히 확인해야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필히 표기
- 대체식품으로 출시할 때는 ‘imitation’ 표기
 - 식품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가늘게 썰어진 것인지 (sliced)’, ‘썰지 않은 것인지(unsliced)’, ‘반으로 잘라진 것인지(halves)’ 등 식품의 형태를 정확히 표기해야 함.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과 유사하고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 될 때(만약 신제품이 기존제품보다 필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에는 신제품에 필히 ‘모방(imitation)’이라는 표시를 해야함. ‘모방’이라는 표기는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해야 함
- 선택 표기사항(조리법)
 - 미국현지인들에게는 식품에 따른 조리법과 영양학적 수치 그리고 비만 관련 정보 등이 무척 중요한 사항임. 특히 두부와 표고버섯은 미국현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선호도가 높지만 손쉬운 조리법 안내가 부족한 상황임
 - *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식품 중 라벨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표시로 간주되어 수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필수 표기 사항
 - ① 식품의 명칭은 포장용기의 표시 면에 표기
 - ② 활자의 크기는 라벨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
 - ③ 주요면의 하단 30% 위치에 순 준량 표시(미국단위와 미터법으로 표기)
 - ④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전체 주소는 성분 표시면에 기재
 - ⑤ 성분표시는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기
 - ⑥ 성분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순으로 기재함
 - ⑦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은 반드시 표기해야 함
 - ⑧ 유통기한은 제품의 앞면 또는 뒷면에 따로 인쇄된 형식을 취함

《 미국현지 판매되는 아씨 브랜드의 중국산 건조 표고버섯의 라벨링 》



(5) 제품별(HS코드별) 수입관세율

- 각 수입브랜드에 따른 Shiitake HS Code 및 관세

• Description : sanguifood 건조 표고버섯 (중국산)

• HS code 0712.39.1000

• Goods ever classified under this HS code:

agaric, agaric flake, air dried mushroom, basswood black mushroom, black fungus, black fungus products, black mushroom, black mushroom slice, champignon foot diced, champignon grain

• Description : 삼진글로벌버섯(왕) 건조 표고버섯 (중국산)

• HS code 0712.38.2000

• 관세 : 1.9 센트/ Kg, 2.6%

• Description : 서울식품(초립동) 건조 표고버섯 (중국산)

• HS code 0712.30.1000

· 관세 : 1.9 센트/ Kg, 2.6%

○ 인증제 필요여부

- 유기농 제품일 경우 미국현지 유기농 승인 라벨링을 필히 부착해 판매해야함
- 미국 유기농 승인 홈페이지
(<http://www.ams.usda.gov/AMSV1.0/NOPExemptOperations>)

3 유통구조 및 소비동향

1) 유통구조

□ 유통현황

- 포장된 마른 표고버섯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대부분 중국산 이거나 중국현지 OEM (또는 PB)에 의한 자체브랜드상품임. 또한 현재 한인 밀집지역의 한국식품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건조 표고버섯의 90% 가량이 중국산임. 또한 한국식 대형 레스토랑이나 아시안 푸드 전문식당에는 전량 중국산 건조 표고버섯이 납품되고 있음

□ 유통구조

- 일반 농식품류의 유통구조와 비슷함. 일부 대형식품체인에서는 미국산 신선 표고버섯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함. 일부는 도매 시장을 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산 신선 표고버섯은 직접 유통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선물거래를 진행하는 식품점도 있음
- 대형 한인식품전문점들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신선 표고와 건조 표고버섯을 판매함. 반면에 한국산 말린 표고버섯의 경우는 개인 수입업자에 의해 유통되어 미국 현지 시장에서는 한인 식품전문점에서의 특별 행사 기간에 판매 되거나, 매장 내 버섯류 진열대가 아닌 한국지역 토산물코너에 진열되어 소비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단 신선표고버섯은 농장에서 유통까지 관리하여 지역 도매상과 식품전문점에 판매하기도 함

□ 유통형태

- 도매시장현황 및 도매가격, 마진율
 - 미국산 신선 표고버섯의 경우 현지 도매시장의 가격은 등락폭이 거의 없고 파운드 (lbs.; 1 lbs. = 약 453.5g)당 2불에서부터 최상품인 경우 4불선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지 식품점들은 자체 유통망을 이용해 현지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음

* 비교사례 : 한국산 00표고영농조합법인 생표고버섯 1kg당 1만7000원 (2011년 6월 기준)으로 미국산 최상품은 1kg당 5,280원으로 환산해보면 한국산 가격이 약 3배 높음

- 건조 표고버섯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므로 가격은 저렴한 편임. 대부분의 말린 표고버섯 도매가격은 유통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파운드(lbs.)당 1불 미만에서 3불을 넘기지 않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산 건조 표고버섯은 파운드당 약 5불에서 10불 정도로 가격 차이가 큼. 신선 표고버섯과 말린 표고버섯의 마진율은 대체로 25%에서 45% 사이임

○ 대형유통매장현황 및 유통매장 판매가격, 마진율

- 미국현지 대형매장에서의 표고버섯 대부분은 말린 상태의 포장된 것이 유통됨. 신선 표고버섯은 지역 식품점과의 직거래를 주로하고 있음. 뉴욕시와 인근도시들은 헌츠포인트 등의 야채도매상들에서 직접 구입하기도 함
- CostCo, Jetro/Restaurant Depot, Whole Food, BJ 등 대형 유통매장들은 표고버섯의 상품진열이 우선순위가 아닌 시기별 상품이거나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일정시기동안 판매되는 특화 상품임
- CostCo, Jetro/Restaurant Depot, BJ 등의 말린 표고버섯의 마진율은 15%에서 25%로 높지 않은 편임. 그러나 Whole Food등의 유기농 전문점에서의 마진율은 35%에서 높게는 85%까지 달함

○ 유통단계별 제품 포장 형태, 제품별 가격, 가격차이 요인

- 말린 표고버섯은 현지생산 과정에서 1온즈에서 1파운드까지 다양한 포장단위를 사용함. 그러나 대부분 중국산이므로 가격 차이는 미미함. 반면에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과 미국 현지생산 신선 버섯류 등은 가격이 중국산대비 각각 2~3배까지 차이남
-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은 유통비, 미국산은 유기농 인증 유무가 가격 차이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주요 수입바이어(벤더, 유통매장 직수입업체 등) 리스트

○ 협회 리스트

- Mushroom Council
- American Wholesale Marketers Association
- American Culinary Federation, Inc
- International Dairy-Deli-Bakery Association
-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 Retail Bakers of America
- Snack Food Association
- Wisconsin Bakers Association

○ 주요 식품 업체 리스트

- JFC INTERNATIONAL INC.
- NISHIMOTO TRADING CO.
- Wegmans
- Atkins Nutritionals
- Annie's Homegrown
- Frontier Natural Products
- General Mills
- Pinnacle Foods Group
- Richelieu Foods
- U.S. Mills / attune Foods
- Vanee Foods

○ 미국 현지 한인 대형 식품 유통업체

- H Mart (<http://www.hmart.com>)
- Assi/Lotte (<http://www.lotteplaza.com>)
- 삼진 글로버넷(왕, 한미식품) (<http://www.wangfood.com/home>)
- 서울식품 (<http://www.seoulgrocery.com>)

- Rhee Bros. (<http://www.rheebros.com>)
- 한성식품
- 자연나라 (<http://www.jayone.com/kr/home>)
- 해태 (<http://www.haitaiusa.com/html/main.php>)

□ 대형유통매장별 입점방법

- 입점 및 판촉 결정과정, 입점전략미국 시장 현황
 - 미국현지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은 본사 구매부서의 결정에 따름. 그러나 각 지역별 대표 신선식품류(야채, 유기농 제품 포함)등은 지역 매니저의 승인 하에 결정되기도 함. 단 시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거나 미국 FDA 승인서가 필요함
 - 신선 표고버섯은 대형 도매전문 유통매장에서 유통기한 문제로 꺼리기 때문에 말린 제품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것을 추천함
 - 미국현지 유통되는 대부분의 건조 표고버섯이 중국산이므로 한국산 브랜드는 중국산과 미국산 대비 뚜렷한 차별성을 지녀야 함. (미국 현지 대형 한국 유통 업체들의 OEM 중국산 제품에 대비 품질관리 확보 필요)
 - 대부분의 한국 식품점 매니저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입점전략은 물량 확보보다는 소량이라도 꾸준한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것을 기반으로 현지 매장 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함
- 유통업체별 한국 입점품 현황 및 매장 프로모션

《 미국 한인지역 대형식품매장 내 OEM(또는 PB) 브랜드의 표고버섯 현황 》

| 식품점 | 건조 표고버섯 | 신선표고버섯 원산지 |
|----------------|---|------------|
| 한아름(H Mart) | 해오름, 초립동, 왕과 일부 JFC, Nishimoto | 미국산 |
| 한양(아씨/롯데 플라자) | 아씨 브랜드와 왕, JFC, Nishimoto | 미국산 |
| 한남체인 | 해태 브랜드와 왕, 아씨, 자연나라, 한성식품, JFC, Nishimoto | 미국산 |
| Mitsuwa(일본식품점) | 왕, JFC, Nishimoto | 중국산 |

- 현재 한인 대형 식품 전문점을 제외하면 한국산 표고버섯의 미국 현지 입점은 없음. 다만 아씨 브랜드의 중국산 제품은 중국식품 전문점에서 간혹 보이기도 함
- 한인 식품점을 제외하면 건조 표고버섯과 신선 표고버섯 등은 유기농 전문점 WholeFood, 그리고 WalMart 등 일부 대형 식품매장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미국 현지의 주말이나 세일 기간에 시식 도우미, 행사 도우미들의 하루 임금은 백불 정도임. 미국현지 한인들의 각종 신문매체,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는 각 한인 대형 식품점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산 식품(표고버섯 포함)등을 수입하는 영세 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 현지 한국 대형 유통 업체들의 자사 브랜드(PB : Private Brand)의 중국 현지 생산 방식에 대비 한국산 특산물의 가격이 높다는 점임.

2) 소비동향

□ 소비량 변화

《 미국 표고버섯 생산량/판매량/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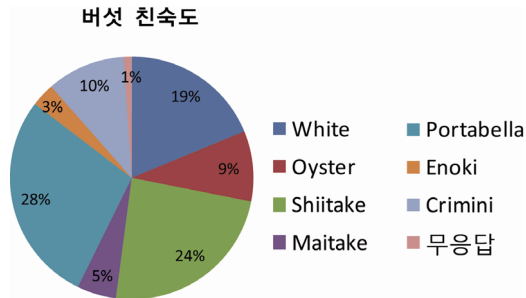
(단위 : 1,000파운드)

| 생산연도 | 생산량 | 판매량 | 가격(파운드 당) |
|-----------|-------|-------|-----------|
| 2008/2009 | 9,715 | 9,458 | 3.19 |
| 2009/2010 | 6,684 | 6,417 | 2.75 |
| 2010/2011 | 6,702 | 6,420 | 2.99 |

□ 소비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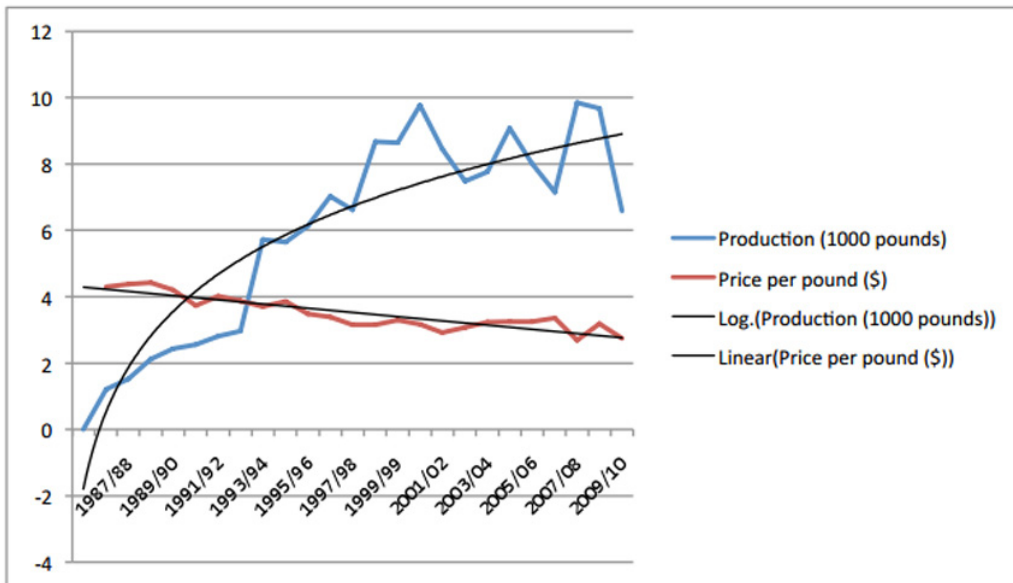
- 현재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버섯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이며 미국인들은 표고버섯에 대한 인식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알려짐. 그러나 일부 아시아 이민자와 유럽인들을 제외하고는 양송이, 느타리버섯의 요리법을 모르는 미국인들이 다수임

- 질문 : 어떤 버섯이 친숙하신가요?



자료) 5-1-2011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Marketing Strategies for Entry into the Shiitake Mushroom industry in Utah; Imran Khan, Utah State University

《 표고버섯 생산량에 대한 가격 동향 》



자료) 5-1-2011,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Marketing Strategies for Entry into the Shiitake Mushroom industry in Utah; Imran Khan, Utah State University

○ 인종, 민족(화교 등) 등에 따른 소비특성

- 과거 아시안과 일부 소수민족 위주의 소비 패턴에서 점차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음

- 직접 인터넷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은 아시안 밀집 지역과 미국 현지 유기농 전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소득 및 지역별 소비 형태 ¹⁾

- 가구당 소득이 \$1,000 증가할 경우 버섯 소비는 0.22%가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소득이 \$75,000인 가구는 소득이 \$25,000인 가구보다 약 11%정도 버섯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보여짐
- 미국 현지 버섯 소비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번 보고서 작성일(2012년 7월) 기준으로 보면 표고버섯과 특화된 버섯류는 한인밀집 지역과 아시안 밀집 거주지, 그리고 일부 유기농전문매장을 제외하면 여전히 판매지점이 소수임

□ 원산지별 제품 분석

- 일본산 : 현재 일본산 신선 표고버섯과 건조 표고버섯은 미국 현지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다만 일본의 중국산 식품회사 건조 표고버섯이 일본식품전문점(Mitsuwa)에서 유일하게 판매 되고 있음. 일본 브랜드의 OEM 방식 건조 표고버섯은 대부분 중국산임
- 중국산 : 미국현지 유통되고 있는 건조 표고버섯의 경우 대형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한국 혹은 일본 브랜드 등은 대부분은 중국산임.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강한 향이 퍼지는 특징이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약품 냄새가 나기도 함. 중국산 신선 표고버섯일 경우 한국어 표기 브랜드와 중국어 표기 브랜드가 함께 판매되고 있으며 향이 미국산에 비해 떨어짐
- 한국산 : 미국현지 유통되는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은 일부 개인 수입업자 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며 품질은 좋지만 가격은 세배 가량 높은 편임. 이 때문에 일부 소비층만이 제품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있음. 현지 OEM 한국어 표기 브랜드의 건조 표고버섯은 100% 중국산임
- 미국산 : 미국현지 유통되는 신선 표고버섯은 해당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므로 신선

1) 자료) USA Mushroom Council

도 면에서는 매우 뛰어나나 재배 농가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과잉공급 되고 있는 상황임. 가격 폭락에 따른 유통업체 별로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무엇보다 미국산 건조 표고버섯은 인터넷 온라인 매장을 활용하여 특화된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중국산에 비해 2배 이상 고가에 거래됨

- 캐나다산 : 미국현지 표고버섯의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 농가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이 감소되는 추세임. 간혹 말린 표고버섯이 인터넷 온라인매장에서 보이기도 하나 가격은 미국산 현지 제품과 큰 차이가 없음

4 한국산 수출확대 전략

1) SWOT 분석

- 과거 새송이 버섯 미국 진출시 미국 현지 한인밀집상권의 시장성은 우수했으나 문제는 품질이 꾸준하지 못해 캐나다산으로 대체되었음. 이렇듯 한국산 표고버섯 또한 이 문제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 Strength - 강점 | Weakness - 약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시 단단함 유지와 향유지 (중국산과 미국산 대비 같은 신선도일 경우) - 꾸준한 품종 개량으로 인한 고품질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보다 높은 가격 - 신선 표고버섯의 짧은 유통기한 - 한인 슈퍼마켓 위주의 판매 - 중국 현지 OEM 또는 자사브랜드 포장 방식에 따른 혼동 |
| Opportunity - 기회 | Threat - 위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중국산 식품 안전성 문제 대두 (2011년 12월, 2012년 5월 중국산 건조표고버섯 리콜) - 미국 내 버섯에 대한 관심 증가로 버섯류 소비 증가 추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중국산 건조표고버섯과 신선표고버섯의 시장 잠식 - 미국 내 현지 생산량 증가 및 가격 안정 - 미국 내 강화된 식품 수입 통관 절차 - 미국 내 생산능가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

2)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신선도 유지 (냉장 운반기술, 포장)

○ 신선 표고버섯

- 과거 한국산 새송이 버섯의 선도유지(오랜 수송기간으로 인한 제품의 질 저하)문제 점을 상기해 빠른 수송 대책과 냉장 보관기술을 요구함
- 현재 미국현지 표고버섯 재배 생산량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그에 따른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므로 고품질(무농약 등)을 강조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함

- 신선도 유지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많은 양을 선적하기보다는 소량이라도 꾸준히 배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건조 표고버섯

-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건조제품임으로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닌 미국 전 지역으로의 마케팅을 진행하여 시장 확대를 노려야 함
- 상품 진열이 손쉬운 플라스틱병 등으로 각 가정의 식탁과 식품진열대 또는 서랍에 진열될 수 있도록 포장 디자인 전략을 변경해야 함. 또한 미국 대형 식품매장과 대형 식당에서 선호하는 표고버섯은 유통기한을 이유로 대부분 건조버섯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2)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요물량

-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는 소량이라도 꾸준히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함. 한인 밀집 지역을 벗어나면 미국 현지 식품소비의 필수 아이템이 아니므로 품질이 우선되어야 함
- 미국현지 한인 밀집 상권의 한 한국식품 대형마트의 신선 표고버섯 주간 평균 매출은 8온즈 단위로 300여개가 판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한인 밀집 지역을 벗어나면 판매량은 급격히 낮아짐
- 미국 현지 한인 밀집지역을 제외하면 표고버섯 시장은 다른 버섯류에 비해 소비 사이클 속도가 느림. 특히 신선 표고버섯일 경우 유통기한이 2~3주로 짧아 대미수출 신선버섯류의 물량이 미국 현지 한인상권을 제외한 미전지역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현지 대형 홀세일(도매형)전문점 등에서 요구하는 신선 야채류 등의 구매량은 지역 전체 지점(Branch)을 포함해 근접 지역까지 동시에 공급해야 하는 구조임.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신선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야채류는 캐나다산과 유럽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임. 냉동 포장 고등어 등 냉동식품과 건조식품 등은 이미 한인 대형 마켓을 벗어나 미국 현지 대형 매장에 진출했음

표고버섯

중 국

1. 생산동향
2. 생산전망
3. 수출입 동향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3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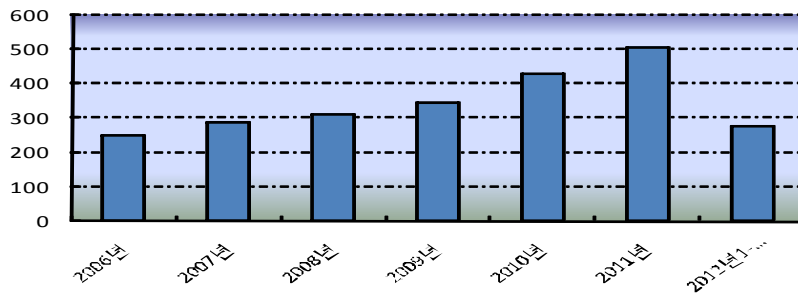
1) 표고버섯 생산량

(단위 : 만 톤)

| 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1~6월 |
|-----|-------|-------|-------|-------|--------|-------|-----------|
| 생산량 | 247 | 288 | 309 | 343.5 | 427.65 | 503.8 | 277 |

자료) 중국농산품가공업년감

※ 2011년과 2012년6월까지 정부통계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전 3년간 수치에 근거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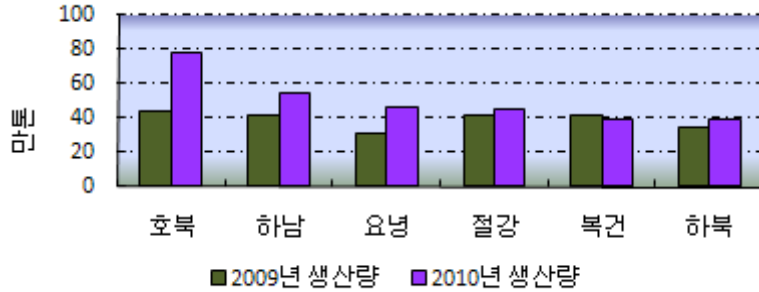


- 중국 식용버섯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그중 표고버섯은 2010년 427만 톤에 달해 세계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함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표고버섯 생산량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증가폭은 24.5%에 달해 2011년 생산량은 500만 톤으로 추정됨

《 2009~2010년 주요 생산지 생산량 》

| 지역 | 2009년(톤) | 2010년(톤) | 증가율 |
|-----|-----------|-----------|--------|
| 호 북 | 438,600 | 780,000 | 77.84% |
| 하 남 | 416,378 | 545,836 | 31.04% |
| 요 녕 | 310,293 | 461,630 | 48.77% |
| 절 강 | 410,000 | 450,000 | 9.76% |
| 복 건 | 415,526 | 391,735 | -5.73% |
| 하 북 | 341,604 | 391,540 | 14.62% |
| 전 국 | 3,435,447 | 4,276,530 | 24.47% |

《 주요생산지 생산량 2009-2010 》



자료) 중국농산물가공업년감

2) 주요 생산지 분석

- 2011년말까지 중국에는 “경원표고버섯”(庆元香菇), “수주표고버섯”(随州香菇), “서협표고버섯”(西峡香菇), “평천표고버섯”(平泉香菇) 등 4개 지리적표시제품이 있으며 각각 절강성, 호북성, 하남성, 하북성을 위주로 4대 생산구역으로 나뉘며
- 이 4개 지리적표시제품은 중국의 표고산업의 최신 발전수준을 대표하며 높은 브랜드 가치가 있고 지역별로 여러가지 상표 등록을 하고 있음

- 절강성-경원표고버섯

- 경원지역은 표고버섯 생산 발원지로서 “중국표고버섯도시”로 불리우며 2009년 43.17억위안의 브랜드 가치로 중국 농산물 지역브랜드 중에서 8위를 차지함. 또한 전국 최대 표고버섯 집산지로서 연간 생산량은 9만톤에 달하며 경원 표고버섯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건조 표고버섯 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10%이상을 차지함

- 호북성-수주표고버섯

- 2011년 수주 표고버섯 총 생산액은 22억위안, 수출액은 2.29억불에 달했으며 건조버섯 생산량과 수출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함. 이 지역에는 258개 생산공장이 있고 40만명이 재배업에 종사하는 중국에서 방대한 규모가 형성된 표고버섯 산업 집산지임

- 하남성-서협표고버섯
 - 전국 총 생산량의 1/10을 차지하며 하남성에서 처음으로 수출액이 2억불을 초과한 농산품의 하나로서 2011년 5월 국가질검총국의 현장 평가를 통해 중국의 첫 국가생태원산지표기 보호제품으로 인정받음
- 하북성-평천표고버섯
 - 대규모의 선진설비가 갖춰진 지역으로 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0여개 시장으로 수출하며 연간 수출액은 2천만불에 달하며 국가 농업부로부터 "평천 표고버섯" 농산물 지리표시증서를 받았음



2 생산전망

1) 2012년 표고버섯 생산량 분석

○ 경제영향

- 세계경제영향으로 중국의 경제도 일정기간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2012년 7월 이후 투자, 소비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로 내수용으로 소비되는 중국산 표고버섯은 안정한 소비시장이 이루어져 재배농가 및 생산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이 보장되고 있음

○ 기후영향

- 올해 8월 태풍이 중국의 복건, 절강, 상해 및 안휘성을 지나면서 표고버섯 주요 생산지인 복건성과 절강성에서 피해를 받았으며 7월 중순에는 북경과 하북성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의 영향으로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음. 이런 기후 영향으로 8~9월 표고버섯 생산량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 가격이 상승되나 9월에는 정상 수준에 달해 2012년 전체적인 생산량은 전년대비 5~10%의 증가폭으로 생산량이 530~5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환급세 취소 영향

- 올해 3월1일부터 국가세무국은 표고버섯 수출 환급세를 취소하는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으로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수출기업에서 원가 상승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음. 따라서 표고버섯 산지 구매가격도 하락되어 재배농가들의 수입도 줄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 새로운 정책은 치열한 경쟁에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더욱 안정된 발전을 할 수 있어 전체적인 표고버섯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유리한 장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향후 표고버섯 발전전망

- 공장형 생산 가속화
 - 2011년 중국의 식용버섯 공장형 기업이 652개에 달해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공장형 생산 연간 생산량은 100여 톤에 달함. 그러나 표고버섯은 아직까지 이런 공장형 생산기업의 주요 품종은 아님
 - 표고버섯 생산기업은 2012년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한해로서 생산설비와 품종이 낙후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만의 발전기회로서 중국의 표고버섯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것임
- 표고버섯 가공제품 생산 가속화
 - 가공제품은 건조표고버섯 등 편의 포장제품으로부터 분말, 절편, 음료 등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발전하여 생산가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공업제품으로 수출되어 상응한 우혜정책을 향유할 수 있어 가공제품의 생산이 가속화 될 것임
- 신제품 개발 가속화
 - 현재 대부분 품종은 사용기간이 길어 퇴화단계에 이르렀으며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업에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임
- 표고버섯 제품 브랜드화 및 유기농 생산이 강세
 - 현재 소비자가 익숙한 브랜드 제품이 거의 없어 향후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기농 표고버섯 생산이 향후 발전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3 수출입 동향

1) 수입현황

○ 2011~2012년 표고버섯 수입현황

(단위 : kg, US\$)

| 월 | 2011년 | | | | 2012년 1~6월 | | | |
|-----|-------|-------|-------|--------|------------|------|------|-------|
| | 신선표고 | | 건조표고 | | 신선표고 | | 건조표고 | |
| | 수입량 | 수입금액 | 수입량 | 수입금액 | 수입량 | 수입금액 | 수입량 | 수입금액 |
| 1월 | 30 | 7,417 | 3 | 34 | 0 | 0 | 0 | 0 |
| 2월 | 0 | 0 | 800 | 2,800 | 0 | 0 | 3 | 166 |
| 3월 | 0 | 0 | 0 | 0 | 0 | 0 | 30 | 365 |
| 4월 | 0 | 0 | 642 | 2,257 | 0 | 0 | 0 | 0 |
| 5월 | 0 | 0 | 64 | 1,280 | 0 | 0 | 0 | 0 |
| 6월 | 0 | 0 | 0 | 0 | 0 | 0 | 15 | 549 |
| 7월 | 0 | 0 | 4,475 | 38,341 | — | — | — | — |
| 8월 | 0 | 0 | 0 | 0 | — | — | — | — |
| 9월 | 0 | 0 | 0 | 0 | — | — | — | — |
| 10월 | 0 | 0 | 30 | 709 | — | — | — | — |
| 11월 | 0 | 0 | 0 | 0 | — | — | — | — |
| 12월 | 0 | 0 | 0 | 0 | — | — | — | — |
| 계 | 30 | 7,417 | 6,014 | 45,421 | 0 | 0 | 48 | 1,080 |

○ 2011년 국가별 수입동향

《 2011년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 kg, US\$)

| NO | 신선표고 | | | 건조표고 | | |
|----|------|-----|-------|------|-------|-------|
| | 국가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 | 수입량 | 수입금액 |
| 1 | 일본 | 30 | 7,417 | 북한 | 1,440 | 5,040 |
| 2 | — | — | — | 미국 | 94 | 1,989 |
| 3 | — | — | — | 대만 | 22 | 377 |
| 4 | — | — | — | 일본 | 3 | 34 |
| 합계 | — | 30 | 7,417 | — | 1,559 | 7,440 |

《 2012년 1~6월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 kg, US\$)

| NO | 신선표고 | | | 건조표고 | | |
|----|------|-----|------|------|-----|-------|
| | 국가 | 수입량 | 수입금액 | 국가 | 수입량 | 수입금액 |
| 1 | — | 0 | 0 | 미국 | 45 | 914 |
| 2 | — | 0 | 0 | 대만 | 3 | 166 |
| 합계 | — | 0 | 0 | — | 48 | 1,080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 2011년 1월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신선 표고버섯 30kg 수입한 후, 올해 6월까지 수입은 없음
- 건조 표고버섯은 주로 미국, 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며 올해 1~6월 수입량 및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대폭 하락함

2)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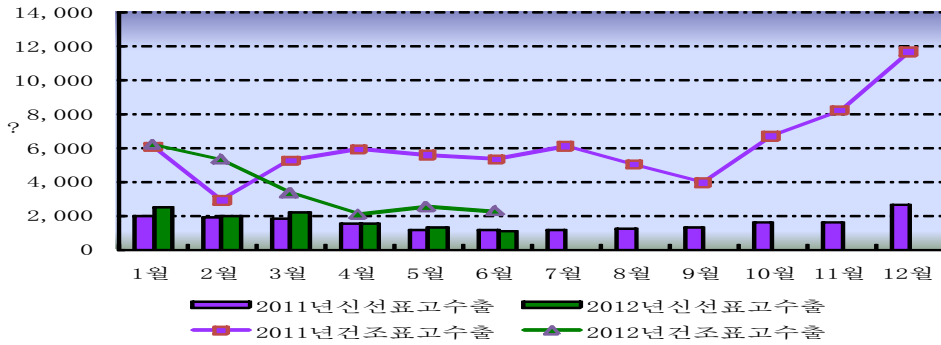
- 2011~2012년 중국산 표고버섯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 월 | 2011년 | | | | 2012년 1~6월 | | | |
|-----|--------|--------|--------|-----------|------------|--------|--------|---------|
| | 신선표고 | | 건조표고 | | 신선표고 | | 건조표고 | |
| | 수출량 | 수출금액 | 수출량 | 수출금액 | 수출량 | 수출금액 | 수출량 | 수출금액 |
| 1월 | 1,989 | 6,053 | 6,055 | 94,386 | 2,521 | 8,836 | 6,179 | 94,326 |
| 2월 | 1,891 | 5,869 | 2,872 | 44,737 | 2,034 | 7,069 | 5,298 | 81,241 |
| 3월 | 1,826 | 5,799 | 5,242 | 81,878 | 2,203 | 7,300 | 3,295 | 48,770 |
| 4월 | 1,567 | 5,275 | 5,898 | 96,053 | 1,577 | 4,534 | 2,048 | 28,313 |
| 5월 | 1,168 | 4,117 | 5,552 | 88,343 | 1,364 | 3,659 | 2,485 | 34,574 |
| 6월 | 1,185 | 4,102 | 5,305 | 82,079 | 1,142 | 3,471 | 2,231 | 31,314 |
| 7월 | 1,190 | 4,390 | 6,103 | 93,081 | — | — | — | — |
| 8월 | 1,292 | 4,596 | 4,994 | 77,308 | — | — | — | — |
| 9월 | 1,334 | 4,634 | 3,938 | 61,644 | — | — | — | — |
| 10월 | 1,626 | 5,834 | 6,677 | 103,518 | — | — | — | — |
| 11월 | 1,635 | 5,697 | 8,206 | 129,613 | — | — | — | — |
| 12월 | 2,643 | 8,874 | 11,682 | 179,502 | — | — | — | — |
| 합계 | 19,352 | 65,246 | 72,528 | 1,132,147 | 10,844 | 34,870 | 21,539 | 318,540 |

《 건조, 신선 표고 수출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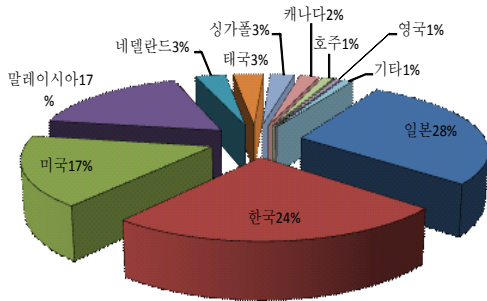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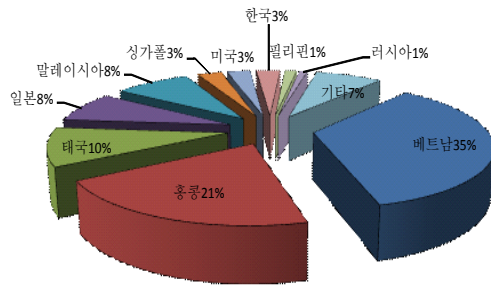
○ 2011년 중국산 표고버섯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 NO | 신선표고 | | | 건조표고 | | |
|----|-------|-------|--------|-------|--------|---------|
| | 국가 | 수출량 | 수출금액 | 국가 | 수출량 | 수출금액 |
| 1 | 일본 | 5,413 | 17,919 | 베트남 | 25,184 | 389,887 |
| 2 | 한국 | 4,721 | 15,511 | 홍콩 | 14,962 | 227,703 |
| 3 | 미국 | 3,271 | 12,591 | 태국 | 7,215 | 110,907 |
| 4 | 말레이시아 | 3,295 | 9,489 | 일본 | 5,830 | 99,288 |
| 5 | 네덜란드 | 607 | 2,936 | 말레이시아 | 6,196 | 97,110 |
| 6 | 태국 | 611 | 1,990 | 싱가포르 | 1,993 | 34,360 |
| 7 | 싱가포르 | 487 | 1,460 | 미국 | 1,944 | 31,140 |
| 8 | 캐나다 | 397 | 1,067 | 한국 | 1,997 | 29,451 |
| 9 | 호주 | 216 | 1,012 | 필리핀 | 999 | 15,434 |
| 10 | 영국 | 117 | 447 | 러시아 | 677 | 10,695 |
| — | 기타 | 210 | 818 | 기타 | 5,529 | 86,167 |



국가별 신선표고버섯 수출



국가별 표고버섯 수출

○ 2012년 1~6월 중국산 표고버섯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불)

| NO | 신선표고 | | | 건조표고 | | |
|----|-------|-------|--------|-------|-------|--------|
| | 국가 | 수출량 | 수출금액 | 국가 | 수출량 | 수출금액 |
| 1 | 일본 | 2,960 | 10,451 | 베트남 | 5,212 | 78,175 |
| 2 | 한국 | 3,033 | 9,979 | 홍콩 | 4,803 | 68,777 |
| 3 | 미국 | 1,709 | 6,490 | 일본 | 2,684 | 43,876 |
| 4 | 태국 | 771 | 2,070 | 태국 | 2,899 | 40,914 |
| 5 | 말레이시아 | 972 | 1,530 | 말레이시아 | 2,284 | 33,670 |
| 6 | 네덜란드 | 291 | 1,494 | 한국 | 894 | 12,935 |
| 7 | 싱가포르 | 332 | 757 | 미국 | 722 | 11,086 |
| 8 | 캐나다 | 163 | 582 | 싱가포르 | 473 | 6,815 |
| 9 | 호주 | 120 | 549 | 필리핀 | 188 | 2,503 |
| 10 | 인도네시아 | 89 | 242 | 캐나다 | 154 | 2,029 |
| — | 기타 | 400 | 722 | 기타 | 1,220 | 17,755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 2012년 1~3월 신선표고 버섯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8.4% 증가하였고 4~6월 누계 수출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과 말레이시아로 2011년 상기 4개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28%, 24%, 17%와 17%를 차지하며 기타 국가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함

- 2012년 1월과 2월 건조표고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3월부터 대폭 하락세를 보여 그중 4~6월 누계 수출량은 2011년 동기의 40.5%에 달함
- 주요 수출 국가는 베트남과 홍콩으로 2011년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35%와 21%를 차지함
- 올해 2012년 3월1일부터 실시한 수출 환급세 취소로 올해 상반기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출이 전년대비 하락된 것으로 보임

분 재

중 국

1. 생산동향
2. 수입 관련정책 및 제도
3. 유통구조 및 주요 바이어
4. 수출 확대방안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03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1 생산동향

1) 중국 분재의 역사

- 분재는 약 1,300년 전 당나라 시기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음
- 섬서성의 진릉에서 당나라 시대의 분재 벽화(706년)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중국에서 분재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



* 당나라 시대 벽화에 나타난 분재

- 분재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일본에서 더욱더 발전하였고 현재 분재의 영문명인 'Bonsai'도 분재의 일본식 발음으로 세계적으로 일본산 분재가 가장 유명함
- 송나라 시기부터 청나라 시기 까지 중국의 분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청나라 말기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중국의 분재 산업은 침체기를 겪었음
-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1981년 베이징에서 중국화훼분재협회가 설립되었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고급 분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임

2) 중국 분재 산업 현황

○ 중국 분재생산 관련 통계

| 연도 | 재배면적 (ha) | 매출량 (萬 盆) | 매출액 (만 위안) | 수출액 (만 불) |
|-------|--------------|--------------|---------------|--------------|
| 2010년 | 14,007.7 | 31,374.4 | 360,444.6 | 1,985.7 |
| 2009년 | 14,387.5 | 31,139.3 | 345,247.4 | 1,837.4 |
| 2008년 | 14,987.0 | 20,080.0 | 302,970.0 | 1,714.0 |
| 2007년 | 19,630.7 | 19,599.9 | 347,790.7 | 2,184.9 |
| 2006년 | 20,590.1 | 51,612.4 | 332,157.0 | 10,140.4 |

* 자료) 中國林業局

- 중국농업연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0년 사이 중국 화초재배면적은 각 775,488.9 헥타르, 834,138.8 헥타르, 917,565.27 헥타르임
 - 그 중 분재재배면적은 총 화초재배면적의 1.93%, 1.72%, 1.52%를 차지하고 평균 약 1.72%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전체 화초재배면적은 86.22만 헥타르이며 화초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성은 강소, 하남, 절강, 사천, 호남성임
 - 농업부문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5개성 화초재배면적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2011년 분재면적은 약 14,800 헥타르에 달함

3) 분재의 종류

□ 중국 주요 분재 품목리스트

| 品种 | 圖例 | 品种 | 圖例 | 品种 | 圖例 |
|---------------|---|--------------|---|----------------|---|
| 섬잣나무 (五针松) |  | 나한송 (罗汉松) |  | 홍계목 (红继木) |  |
| 용백 (龙柏) |  | 소철 (苏铁) |  | 홍두삼 (红豆杉) |  |
| 비술나무 (榆树) |  | 단풍나무 (红枫) |  | 곰솔 (黑松) |  |
| 원백 (圆柏) |  | 화극 (火棘) |  | 대절백랍 (对节白蜡) |  |
| 영산홍 (映山红) |  | 용수나무 (榕树) |  | 황양목 (黄杨) |  |

* 자료)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

- 중국에서 현재 주요 분재판매품종은 섬잣나무, 나한송, 홍계목, 홍두삼, 비술나무, 단풍나무, 곰솔, 화극, 원백, 대절백랍 등이 있음. 2010년 주요 분재판매를 볼 때 재배면적과 판매량이 하강세를 보였으나 판매액은 0.89% 상승하였음

- 분재의 수요와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그중 홍두삼품종은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중국 입업 국에서 “홍두삼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 “홍두삼은 중국국가급 보호품목으로서 좋은 생태효과와 아주 높은 경제가치가 있어 국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홍두삼을 심는 것을 권장함”

□ 주요 분재 형식

- 수목 분재(樹木盆景)와 산수 분재(山水盆景)는 중국 송나라 시대부터 형성되었음
- 분재기술의 혁신과 분재재료가 풍부해짐에 따라 중국분재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음
- 현재 중국 분재는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수목 분재(樹木盆景)

- 수목 분재는 나무를 주요 재료로 산림의 풍경을 표현한 것



수목 분재(樹木盆景)

② 산수 분재(山水盆景)

- 산수 분재는 산석을 주요 재료로 잘 선택하고 조형해서 천연적인 산과 물을 모방한 것



산수 분재(山水盆景)

③ 수한 분재(水旱盆景)

- 수한 분재는 수목 분재와 산수 분재 사이에 있는 분재 형식



수한 분재(水旱盆景)

④ 화초 분재(花草盆景)

- 화초 분재란 화초가 주체가 된 장식 분재이고 화초의 감상 가치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조형의 아름다움에도 신경을 써야 됨



화초 분재(花草盆景)

⑤ 미니 분재(微型盆景)

- 높이가 10cm 이하의 수목분재와 화분 길이가 10cm 이하의 산수분재와 수한분재가 미니 분재라고 할 수 있음



미니 분재(微型盆景)

⑥ 공예 분재(掛壁盆景)

- 공예 분재란 일반적으로 분재를 패각 세공품, 액자 등과 같이 결합해서 나온 창의적인 분재



공예 분재(掛壁盆景)

⑦ 이형 분재(異型盆景)

- 이형 분재란 식물을 특수한 용기에 심고 알뜰살뜰 가꾸며 조형해서 만든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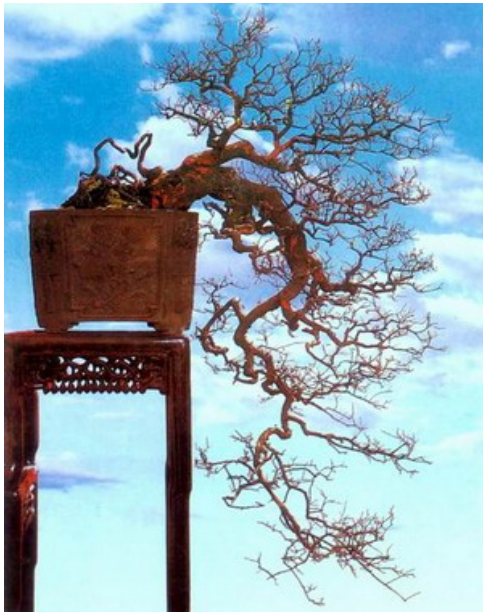
이형 분재(異型盆景)

4) 주요 생산 품목 및 지역별 분포

-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어서 지역 환경 및 자연 조건의 차이가 뚜렷함. 이에 분재의 유파도 상당히 많고 특히 개혁개방 이후 전통분재 유파가 발전되면서 새로운 유파가 많이 생겨났음

① 영남파 분재(嶺南派盆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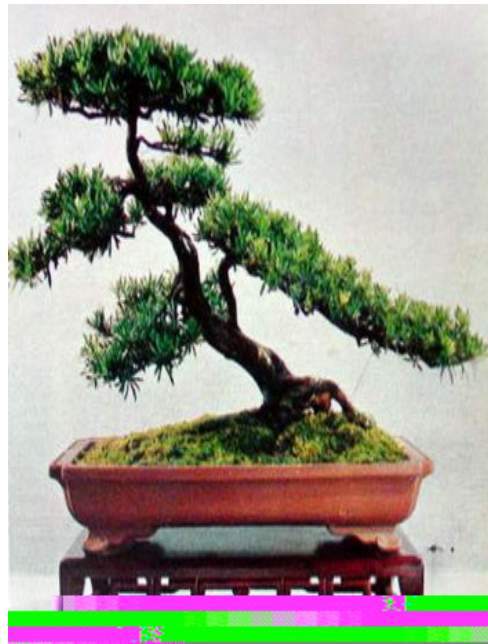
- 광저우(廣州)가 중심이 된 광둥성(廣東省) 분재는 오령(五嶺)의 남쪽에 있어서 영남파라고 일컬어 짐
- 영남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오렌지 자스민, 복건다, 느릅나무, 산앵두, 용수나무, 회양목, 토송, 섬잣나무, 진달래, 매화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음



영남파 분재(嶺南派盆景)

② 천파 분재(川派盆景)

- 천파 분재는 사천성(四川省)이 중심으로 된 지역에 있는 분재임
- 천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금탄자, 백정화, 토송, 은행나무, 백일홍, 꽃해당화, 매화나무, 피라칸다, 동백꽃, 진달래 등이 있음



천파 분재(川派盆景)

③ 양파 분재(揚派盆景)

- 양주(揚州)가 중심으로 된 양파 분재는 가주(嘉州), 태주(泰州), 흥화(興化), 고우(高郵), 남통(南通), 여고(如臯), 염성(鹽城) 등지의 분재가 포함됨
- 양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소나무, 측백나무, 느릅나무, 회양목, 섬잣나무, 토송, 백정화, 은행나무, 벽도, 석류나무, 구기, 매화나무, 동백꽃 등이 있음



양파 분재(揚派盆景)

④ 소파 분재(蘇派盆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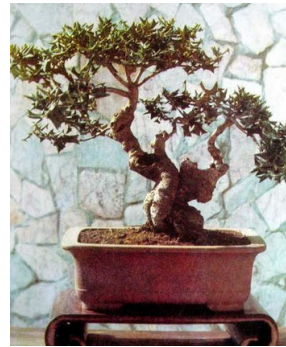
- 소파 분재는 소주시(蘇州市) 지역 분재임
- 소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소나무, 측백나무, 산앵두, 참느릅나무, 회양목, 단풍나무, 석류나무, 마블숙 등이 있음



소파 분재(蘇派盆景)

⑤ 해파 분재(海派盆景)

- 해파 분재는 상해(上海) 지역 분재임
- 해파 분재의 품목은 풍부한데 낙엽류, 상록류, 화과류 등이 있고 품목수는 140여 종에 달함. 그중 소나무, 측백나무 등 상록류와 화과류는 주요 품목이며, 최근 몇 년 일본, 포르투갈 등에서 일부 품목을 수입하여 해파 분재의 품목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음



해파 분재(海派盆景)

⑥ 휘파 분재(徽派盆景)

- 휘파 분재는 안휘성(安徽省) 지역 분재임
- 휘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매화나무, 측백나무, 소나무, 토송, 푸른잣나무, 백일홍, 남천죽, 참느릅나무 등이 있음



휘파 분재(徽派盆景)

⑦ 절파 분재(浙派盆景)

- 절파 분재는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와 온주시(温州市)가 중심으로 된 지역에 있는 분재이며, 그 역사가 매우 유구함
- 절파 분재의 품목으로는 소나무, 측백나무, 잣목류, 화과류 등 100여 종이 있음



절파 분재(浙派盆景)

⑧ 민파 분재(閩派盆景)

- 민파 분재는 복건성(福建省) 복주시(福州市)와 천주시(泉州市)가 중심으로 된 지역에 있는 분재임
- 민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느릅나무, 복건다, 오렌지자스민, 팽나무, 산앵두, 토송 등이 있음



민파 분재(閩派盆景)

⑨ 계파 분재(桂派盆景)

- 계파 분재는 광시(廣西) 지역 분재임
- 계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느릅나무, 오렌지자스민, 복건다, 회양목, 백정화, 토송, 섬잣나무, 자등, 용수나무 등 있음



계파 분재(桂派盆景)

⑩ 경파 분재(京派盆景)

- 경파 분재는 북경(北京) 지역 분재임
- 경파 분재의 주요 품목으로는 팽나무, 싸리나무, 화산송, 갈매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가문비나무 등 40여 종이 있음



경파 분재(京派盆景)

⑪ 홍콩 분재(香港盆景)

- 홍콩은 지역이 작아 자연 자원이 유한해서 분재 재료는 거의 외지에서 수입함. 홍콩의 기후가 광둥성(廣東省) 기후하고 비슷해서 분재 스타일도 영남파 분재와 비슷한데 변화가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임



홍콩 분재(香港盆景)

⑫ 대만 분재(臺灣盆景)

- 대만은 산이 많고 기후가 후덥지근해서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게다가 해상 교통이 발달해서 경제, 문화 등에서 해외와의 교류가 많아서 분재 예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대만 분재는 영남파와 일본 분재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음. 주요 품목으로는 흑송, 용수나무, 섬잣나무, 진백, 장목, 팽나무, 해부용, 단풍나무 등이 있음



대만 분재(臺灣盆景)

2 수입 관련정책 및 제도

1) 수입 동향(경쟁국 동향)

- 중국의 분재는 별도의 HS코드가 없고 0602(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삼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분재의 수입동향 분석은 어려움

《 중국의 분재 수입동향(2011~2012년 5월 / 0602) 》

| 국가(지역) | 2011년 | | 2012년 1~5월 | |
|--------|--------|--------|------------|--------|
| | 금액(천불) | 증가율(%) | 금액(천불) | 증가율(%) |
| 대만 | 7,350 | 77.7 | 3,759 | 20.2 |
| 미국 | 4,334 | -10.0 | 3,085 | -0.8 |
| 일본 | 2,833 | -43.7 | 2,769 | 88.7 |
| 태국 | 5,750 | 218.6 | 2,738 | -4.5 |
| 네덜란드 | 9,086 | 30.9 | 2,508 | -20.0 |
| 이탈리아 | 444 | 45.2 | 1,261 | 278.0 |
| 한국 | 2,588 | -1.7 | 1,081 | -30.7 |
| 베트남 | 4,058 | 416.0 | 695 | -67.0 |
| 남아공 | 2,122 | 742.1 | 473 | -26.0 |
| 우루과이 | 931 | 155.5 | 424 | 25.3 |
| 기타 | 5,677 | - | 1,168 | - |
| 합계 | 45,173 | 36.8 | 19,961 | -5.3 |

* 자료) 중국 해관총서

- 상기 표를 보면 2011년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U\$45,173천불의 산식물(0602)을 수입하였는데 수입국 중 네덜란드가 총 U\$9,086천불로 가장 많이 수입했고 태국, 베트남, 남아공, 우루과이 등 국가에서의 수입액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1~5월 기간 중 중국의 산식물(0602)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5.3%감소한 U\$19,961천불을 수입하였는데, 대만으로부터 총 U\$3,759천불로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며, 이탈리아, 일본 등 국가의 수입금액이 대폭 상승하였고 베트남, 남아공,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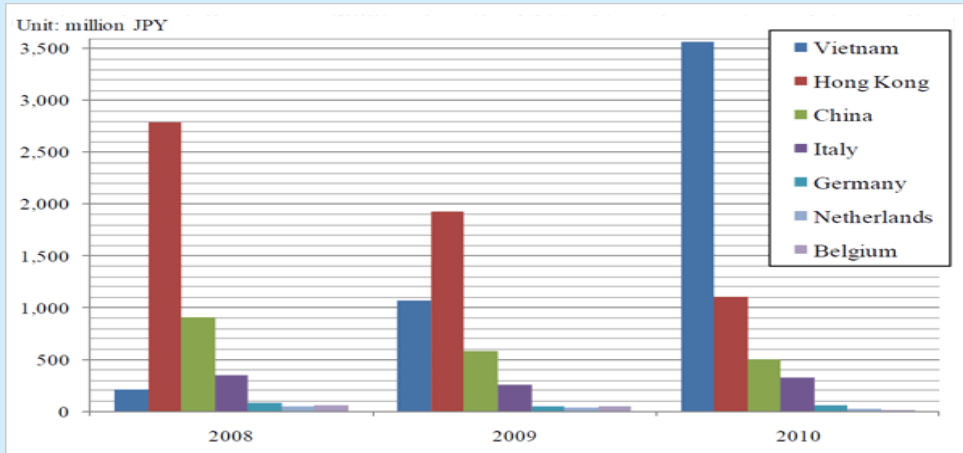
덜란드 등 국가에서의 수입 금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U\$2,588천불로 전년대비 △1.7%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2년 1~5월의 수입 금액은 U\$1,081천불로 △3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 탐문조사결과, 연간 분재(羅漢松 포함) 수입액은 2~3억 위안(U\$30~50백만불) 수준으로 분재의 주 수입국은 일본, 대만이며, 동식물검역의 어려움으로 베트남, 홍콩 등 접경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의 분재 수출현황

- 일본은 분재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10년 기준 약 55억엔(70백만불)내외 수출
- 일본의 주요 수출국가는 베트남, 홍콩이며 중국은 수출대상국 중 3위를 차지함
- 이는 중국의 식물검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 홍콩 등 국가로 우회 수출되어 육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재수입되는 것으로 파악됨

〈일본의 연도별/국가별 분재 수출현황〉



* 자료) JETRO Market Report

※ 주요수입국(바이어 탐문조사)

- 분재바이어 탐문조사결과 중국은 분재를 일본과 대만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베트남, 홍콩 등 접경국가로부터 우회수입이 많음)
 - * 연간 수입액(추정) : 30~50백만불
 - * 수입비율 : 일본(90%), 대만(10%)
 - 분재수입을 시작할 때 중국 내 대만상인 위주 추진으로 대만산 수입비율이 높았으나 중국 상인도 수입에 나서면서 양질의 일본산 수입이 증가
- 원산지별 선호품종
 - * 일본 : 소나무(松樹), 측백나무(柏樹), 단풍나무(楓樹)
 - * 대만 : 진백나무(眞栢), 나한송(羅漢松)

| 일 본 | | | 대 만 | |
|--|--|--|---|--|
|  |  |  |  |  |
| 소나무(松樹) | 측백나무(柏樹) | 단풍나무(楓樹) | 진백나무(眞栢) | 나한송(羅漢松) |

2) 수입 관련 제도(쿼터제 여부, 통관 절차 및 관세율 등)

- 한국산 분재 수출 가능품목
 - 주요 분재 품목 중 대중국 수출가능 품종
 - 은행나무묘목, 동백나무묘목, 단풍나무묘목, 철쭉나무묘목, 소사나무묘목, 느티나무묘목, 낙상홍나무묘목
 - 주요 분재 품목 중 대중국 수출 불가능 품종 : 소나무묘목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DB 참조(www.qia.go.kr)

○ 분재 관세율

- 현재 중국은 분재 수입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통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0%이고 최혜국 관세율(한국산 적용)은 일반적으로 10~15%임

○ 분재 수입절차 : 분재 수입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① 수입 신고 서류 준비

- 수입화물의 수하인은 B/L을 받고 직접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거나 대리업체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수입화물 통관신고 서류를 작성하며 Invoice, Packing List, 운송장, 수입화물 면세증명서, 검사검역 및 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 대리 통관 위탁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함

② 통관신고 서류입력

- 수입 화물의 수하인은 상기서류를 준비한 후 통관신고 대리업체를 통해 통관신고 서류상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정식으로 세관에 통관신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③ 수입화물 신고접수

- 세관은 통관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 후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감독 관리를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에서 통관 도장을 찍음. 수입 화물의 수하인은 세관감독 관리 현장에서 수입 화물을 수령
- ※ 분재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주요내용은 불임참조

3) 수출업체 유의사항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재 중 하나인 소나무 분재는 식물검역 상 대 중국 수출이 불가하며, 기타 분재의 경우 대부분 수출가능(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DB 참조 www.qia.go.kr)
- 중국의 경우 분재는 수출 후 검역상의 이유로 일정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기간 (1~3개월) 격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검사가 완료될 때 까지 판매 될 수 없음

- 정부 지정장소에서 격리하거나 수입상이 제공한 격리지를 정부 관찰 후 지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유럽이나 미국 수출용 분재는 한국에서 2~3년간 격리재배 후 수출이 가능
 - 유럽수출용
 - 격리재배기간 : 2년
 - 격리조건 : 50cm이상 벤치위에서 분재재배, 격리재배지에 망을 씌워 해충유입 방지시설 설치, 1년에 6회 검역기관 검역실시
 - 미국수출용
 - 격리재배기간 : 3년
 - 격리조건 : 50cm이상 벤치위에서 분재재배, 격리재배지에 망을 씌워 해충유입 방지시설설치
- 일본, 대만 수출 분재의 경우 유럽, 미국과 같은 기타 조건은 없음

3 유통구조 및 주요 바이어

1) 유통구조

○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는 분재의 유통 경로는 대개 아래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생산자-소비자

생산자가 화훼시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형태. 이러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분재는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주요유통 경로이나 향후 화훼산업 발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임(고가품 주요 유통경로)

② 생산자-소매업체-소비자

생산자의 제품이 화훼시장(花鳥市場)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구조. 이런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분재는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로는 생산지와 판매지간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고 보통 소매업체가 직접 생산지에서 제품을 구입함. 이런 경우 소매업체는 항상 제품구매, 포장, 운송 등 과정에서 비교적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중저가품 유통경로)

③ 생산자-도매업체-소매업체-소비자

이런 경로는 주로 생산 규모가 크고 목표 시장이 흩어져 있으며 거리가 먼 경우 많이 이용됨. 이런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분재는 전체 판매 분재 중 7%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이런 경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화훼 생산업체에 있어 도매업체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임(중저가품 유통경로)

2) 유통현황(유통제품 및 가격)

- 중국 내 유통되는 분재는 수목종류, 모양, 스타일 등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매우 큼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인 적송(赤松)의 경우 상급(주로 일본산)은 약 80만 위안(약 144백만원), 중국산의 경우 10만 위안(약 18백만원) 내외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함

| | | |
|--------|---|--|
| 제품명 | 소나무 | 배롱나무 |
| 업체명 | 沭阳县蓝翔园艺花木场 | 鑫源花卉园 |
| 가격(위안) | ¥2,800 | ¥68,600 |
| 사진 |  |  |
| 제품명 | 은행나무 | 회양목 |
| 업체명 | 智洋园艺 | 微微花卉园艺 |
| 가격(위안) | ¥28,000 | ¥12,800 |
| 사진 |  |  |

| 제품명 | 소나무 | 배롱나무 |
|--------|---|--|
| 업체명 | 沭阳县蓝翔园艺花木场 | 沭阳县新河镇新槐村泰顺花卉园艺场 |
| 가격(위안) | ¥400 | ¥68 |
| 사진 |  |  |
| 제품명 | 은행나무 | 등백꽃 |
| 업체명 | 山东玉鑫花木园林有限公司 | 广东佛山顺德大惠花木有限公司 |
| 가격(위안) | ¥300 | ¥400 |
| 사진 |  |  |

○ 가격현황

| 품종 | 규격 | 가격(위안) | 산지 |
|----------|-------------------------|---------|-----------------|
| 섬잣나무 | 15cm | 3,000 | 奉化三十六湾绿源园艺场 |
| | 16cm | 5,000 | |
| | 몇 년 된 완성품 | 800 | 湖南长沙新辉苗木基地 |
| | 250cm*200cm | 55,000 | 江苏省沭阳县兆胜花卉苗木园艺场 |
| | 200cm*200cm | 33,000 | |
| 나한송 | 100cm | 3,800 | 姜氏花木场 |
| | 250cm | 3,500 | 湖南长沙新春苗木场 |
| | 2년 된 완성품 | 700 | |
| | 높이 200cm인 완성품 | 800 | 湖南长沙湘缘花木直销中心 |
| | 높이 6cm, 지름7cm | 380 | |
| | 20cm | 80,000 | 江苏省沭阳县兆胜花卉苗木园艺场 |
| | 19cm | 80,000 | |
| | 18cm | 75,000 | |
| | 17cm | 68,000 | |
| | 22cm | 70,000 | |
| | 32cm | 135,000 | |
| | 30cm | 130,000 | |
| | 지름10cm 높이150cm | 3,800 | 浏阳市政园林苗木场 |
| | 지름12cm 높이200cm | 5,800 | |
| | 10cm | 4,500 | 湖南浏阳市柏加镇新鑫苗木场 |
| | 지름 8cm | 1,600 | |
| | 높이 280cm 지름280cm 5층 완성품 | 8,000 | 姜氏花木场 |
| 120cm | 4,800 | | |
| 150cm | 5,800 | | |
| 지름 8cm | 6,600 | | |
| 지름 5cm | 4,600 | | |
| 비솔나무 | 50 | 80 | 湖南长沙新春苗木场 |
| | 12cm | 1,000 | 湖南长沙新春苗木场 |
| 흥계목 | 몇 년 된 완성품 | 1,200 | 湖南长沙新辉苗木基地 |
| | 높이 300cm인 완성품 | 1,200 | 湖南长沙湘缘花木直销中心 |
| | 30cm | 15,000 | 浏阳市政园林苗木场 |
| | 150cm | 5,000 | 青未了绿化苗木场 |
| | 120cm | 3,000 | |
| | 8년생 | 55 | 沭阳县庙头镇花木协会 |
| | 높이 0.8m | 20 | 河南苗木花木园林苗圃场 |
| 소철 | 구경(球径)50~60 | 130 | 湖南浏阳市柏加镇新鑫苗木场 |
| | 구경(球径)40~50 | 90 | |
| 곰솔 | 지름 200cm | 500 | 中国安徽省来安县华美苗木场 |
| | 높이 1.2m | 60 | 河南苗木花木园林苗圃场 |
| 금전송(金钱松) | 80cm 높이 | 10,000 | 姜氏花木场 |
| | 60cm 높이 | 8,000 | |

| 품종 | 규격 | 가격(위안) | 산지 |
|------------------------|-------------------|--------|---------------|
| 용백 | 몇 년 된 완성품 | 200 | 湖南长沙新春苗木场 |
| 홍두삼 | 200cm*250cm | 3,000 | 浙江新昌巧英乡海邦花木场 |
| | 40cm*40cm | 250 | |
| | 30cm*40cm | 80 | |
| | 80cm*80cm | 2,000 | |
| | 100cm*80cm | 1,800 | |
| | 60cm*40cm | 100 | |
| | 100cm*100cm | 2,000 | |
| 비술나무 | 40-60cm | 1,000 | 莲花县森美农林开发有限公司 |
| | 20cm | 8,000 | 湖南浏阳绿海园林绿化苗圃 |
| 영산홍 | 40cm*50cm | 180 | 江西万安县卉园개景花木公司 |
| | 40cm*40cm | 120 | |
| | 50cm*60cm | 1,500 | |
| | 35cm*28cm | 300 | |
| | 45cm*55cm | 650 | |
| | 55cm*75cm | 1,300 | |
| | 50cm*80cm | 1,400 | |
| | 75cm*82cm | 1,200 | |
| 단풍나무 | D20cm | 28,000 | 江苏名人绿化苗木公司 |
| | 1 | 15,00 | |
| 황양목 | 50*50 | 130 | 江苏名人绿化苗木公司 |
| | 높이 1.2m | 20 | 河南苗木花木园林苗圃场 |
| 은행나무 | - | 300 | 郟城佳佳银杏苗木培育基地 |
| 화극 | 직경4~8CM 높이50~90CM | 1,280 | 贵州盘县统统宝贝农业合作社 |
| | 직경4~8CM 높이50~80CM | 586 | |
| 파키라 아쿠아티카 (发财树) | 높이 1.5m | 105 | 江苏苏沙园林公司 |
| | 높이 1m | 70 | |
| 큰홍가시(红叶石楠) | 60~80cm | 100 | 莲花县森美农林开发有限公司 |
| 납매(腊梅) | 15년 이상 | 480 | |
| 계화(桂花) | 높이 1.2m | 8 | 河南苗木花木园林苗圃场 |
| | - | 50 | 江苏苏沙园林公司 |
| | - | 10 | |
| | 높이 1.2m | 8 | 河南苗木花木园林苗圃场 |
| 화석류(花石榴) | 높이 0.6m | 5 | 河南苗木花木园林苗圃场 |
| 매화(梅花) | 높이 1.2m | 16 | |
| Purpus Priver(小叶女贞) | 높이 1.2m | 50.00 | |
| 배롱나무(紫薇古桩) | 지름 60cm | 56,600 | 姜氏花木场 |
| | 지름 50cm | 48,800 | |

자료) 칭칭화목사이트, 중국원림사이트

3) 유통업계(바이어) 의견(선호수종, 선호분재 스타일)

- 중국은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나무 종류에 따라 선호하는 분재 종류가 상이하나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시장성이 좋은 품종은 소나무임
- 또한 매화, 난초, 은행나무, 느릅나무 등도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임
- 선호 분재 스타일은 주로 수목분재(樹木盆景), 수한분재(水旱盆景), 화초분재(花草盆景) 등이 있음
- ※ 국가별 선호품종
 - 일본산 : 소나무(松樹), 측백나무(栢樹), 단풍나무(楓樹)
 - 대만산 : 진백나무(眞栢), 나한송(羅漢松)
 - 한국산 : 적송(赤松), 진백나무(眞栢), 모과나무(木瓜), 주목나무(朱木)

4) 주요 바이어 리스트

- 중국 분재 바이어는 중국 내 분재를 재배하는 농민이 대부분이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구분 | 업체명 | 담당자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1 | 上海頂秀園林綠化工程有限公司 | 申洪良 | 上海市 北京西路 1850号 507室 | 1390-161-2257 | 분재 생산·바이어 |
| 2 | 安徽樊氏园林景观有限公司 | 樊顺利 | 安徽省 合肥市 蜀山区 井岗镇 | | 분재 생산·바이어 |
| 3 | 常州市绿杨花卉有限公司 | 王永康 | 江苏省 常州市 清潭路 232号 | 1360-150-8658 | 분재 생산·바이어 |
| 4 | 漳平市永福绿帆花木场 | 蔡 鑫 | 福建省 漳平市 永福镇 兰田村兰田 10号 | 134-5972-5352 | 분재 생산·바이어 |
| 5 | 杭州梦琪园艺有限公司 | 张有从 | 浙江省 杭州市 秋涛路 | 0571-86713176 137-3587-1318 | 분재 생산·바이어 |
| 6 | 漳浦县沙西镇常青园艺场 | 李小辉 | 福建省 漳浦县 沙西镇 高林村 榕树盆景开发区 | 0596-3817181 158-5966-6567 | 분재 생산·바이어 |
| 7 | 嵊州市长乐开元榆树盆景园艺场 | 周霞敏 | 浙江省 嵊州市 开元人民东路 38号 | 0575-83731318 | 분재 생산·바이어 |
| 8 | 漳浦县顺新榕树盆景场 | 李建瑞 | 福建省 漳浦县 沙西镇 塘南榕树开发区 8号 | 0596-3817241 | 분재 생산·바이어 |
| 9 | 沭阳县蓝翔园艺花木场 | 胡 进 | 江苏省 沭阳县 新河镇周圈村 盆景长廊路北8-9号门 | 0527-83397323 | 분재 생산·바이어 |
| 10 | 荆州开发区凯宇花木盆景园 | 王 勇 | 湖北省 荆州市 沙市区 农场农技路 | 0716-8350188 | 분재 생산·바이어 |
| 11 | 长阳春华根艺盆景专业合作社 | 向春华 | 湖北省 长阳土家族自治县 高家堰镇 | 0717-5488168 | 분재 생산·바이어 |
| 12 | 沭阳县绿叶花木园 | 周友胜 | 江苏省 沭阳县 魅力乡村 绿叶景观园 | 0527-83397511 138-5136-1360 | 분재 생산·바이어 |
| 13 | 沭阳极林苗木园艺场 | 乔迎侠 | 江苏省 沭阳县 新河镇 新槐村 | 137-3269-8611 | 분재 생산·바이어 |
| 14 | 沭阳县森业花木园艺中心 | 葛 姜 | 江苏省 宿迁市 沭阳县 颜集沙湾新村 5号 | 0527-83396595 | 분재 생산·바이어 |
| 15 | 上虞市绿苗园林花木有限公司 | 吴海阳 | 浙江省 上虞市 城南中学西面300米博学路 | 0575-82605268 137-5752-6099 | 분재 생산·바이어 |
| 16 | 浏阳市明晨园林绿化苗圃 | 陈 明 | 湖南省 浏阳市 柏加镇 柏铃社区 | 0731-83120370 139-7587-1137 | 분재 생산·바이어 |
| 17 | 沭阳县梦琦花卉园 | 胡义涛 | 江苏省 沭阳县 新河镇周圈村 盆景长廊路 北4号门 | 0527-83396621 | 분재 생산·바이어 |
| 18 | 漳平市花通农业产地直销部 | 陈小宝 | 福建省 漳平市 永福镇 吕坊村(原铁厂后) | 0597-7885406 158-8060-6300 | 분재 생산·바이어 |

자료) 中國盆景藝術家協會, 알리바바(<http://china.alibaba.com/>)

4 수출 확대방안

1) 목표 소비자

- JMA(Japan Managment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고소득 층 사이에서 분재는 보편적인 취미(영화, 스포츠, 음악 등)를 제외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취미로 조사되었음(서예나 수공예 보다 분재를 더 선호)
- 특히 문화혁명 세대(문화혁명 시 10대에서 30대 사이/현재 55~75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일본에서는 과거 전후 경제 발전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된 후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취미를 찾는 경향이 나타났음
 - 중국도 일본이나 한국이 경험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도 산업화 이전의 상황을 경험한 문화혁명 세대에서 분재를 통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목표 소비자는 고소득층 55~75세 전후 문화혁명 세대를 타깃으로 설정 필요

2) 수출확대 방안

- 한국 분재 홍보필요
 - 현재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분재는 대부분 일본, 대만산으로 중국 바이어의 경우 한국산 분재 품질, 가격, 주요 생산품종 등 제반지식이 거의 없음
 - 한국 분재의 경우 분재기술이 일본과 유사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구비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지만 중국바이어들은 한국산 분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
 - 한국산 고품질 분재를 중국 바이어들에게 설명하는 분재 홍보행사 추진

- 중국 각 지역별 선호분재 형태에 따른 제품생산 필요
 - 남방지역은 화려한 색상의 분재를 선호하고 북방지역은 소나무 등을 소재로 한 분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개척방안 수립이 필요
- 분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업체 매칭
 -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분재 바이어를 DB화하여 한국 유력 수출업체와 알선·연계
 - 중국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체간 상담회 개최를 통하여 수출확대 유도 필요
- 고가전략
 - 저가 분재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고급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전략이 유효
 - 특히 중국 고소득층의 경우 가격보다는 보다 우수한 분재를 구입하는 취미를 지닌 계층으로 품질이 높은 분재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참고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이하 검역법이라 약칭함)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아래의 물품은 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수출·통과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담은 용기, 포장 재료
3. 동식물 전염 지역에서 온 운송 도구
4. 입국 후 해체한 폐기 선박
5.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제 조약의 규정 또는 무역 계약 약정에 의거하여 마땅히 수출입 동식물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기타 화물이나 물품

제3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 업무를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국(이하 검역국으로 약칭함)은 전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 업무에 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외 중대 동식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간 수출입 동식물 검역의 협력과 교류를 책임진다. 검역국은 대외 개방된 연안과 수출입 동식물 검역 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립된 연안 동식물 검역 기관에서 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식물 검역을 실시한다.

제4조 국외에서 발생된 중대한 동식물 전염 상황이 중국에 전파 가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무원은 해당 국경 지역에 대하여 통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동식물 전염 지역에서 온 운송 장비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관련 해안을 봉쇄한다.
2.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과한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의 목록을 공시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다.

3. 관련된 해안 동식물 검역 기관은 병충해로 오염된 본 조례 제2조에 기재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긴급 검역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동식물 전염 상황 위험 정보를 접수한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와 국가동식물검역국에 보고한다. 통신, 운송부서는 중대한 동식물 전염 보고와 검역 자료에 대해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전달이 되도록 한다.

제5조 외교 및 영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국 기구의 인원이 공적 혹은 사적으로 동식물,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법과 본 조례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해안의 동식물 검역 기관이 조사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세관은 법에 의거 해안 동식물 검역 기관에 협조하며, 수출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감독 관리를 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해관총서가 함께 제정한다.

제7조 검역법에서 언급하는 동식물 검역 지역 및 동식물 전염병 유행 국가와 지역 목록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확정을 거쳐 공포한다.

제8조 검역법과 본 조례의 완벽한 집행을 위해 현저한 성적을 나타낸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포상한다.

제2장 검역 심사

제9조 동물·동물 제품의 수입과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입금지품의 검역 심사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심사는 식물검역조례에 규정된 기구에서 책임진다.

제10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 검역 심사 수속이 가능하다.

1. 수출 국가 혹은 지구에 중대한 동식물 전염이 없는 경우
2. 중국 관련 동식물 검역 법률·법규·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부합하는 경우
3. 중국과 수출 국가 혹은 지역이 합의한 관련 쌍방 검역 협정(검역 협의, 비망록 등도 해당)에 부합하는 경우

제11조 검역 심사 수속은 무역 계약 혹은 협의서 합의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식물 종자 혹은 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여 검역 심사 수속을 거쳐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전 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휴대인이나 발송인이 해안에서 보충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 합격 후 입국이 가능하다.

제13조 동물의 중국 통과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사전에 국가 동식물 검역국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입국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 입국 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통과 노선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가 동식물 검역국은 심사 동의 후 《동물 통과 허가증》을 발행한다.

제14조 과학 연구 등의 특수한 수요에 의해, 검역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금지수입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지 수입품 특수 허가 검역 심사 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주·소유주 혹은 대리인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수량·용도·수입 후 방역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서명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 수입 검역 심사 수속 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주·소유주·대리인은 반드시 재차 검역 심사 수속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품종이나 수량의 변경시
2. 수출국 혹은 지역의 변경시

3. 수입 해안의 변경 시
4. 검역 심사 유효기간을 넘겼을 경우

제3장 수입 검역

제16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제12조에서 언급한 중국 법정 검역 요구는 중국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하는 동식물 검역 요구를 가리킨다.

제17조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동식물 제품의 국외 생산·가공·보관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 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18조 동식물·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수입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전 혹은 수입과 동시에 수입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세관 검사 관리국 검역의 변경이나 도착 지점 지정 시에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관련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 이전 화물에 대해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입 시 수입되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며, 지정 운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지정 운수 지점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한다. 가축 가금류 및 해당 정액·알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 30일 전에 검사를 보고하며, 기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15일전에 검사를 보고한다.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입국 7일전에 검사를 보고한다. 동식물성 포장물·포장 재료의 입국 수속 시는 화주 혹은 대리인이 즉시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고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동식물성 포장물·포장 재료는 직접 포장물이나 깔개 재료로 쓴 동식물 제품과 식물·식물 제품을 가리킨다.

제19조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에 검사를 보고할 경우, 검사 보고서를 자세히 기록하고, 수출국 혹은 해당 지역 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서·원산지증명·무역계약·신용장·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법에 의거 검역 심사 수속을 행하여야 하며, 검역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출국 혹은 해당 지역 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검역증서가 없거나, 합법적으로 검역 심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화물 반납이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된 동식물·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해안에 도착할 경우 검역 인원은 운송 수단에 진입하여 화물 현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물과 증명 서류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규정에 의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화물 운송자와 화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인원에게 선적 리스트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적재한 동물의 운송 수단이 항구에 도착했을 경우, 하역한 운송 도구 혹은 동물에 접근한 인원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실시하는 방역 소독에 응해야 한다. 동시에 기타 현장에 대한 예방 조치를 집행한다.

제22조 검역 인원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1. 동물 : 질병 여부에 따르는 임상 증상을 관찰한다. 의심되는 전염병 혹은 이미 사망한 동물이 발견될 경우, 화주 혹은 운송인의 협조 아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처리한다. 동물이 깔고 있던 식물·잔여사료와 배설물 등은 화주 혹은 대리인이 검역 인원의 감독 아래 위험물을 제거한다.
2. 동물제품 : 부패 변질 상태를 조사하며, 용기·포장의 파손 여부를 검사한다.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하역을 허가한다. 포장이 풀렸거나 용기의 파손이 발견된 경우에는 화주나 대리인의 책임 아래 완벽히 원상 복구한 후 하역을 허가한다. 상황에 따라 운반 수단의 해당 부분과 동물제품을 적재했던 용기·외부 포장물·깔개 재료·감염 장소 등에 대해 소독 처리를 실시한다. 실험실 검역이 필요할 경우는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한다. 해충이 번식하기 쉬운 식물 혹은 잡초의 종자가 섞여 있는 동물 제품에 대해서는 식물 검역을 동시에 실시한다.
3. 식물·식물 제품 : 화물과 포장물의 병충해 유무를 검사한다. 규정에 의거 샘플을 채취한다. 병충해를 발견하고 동시에 확산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해당 화물이나 운송 수단과 하역 현장에 대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화물이 동물 전염병 지역에서 왔거나, 동물 전염병 전염 혹은 기생충 병원체의 전염이 용이하거나 동물 사료로 사용 가능한

식물 제품에 대해서는 동물 검역을 동시에 실시한다.

4. 동식물성 포장물·깎개 재료 : 병충해의 보유 여부·잡초 종자·오염된 토양에 대해 검사하며,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를 한다.
5. 기타 검역물 : 포장의 파손 여부와 병충해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파손을 발견하거나 병충해 오염을 발견할 경우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제23조 선박·기차로 운반되는 대형(벌크)동식물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분리 검사를 실시한다. 항구나 기차역의 제한적인 보관 조건으로 인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동의 아래 하역과 동시에 부분 운송을 할 수 있다. 운송된 동식물 제품은 지정된 지점에 보관한다. 하역 과정 중 진행된 검역에서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는 그 하역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화주 혹은 대리인에 의해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미 하역되었거나 미 하역된 화물에 대해 위해(危害)제거 처리를 한다. 전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병충해 오염에 노출된 하역 도구와 장소는 반드시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제24조 품종이 많은 가축을 수입하는 경우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 설립한 동물 격리 검역 장소에서 45일 격리 검역을 실시한다. 기타 동물의 수입은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지정한 동물 격리 검역장에서 30일 격리 검역을 실시한다. 동물 격리 검역 장소 관리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25조 입국하는 동일한 동식물 제품의 각기 다른 항구에서의 하역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본 항구의 하역화물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한다. 앞선 하역항에서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 및 처리상황을 즉시 기타 하역하는 항구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한다. 대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역이 완결된 항구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한다. 하역항 검사 중에 전염병을 발견하고 반드시 선박에서 훈증, 소독해야 하는 경우 당해 하역항의 항구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하고 적시에 기타 하역항의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중국 국가표준과 업계표준에 의거 국가 동식물검역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27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검역 합격후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수입허가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검역완결 통지서>를 발행한다. 수입항구의 변경이 있어 해안 세관 감독권리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 혹은 대리인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수입허가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발행한 <검역완결통지서>, <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근거로 세관보고·운반수속을 진행한다. 세관은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세관보고서에 날인한 인장이나 발행한 <검역완결통지서><해안 변경 검역통지서>를 근거로 검사를 생략한다. 운수·체신부문은 위 서류를 근거로 운송을 행하며, 운송기간 국내 기타 검역기관은 재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28조 수입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처리통지서>를 발행하여, 화주 혹은 대리인이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과 기술지도 아래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통지한다. 대외클레임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9조 국가 동식물검역국은 검역의 필요에 따라 동식물·동식물제품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 관련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사전검역과 포장감독 및 원산지 감염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세관·국경수비 등 부문은 압수한 불법 수입된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 즉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4장 수출검역

제31조 화주 혹은 대리인은 법에 의거,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출국보고 수속 시 무역계약과 협의서를 제공한다.

제32조 수입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생산·가공·보관 단위의 등록등기를 요구할 경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등록등기를 실시하고 동시에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이를 보고한다.

제33조 동물 수출시 출국전에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하는 격리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식물·동식물제품 기타 검역물의 수출시 창고 혹은 화물 소재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에 의해 생산·가공 과정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검역에 제공되는 수출용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수량·포장·적재·마크 표기가 완벽한 상태이어야 한다.

제34조 동식물·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수출검역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입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 관련 동식물검역규정
2. 쌍방 검역 협정
3. 무역계약에 명시된 검역 요구

제35조 운반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친 합격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은 출국 해안으로의 운반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동물은 수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임상 검역 혹은 재검을 거친다.
2.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최초 운반지에서 운반수단으로 옮겨져 출국될 경우 출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증명서를 검사하고 허락한다. 운반수단이 바뀌어 출국할 경우는 증명서를 바꾸어 허가한다.
3.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일괄포장으로 수출 해안에 도달한 후, 수입국이나 지구의 변경으로 인해 각기 다른 검역요구가 있을 경우, 혹은 규정된 검역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36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수출할 경우, 최초 운반지에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합격을 득한 후 수출해안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는 운수·체신부문은 최초 운반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에 의거 운반하여야 하며, 국내 기타 검역기관은 재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5장 국경 통과 검역

제37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국경통과(화물이전도 포함)시는 운반인 혹은 피운반인은 선하증권과 수출국가 혹은 지방정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한다. 동물의 국경통과 시는 동식물검역국이 발행한 〈동물 국경통과 허가증〉을 동시에 제출한다.

제38조 국경통과 동물이 입국 해안에 도달할 경우,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운반수단·용기의 외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며 동물에 대해 임상검역을 진행한다. 검역 합격 판정후 국경통과를 허락한다. 입국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출국해안을 감독할 수 있으며, 출국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재검역하지 않는다.

제39조 국경통과 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운반수단과 포장물·적재 용기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사를 거친후 운반수단 혹은 포장물·적재 용기가 운반도중 누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운반인 혹은 피운반인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요구에 의거 밀봉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봉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경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제6장 휴대 및 우편물의 검역

제40조 휴대·우편물을 이용한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의 입국시 법에 따라 검역심사수속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 검역기관이 반송기키거나 폐기처리한다. 우편물의 반송처리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우편물과 발송장에 반송원인을 명기한다. 우편물 폐기처분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통지서를 발급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한다.

제41조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제시된 보고서나 또는 조사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즉시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여 검역을 받도록 한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휴대 입국을 불허한다.

제42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항구·공항·기차역의 승객통로나 수화물 인수처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의 물품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방이나 수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한다. 여행객의 수출입 검사현장에는 반드시 동식물검역 데스크 위치와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43조 동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수출국 국가 혹은 지역 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역 합격후 입국을 허락한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휴대 입국시는 면역접종증서를 지참해야 하고, 검역증서나 면역증서가 없는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기한내 반송시키거나 몰수 폐기 처리한다. 기한내 반송시키는 경우 휴대인은 규정된 시간내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역류허가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출국시 이를 반납하고 동물을 휴대 출국한다. 정해진 기한내 동물을 휴대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동물을 자동 폐기 처리한다.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현장 검역 합격후 입국을 허가한다. 실험실 검역이나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역류증명서를 발급한다. 역류 검역후 합격한 경우 휴대인은 역류증명서를 제시하고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물품을 돌려받는다. 정해진 기간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처리한다. 휴대·우편물 입국이 금지된 물품은 검역법 제29조 규정의 목록에 열거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에 따른다.

제44조 우편으로 발송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국제우편물교환국(국제 특급우편 택배회사와 기타 국제 우편물 경영단위를 포함하며, 이하 우체국으로 약칭함)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우체국은 필요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 검역 합격 제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허가인장을 날인하며, 우체국에 인계한다. 실험실 검역이나 격리 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우체국에 인수 수속을 밟는다. 검역 합격품은 허가증 도장을 날인하여 우체국에 인계한다.

제45조 휴대·우편물로 입국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검역을 거쳐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유효한 방법으로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는 반송이나 폐기 조치한다. 동시에 〈검역처리 통지서〉를 휴대인이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제7장 운송수단의 검역

제4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온 선박·비행기·기차에 대하여서는 운송수단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관련 운송수단 책임자는 검역인원의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조사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운행 일자와 탑재 화물의 명세를 제공하며, 창고와 객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전항의 운송수단에 병충해가 잠복할 가능성이 있는 식당차·조리차·주방·저장실·식품창고 등과 동식물제품 보존 및 사용장소·배수구·동식물성 폐기물의 보존 장소·컨테이너 본체 등의 구역 혹은 일부분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는 방역 소독처리를 한다.

제47조 동식물검역지구에서 온 선박·비행기·기차에서 검역법 제18조에 규정한 병충해를 발견했을 경우 훈증 소독 혹은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의 입국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밀봉 역류 처리하거나 폐기 처리한다. 밀봉 역류 처리품에 대해서는 중국 국경내에서 체류 혹은 운행하는 동안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밀봉상태를 해제할 수 없다. 운송도구 상의 배수구·동식물성 폐기물 및 그 보관장소·용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하에 위해 제거 처리한다.

제48조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온 입국 차량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방역 소독 처리한다.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탑재한 차량이 검역을 통해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적재화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홍콩·마카오 지구에 공급하는 동물을 적재했다가 운송 완료후 빈 차량으로 돌아오는 경우 전체 차량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제49조 해체를 위해 입국되는 폐선박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한다. 병충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위해 제거 처리를 한다.

입국이 금지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폐기 처리한다.

제50조 동식물 검역지구에서 입국되는 운송도구가 검역 혹은 소독처리 합격후 운송도구 책임자 혹은 대리인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운동도구 검역증서> 혹은 <운송도구 소독증서>를 발행한다.

제51조 입국·국경 통과하는 운송도구가 중국 국경 내에서 체류할 경우 운송인원과 기타 인원은 탑재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이탈시켜서는 안 된다. 이탈이 필요할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고한다.

제52조 탑재된 동물을 출국하는 운송도구에 대해서는 탑재 전에 해안 동식물검역기관 감독하에 소독처리를 한다. 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탑재하고 출국하는 운송도구는 국가 관련 동식물 방역 및 검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해성 병충해 혹은 규정 표준을 초과하는 일반성 세균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해요소를 제거한 후에야 운송할 수 있다.

제8장 검역 감독

제53조 국가 동식물검역국과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수출입되는 식물·동식물제품의 생산·가공·보존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 부문이 제정한다.

제54조 수출입 되는 동물 및 식물의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는 격리 사육·격리 재배가 필요하며 격리기간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수출입 동식물 검역 훈증 및 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합격을 받아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훈증·소독업무에 대한 감독 지도를 하고 동시에 훈증·소독을 책임지는 증서를 발행한다.

제5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항·항구·역·창고·가공공장·농장 등에서 생산·가공·보관하는 수출입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에 대해 현장에서 동식물검역과 감독측정을 실시한다. 이에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설치한 동식물 검역상황 측정기기를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다.

제57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운반도구와 적재 용기에 동식물 검역밀봉표지 혹은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이 밀봉표지를 뜯거나 파손할 수 없다. 이 표지는 국가 동식물 검역국이 통일 제정 발행한다.

제58조 입국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적재된 상기 적재용기·포장물이 보세구(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을 포함)로 향할 경우 입국 해안에서는 법에 의거 검역을 실시한다.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구체상황에 따라 검역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공 후 다시 출국시킬 경우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과 본 조례의 관련 출국 검역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59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역을 미보고하거나 법에 의거 검역 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검역심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2. 검역 신고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과 실지 제품이 다를 경우 상기 제2항의 위법행위로 취득한 검역증서는 취소 처리한다.

제60조 아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3천 위안이상 3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국·국경 통과를 하거나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운송도구에서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2. 독자적으로 목적지 항을 조정하거나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

역중인 동식물을 처리하는 경우

3. 독자적으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포장을 뜯거나 동식물 검역 밀봉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4. 독자적으로 국경 통과 동물의 시체·배설물·갈래 재료 혹은 기타 폐기물을 버리거나, 운반수단 상의 하수·동식물성 폐기물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리한 경우

제61조 본 법 제17조, 제32조에 규정한 등록등기가 되어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을 생산·가공·보관하는 단위가 수출입하는 상기 물품의 검역 불합격되어 본 법 관련 규정에 의거 반송하거나 폐기 혹은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제62조 아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범죄성격이 현저히 경미하여 법에 의거 형벌처벌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2만 위안이상 5만 위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대한 동식물 전염행위를 야기시킨 경우
2. 동식물 검역증서·인장·표지·밀봉표식을 위조·변조한 경우

제63조 수출입 동식물 검역 훈증·소독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나 인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훈증이나 소독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그 위법상황을 살펴 업무자격을 취소한다.

제10장 부칙

제64조 검역법과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아래 용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 재료라 함은, 재배 혹은 야생에서 번식할 수 있는 식물 전체 혹은 그 부분품이다. 이는 가지·묘목(시험용 관목을 포함)·과실·종자·접목·접수·접지·잎·발아체·뿌리·줄기·껍질·구경·화분·세포배양 재료 등을 가리킨다.
2. 적재 용기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위해에 오염되기 쉬우며 수출입 화물의 수송

- 에 사용되는 용기, 즉 광주리·상자·통·케이스 등을 가리킨다.
3. 기타 유해 생물이라 함은, 동물 전염병·기생충과 식물 위험성 병·벌레·오염된 풀 이외의 각종 위해한 동식물의 생물유기체·병원 미생물 및 연체류·설치류·진드기류·다족충류 동물과 위험성 세균의 중간 기생주·매개체 생물 등을 가리킨다.
 4. 검역증서라 함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건강 혹은 위생상태에 관한 법률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다. 즉 <동물검역증서>, <식물검역증서>, <동물건강증서>, <수의위생증서>, <훈증/소독증서> 등이 있다.

제65조 수출입 되는 동식물·동식물제품·기타 검역물품의 검역 혹은 규정에 의한 훈증·소독·반송·폐기 등의 처리로 소요된 비용 혹은 이로 인해 야기된 손실은 화주·소유자 혹은 대리인 부담이다.

제66조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에 의거 검역 실시를 위해 샘플을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실험 잔여품은 화주·소유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된 기한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해안 동식물검역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무역성 동물제품의 출국 검역기관은 국무원이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68조 본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의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第一章 总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以下简称进出境动植物检疫法)的规定,制定本条例°

第二条

下列各物,依照进出境动植物检疫法和本条例的规定实施检疫:

- (一)进境、出境、过境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
- (二)装载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装载容器、包装物、铺垫材料;
- (三)来自动植物疫区的运输工具;
- (四)进境拆解的废旧船舶;
- (五)有关法律、行政法规、国际条约规定或者贸易合同约定应当实施进出境动植物检疫的其他货物、物品°

第三条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进出境动植物检疫工作°

中华人民共和国动植物检疫局(以下简称国家动植物检疫局)统一管理全国进出境动植物检疫工作,收集国内外重大动植物疫情,负责国际间进出境动植物检疫的合作与交流°

国家动植物检疫局在对外开放的口岸和进出境动植物检疫业务集中的地点设立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依照进出境动植物检疫法和本条例的规定,实施进出境动植物检疫°

第四条

国(境)外发生重大动植物疫情并可能传入中国时,根据情况采取下列紧急预防措施:

- (一)国务院可以对相关边境区域采取控制措施,必要时下令禁止来自动植物疫区的运输工具进境或者封锁有关口岸;
- (二)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可以公布禁止从动植物疫情流行的国家和地区进境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名录;

(三)有关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对可能受病虫害污染的本条例第二条所列进境各物采取紧急检疫处理措施；

(四)受动植物疫情威胁地区的地方人民政府可以立即组织有关部门制定并实施应急方案，同时向上级人民政府和国家动植物检疫局报告°

邮电、运输部门对重大动植物疫情报告和送检材料应当优先传送°

第五条

享有外交、领事特权与豁免的外国机构和人员公用或者自用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进境，应当依照进出境动植物检疫法和本条例的规定实施检疫；口岸动植物检疫机关查验时，应当遵守有关法律的规定°

第六条

海关依法配合口岸动植物检疫机关，对进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实行监管，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会同海关总署制定°

第七条

进出境动植物检疫法所称动植物疫区和动植物疫情流行的国家与地区的名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确定并公布°

第八条

对贯彻执行进出境动植物检疫法和本条例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二章 检疫审批

第九条

输入动物、动物产品和进出境动植物检疫法第五条第一款所列禁止进境物的检疫审批，由国家动植物检疫局或者其授权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负责°

输入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的检疫审批，由植物检疫条例规定的机关负责°

第十条

符合下列条件的，方可办理进境检疫审批手续：

- (一)输出国家或者地区无重大动植物疫情；
- (二)符合中国有关动植物检疫法律、法规、规章的规定；

(三)符合中国与输出国家或者地区签订的有关双边检疫协定(含检疫协议、备忘录等,下同)°

第十一条

检疫审批手续应当在贸易合同或者协议签订前办妥°

第十二条

携带、邮寄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进境的,必须事先提出申请,办理检疫审批手续;因特殊情况无法事先办理的,携带人或者邮寄人应当在口岸补办检疫审批手续,经审批机关同意并经检疫合格后方准进境°

第十三条

要求运输动物过境的,货主或者其代理人必须事先向国家动植物检疫局提出书面申请,提交输出国家或者地区政府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疫情证明、输入国家或者地区政府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准许该动物进境的证件,并说明拟过境的路线,国家动植物检疫局审查同意后,签发(动物过境许可证)°

第十四条

因科学研究等特殊需要,引进进出境动植物检疫法第五条第一款所列禁止进境物的,办理禁止进境物特许检疫审批手续时,货主、物主或者其代理人必须提交书面申请,说明其数量、用途、引进方式、进境后的防疫措施,并附具有关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署的意见°

第十五条

办理进境检疫审批手续后,有下列情况之一的,货主、物主或者其代理人应当重新申请办理检疫审批手续:

- (一)变更进境物的品种或者数量的;
- (二)变更输出国家或者地区的;
- (三)变更进境口岸的;
- (四)超过检疫审批有效期的°

第三章 进境检疫

第十六条

进出境动植物检疫法第十一条所称中国法定的检疫要求，是指中国的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动植物检疫要求。

第十七条

国家对向中国输出动植物产品的国外生产、加工、存放单位，实行注册登记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第十八条

输入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在进境前或者进境时向进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报检。属于调离海关监管区检疫的，运达指定地点时，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通知有关口岸动植物检疫机关。属于转关货物的，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在进境时向进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申报；到达指运地时，应当向指运地口岸动植物检疫机关报检。

输入种畜禽及其精液、胚胎的，应与在进境前30日报检；输入其他动物的，应当在进境前15日报检；输入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的，应当在进境前7日报检。

动植物性包装物、铺垫材料进境时，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及时向口岸动植物检疫机关申报；动植物检疫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对申报物实施检疫。

前款所称动植物性包装物、铺垫材料，是指直接用作包装物、铺垫材料的动物产品和植物、植物产品。

第十九条

向口岸动植物检疫机关报检时应当填写报检单，并提交输出国家或者地区政府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检疫证书、产地证书和贸易合同、信用证、发票等单证；依法应当办理检疫审批手续的，还应当提交检疫审批单。无输出国家或者地区政府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有效检疫证书，或者未依法办理检疫审批手续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作退回或者销毁处理。

第二十条

输入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运达口岸时，检疫人员可以到运输工具上和货物现场实施检疫，核对货证是否相符，并可以按照规定采取样品。承运人、货主或者其代理人应当向检疫人员提供装载清单和有关资料。

第二十一条

装载动物的运输工具抵达口岸时，上下运输工具或者接近动物的人员，应当接受口岸动植物检疫机关实施的防疫消毒，并执行其采取的其他现场预防措施。

第二十二条

检疫人员应当按照下列规定实施现场检疫：

(一)动物：检查有无疫病的临床症状。发现疑似感染传染病或者已死亡的动物时，在货主或者押运人的配合下查明情况，立即处理。动物的铺垫材料、剩余饲料和排泄物等，由货主或者其代理人在检疫人员的监督下，作除害处理。

(二)动物产品：检查有无腐败变质现象，容器、包装是否完好。符合要求的，允许卸离运输工具。发现散包、容器破裂的，由货主或者其代理人负责整理完好，方可卸离运输工具。根据情况，对运输工具的有关部位及装载动物产品的容器、外表包装、铺垫材料、被污染场地等进行消毒处理。需要实施实验室检疫的，按照规定采取样品。对易滋生植物害虫或者混藏杂草种子的动物产品，同时实施植物检疫。

(三)植物、植物产品：检查货物和包装物有无病虫害，并按照规定采取样品。发现病虫害并有扩散可能时，及时对该批货物、运输工具和装卸现场采取必要的防疫措施。对来自动物传染病疫区或者易带动物传染病和寄生虫病原体并用作动物饲料的植物产品，同时实施动物检疫。

(四)动植物性包装物、铺垫材料：检查是否携带病虫害、混藏杂草种子、沾带土壤，并按照规定采取样品。

(五)其他检疫物：检查包装是否完好及是否被病虫害污染。发现破损或者被病虫害污染时，作除害处理。

第二十三条

对船舶、火车装运的大宗动植物产品，应当就地分层检查；限于港口、车站的存放条件，不能就地检查的，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同意，也可以边卸载边疏运，将动植物产品运往指定的地点存放。在卸货过程中经检疫发现疫情时，应当立即停止卸货，由货主或其代理人按照口岸动植物检疫机关的要求，对已卸和未卸货物作除害处理，并采取防止疫情扩散的措施；对被病虫害污染的装卸工具和场地，也应当作除害处理。

第二十四条

输入种用大中家畜的，应当在国家动植物检疫局设立的动物隔离检疫场所隔离检疫45日；输入其他动物的，应当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指定的动物隔离检疫场所隔离检疫30日。动物隔离检疫场所管理办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第二十五条

进境的同一批动植物产品分港卸货时，口岸动植物检疫机关只对本港卸下的货物进行检疫，先期卸货港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应当将检疫及处理情况及时通知其他分卸港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需要对外出证的，由卸毕港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汇总后统一出具检疫证书。

在分卸港实施检疫中发现疫情并必须进行船上熏蒸、消毒时，由该分卸港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统一出具检疫证书，并及时通知其他分卸港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

第二十六条

对输入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按照中国的国家标准、行业标准以及国家动植物检疫局的有关规定实施检疫。

第二十七条

输入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经检疫合格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在报关单上加盖印章或者签发《检疫放行通知单》；需要调离进境口岸海关监管区检疫的，由进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检疫调离通知单》。货主或者其代理人凭口岸动植物检疫机关在报关单上加盖的印章或者签发的《检疫放行通知单》、《检疫调离通知单》办理报关、运递手续。海关对输入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凭口岸动植物检疫机关在报关单上加盖的印章或者签发的《检疫放行通知单》、《检疫调离通知单》验放。运输、邮电部门凭单运递，运递期间国内其他检疫机关不再检疫。

第二十八条

输入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经检疫不合格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检疫处理通知单)，通知货主或者其代理人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的监督和技术指导下，作除害处理；需要对外索赔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出具检疫证书。

第二十九条

国家动植物检疫局根据检疫需要，并商输动植物、动植物产品国家或者地区政府有关机关同意，可以派检疫人员进行预检、监装或者产地疫情调查。

第三十条

海关、边防等部门截获的非法进境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应当就近交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检疫。

第四章 出境检疫

第三十一条

货主或者其代理人依法办理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出境报检的手续时，应当提供贸易合同或者协议。

第三十二条

对输入国要求中国对向其输出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生产、加工、存放单位注册登记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实行注册登记，并报国家动植物检疫局备案。

第三十三条

输出动物，出境前需经隔离检疫的，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指定的隔离场所检疫。输出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在仓库或者货场实施检疫；根据需要，也可以在生产、加工过程中实施检疫。

待检出境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应当数量齐全，包装完好，堆放整齐，唛头标记明显。

第三十四条

输出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检疫依据：

- (一)输入国家或者地区和中国有关动植物检疫规定；
- (二)双边检疫协定；
- (三)贸易合同中订明的检疫要求。

第三十五条

经启运地口岸动植物检疫机关检疫合格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运达出境口岸时，按照下列规定办理：

- (一)动物应当经出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临床检疫或者复检；
- (二)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从启运地随原运输工具出境的，由出境口岸动植

物检疫机关验证放行；改换运输工具出境的，换证放行；

(三)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到达出境口岸后拼装的，因变更输入国家或者地区而有不同检疫要求的，或者超过规定的检疫有效期的，应当重新报检。

第三十六条

输出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经启运地口岸动植物检疫机关检疫合格的，运往出境口岸时，运输、邮电部门凭启运地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的检疫单证运递，国内其他检疫机关不可检疫。

第五章 过境检疫

第三十七条

运输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过境(含转运，下同)的，承运人或者押运人应当持货运单和输出国家或者地区政府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证书，向进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报检；运输动物过境的，还应当同时提交国家动植物检疫局签发的《动物过境许可证》。

第三十八条

过境动物运达进境口岸时，由进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对运输工具、容器的外表进行消毒并对动物进行临床检疫，经检疫合格的，准予过境。进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派检疫人员监运至出境口岸，出境口岸动植物检疫机关不再检疫。

第三十九条

装载过境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运输工具和包装物、装载容器必须完整。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检查，发现运输工具或者包装物、装载容器有可能造成途中散漏的，承运人或者押运人应当按照口岸动植物检疫机关的要求，采取密封措施；无法采取密封措施的，不准过境。

第六章 携带、邮寄物检疫

第四十条

携带、邮寄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进境，未依法办理检疫审批手续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作退回或者销毁处理。邮件作退回处理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在邮件及

发递单上批注退回原因；邮件作销毁处理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通知单，通知寄件人。

第四十一条

携带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进境的，进境时必须向海关申报并接受口岸动植物检疫机关检疫。海关应当将申报或者查获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及时交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检疫。未经检疫的，不得携带进境。

第四十二条

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在港口、机场、车站的旅客通道、行李提取处等现场进行检查，对可能携带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而未申报的，可以进行查询并抽检其物品，必要时可以开包(箱)检查。

旅客进出境检查现场应当设立动植物检疫台位和标志。

第四十三条

携带动物进境的，必须持有输出动物的国家或者地区政府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检疫证书，经检疫合格后放行；携带犬、猫等宠物进境的，还必须持有疫苗接种证书。没有检疫证书、疫苗接种证书的，由口岸动植物检验检疫机关作限期退回或者没收销毁处理。作限期退回处理的，携带人必须在规定的时间内持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的截留凭证，领取并携带出境；逾期不领取的，作自动放弃处理。

携带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进境，经现场检疫合格的，当场放行；需要作实验室检疫或者隔离检疫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截留凭证。截留检疫合格的，携带人持截留凭证向口岸动植物检疫机关领回；逾期不领回的，作自动放弃处理。

禁止携带、邮寄进出境动植物检疫法第二十九条规定的名录所列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进境。

第四十四条

邮寄进境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在国际邮件互换局(含国际邮件快速公司及其他经营国际邮件的单位，以下简称邮局)实施检疫。邮局应当提供必要的工作条件。

经现场检疫合格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加盖检疫放行章，交邮局运递。需要作实验室检疫或者隔离检疫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应当向邮局办理交接手续；检疫合格的，加

盖检疫放行章，交邮局运递°

第四十五条

携带° 邮寄进境的动植物° 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经检疫不合格又无有效方法作除害处理的，作退回或者销毁处理，并签发《检疫处理通知单》交携带人° 寄件人°

第七章 运输工具检疫

第四十六条

口岸动植物检疫机关对来自动植物疫区的船舶° 飞机° 火车，可以登船° 登机° 登车实施现场检疫° 有关运输工具负责人应当接受检疫人员的询问并在询问记录上签字，提供运行日志和装载货物的情况，开启舱室接受检疫°

口岸动植物检疫机关应当对前款运输工具可能隐藏病虫害的餐车° 配餐间° 厨房° 储藏室° 食品舱等动植物产品存放° 使用场所和泔水° 动植物性废弃物的存放场所以及集装箱箱体等区域或者部位，实施检疫；必要时，作防疫消毒处理°

第四十七条

来自动植物疫区的船舶° 飞机° 火车，经检疫发现有进出境动植物检疫法第十八条规定的名录所列病虫害的，必须作熏蒸° 消毒或者其他除害处理，发现有禁止进境的动植物° 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必须作封存或者销毁处理；作封存处理的，在中国境内停留或者运行期间，未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许可，不得启封动用° 对运输工具上的泔水° 动植物性废弃物及其存放场所° 容器，应当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的监督下作除害处理°

第四十八条

来自动植物疫区的进境车辆，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作防疫消毒处理° 装载进境动植物° 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车辆，经检疫发现病虫害的，连同货物一并作除害处理° 装运供应香港° 澳门地区的动物的回空车辆，实施整车防疫消毒°

第四十九条

进境拆解的废旧船舶，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实施检疫° 发现病虫害的，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监督下作除害处理° 发现有禁止进境的动植物° 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的监督下作销毁处理°

第五十条

来自动植物疫区的进境运输工具经检疫或者经消毒处理合格后，运输工具负责人或者其代理人要求出证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签发《运输工具检疫证书》或者《运输工具消毒证书》。

第五十一条

进境、过境运输工具在中国境内停留期间，交通员工和其他人员不得将所装载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带离运输工具；需要带离时，应当向口岸动植物检疫机关报检。

第五十二条

装载动物出境的运输工具，装载前应当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监督下进行消毒处理。

装载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出境的运输工具，应当符合国家有关动植物防疫和检疫的规定。发现危险性病虫害或者超过规定标准的一般性病虫害的，作除害处理后方可装运。

第八章 检疫监督

第五十三条

国家动植物检疫局和口岸动植物检疫机关对进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的生产、加工、存放过程，实行检疫监督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第五十四条

进出境动物和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需要隔离饲养、隔离种植的，在隔离期间，应当接受口岸动植物检疫机关的检疫监督。

第五十五条

从事进出境动植物检疫熏蒸、消毒处理业务的单位和人员，必须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考核合格。

口岸动植物检疫机关对熏蒸、消毒工作进行监督、指导，并负责出具熏蒸、消毒证书。

第五十六条

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根据需要,在机场、港口、车站、仓库、加工厂、农场等生产、加工、存放进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场所实施动植物疫情监测,有关单位应当配合。

未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许可,不得移动或者损坏动植物疫情监测器具。

第五十七条

口岸动植物检疫机关根据需要,可以对运载进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运输工具、装载容器加施动植物检疫封识或者标志;未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许可,不得开拆或者损毁检疫封识、标志。

动植物检疫封识和标志由国家动植物检疫局统一制发。

第五十八条

进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装载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装载容器、包装物,运往保税区(含保税工厂、保税仓库等)的,在进境口岸依法实施检疫;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实施检疫监督;经加工复运出境的,依照进出境动植物检疫法和本条例有关出境检疫的规定办理。

第九章 法律责任

第五十九条

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处5000元以下的罚款:

(一)未报检或者未依法办理检疫审批手续或者未按检疫审批的规定执行的;

(二)报检的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与实际不符的。有前款第(二)项所列行为,已取得检疫单证的,予以吊销。

第六十条

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处3000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一)未经口岸动植物检疫机关许可擅自将进境、过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卸离运输工具或者运递的;

(二)擅自调离或者处理在口岸动植物检疫机关指定的隔离场所中隔离检疫的动植物的;

(三)擅自开拆过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包装，或者擅自开拆、损毁动植物检疫封识或者标志的；

(四)擅自抛弃过境动物的尸体、排泄物、铺垫材料或者其他废弃物，或者未按规定处理运输工具上的泔水、动植物性废弃物的。

第六十一条

依照本条例第十六条、第三十二条的规定注册登记的生产、加工、存放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的单位，进出境的上述物品经检疫不合格的，除依照本条例有关规定作退回、销毁或者除害处理外，情节严重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注销注册登记。

第六十二条

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或者犯罪情节显著轻微依法不需要判处刑罚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 (一)引起重大动植物疫情的；
- (二)伪造、变造动植物检疫单证、印章、标志、封识的。

第六十三条

从事进出境动植物检疫熏蒸、消毒处理业务的单位和人员，不按照规定进行熏蒸和消毒处理的，口岸动植物检疫机关可以视情节取消其熏蒸、消毒资格。

第十章 附则

第六十四条

进出境动植物检疫法和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一)“植物种子、种苗及其他繁殖材料”，是指栽培、野生的可供繁殖的植物全株或者部分，如植株、苗木(含试管苗)、果实、种子、砧木、接穗、插条、叶片、芽体、块根、块茎、鳞茎、球茎、花粉、细胞培养材料等；

(二)“装载容器”，是指可以多次使用、易受病虫害污染并用于装载进出境货物的容器，如笼、箱、桶、筐等；

(三)“其他有害生物”，是指动物传染病、寄生虫病和植物危险性病、虫、杂草以外的各种为害动植物的生物有机体、病原微生物，以及软体类、啮齿类、鳞类、多足虫类动物和昆

险性病虫的中间寄主、媒介生物等；

(四)“检疫证书”，是指动植物检疫机关出具的关于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健康或者卫生状况的具有法律效力的文件，如《动物检疫证书》、《植物检疫证书》、《动物健康证书》、《兽医卫生证书》、《熏蒸/消毒证书》等。

第六十五条

对进出境动植物、动植物产品和其他检疫物实施检疫或者按照规定作熏蒸、消毒、退回、销毁等处理所需费用或者招致的损失，由货主、物主或者其代理人承担。

第六十六条

口岸动植物检疫机关依法实施检疫，需要采取样品时，应当出具采样凭单；验余的样品，货主、物主或者其代理人应当在规定的期限内领回；逾期不领回的，由口岸动植物检疫机关按照规定处理。

第六十七条

贸易性动物产品出境的检疫机关，由国务院根据情况规定。

第六十八条

本条例自1997年1月1日起施行。

《참고자료 2》

※ 동 자료는 나한송(羅漢松) 수입 시 중국정부에서 적용하는 세부사항으로 기타식물 수입 시 적용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참고자료용으로 활용)

중국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질검동합[2011]88호

나한송(罗汉松) 식물 수입 관련 검역조치에 관한 공고 및 세부사항 통지

각 직속 검험검역국 :

외래식물의 유해생물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 나한송의 검역조치 규범호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10. 11. 23 중국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는 《나한송식물 수입검역조치에 대한 요구 공고》(2010년 제132호)를 반포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1. 나한송을 수입하기 이전에 수입상은 반드시 임업검역부에서 반포한 《임목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 사용 검역심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심사표 '검역요구'란에 '흙 제외'일 경우 수입하는 나한송의 뿌리는 반드시 라근(裸根)형태여야 하며 '흙 제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입상은 사전에 질검총국에 수입재배 매개체 품질검역심사를 신청하여 나한송의 뿌리 외 포장재배매질을 사용해야 한다.
2. 수입 나한송은 질검총국이 비준하는 특정항구로 수입해야 한다. 특정항구는 수입식물 종모지정 수입항구 자격 이외에 나한송 검사 및 해충구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소 여건도 갖춰야 한다(첨부문서1 참조). 수입항구가 상술한 여건을 충족시키면 질검총국에 신청하여 심사 및 비준을 받은 후에 나한송 수입을 할 수 있다.
3. 대중수출 나한송은 질검총국이 인가하는 생산기업에서 수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출국

가 혹은 지역당국, 혹은 수출업체의 요청에 응하여 질검총국은 식물검역기술인원을 파견하여 대중수출 나한송의 해외 생산업체를 평가하여 해외예비검사를 실시한다. 평가와 예비검사 합격한 후 수출업체는 중국으로 나한송을 수출할 수 있다. 해외평가 및 예비검사 관련 요구는 첨부문서를 참조(첨부문서 2 참조)

4. 나한송이 지정된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원은 관련증빙, 증서, 라벨심사 및 각 나한송에 대하여 꼼꼼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역원은 관련업체를 지도 감독하여 수입 나한송 검역 및 해충구제 기술방안(첨부문서3 참조)에 따라 살충제 투여, 토양처리, 훈증처리 등 검역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5. 수입 나한송은 중국 수입식물 검역성 유해생물을 지니면 안 된다. 전염병 상황 나포 및 위험평가를 결합하여 검역원은 해외예비검사, 수입검사, 분리검송 등 과정에서 전파되기 쉬운 유해생물(첨부문서4 참조)에 대해 관심을 지녀야 된다.
6. 과도적인 조치로서 '11. 7. 1 이전에 대만 나한송은 계속 질검총국의 관련문서대로 시험 방식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락한다
7. 기타 식물검역조치요구는 제132호 공고를 참조한다. 시행과정 상 문제가 발생하면 적기에 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첨 부 : 나한송 국외심사 예비검사 기본요구

《참고자료 3》

나한송 국외심사 예비검사 기본요구

1. 나한송 국외생산 공급업체가 갖춰야 하는 여건

- 1.1 유해생물 검측통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벽한 품질관리체계를 구비해야 함
- 1.2 수출수량에 상응하는 격리 육묘장(苗圃)을 구비해야하며, 격리 육묘장 내에 식물위생상태가 양호하고 중국이 주시하는 검역성(檢疫性) 유해생물이 없어야 함
- 1.3 전문적인 식물보호 기술인원을 배치하여 나한송의 재배, 격리, 수출, 선적 등 과정에서 병충해의 검측과 예방을 담당하게 해야 함
- 1.4 나한송의 원산지, 육묘장 진출입과 해충구제 처리 등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 함
- 1.5 나한송, 토양 및 재배매개체 해충구제에 필요한 약제, 시설 및 기기를 구비해야 함

2. 국외심사 예비검사의 주요 요구

- 2.1 국외 생산 공급업체가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시키는지 심사
- 2.2 나한송이 격리된 육묘장(苗圃)에 심은 후 6개월이 되는 지를 확인하고 나한송에 중국이 주시하는 유해생물이 지녔는지를 검사함. 중점적으로 식물의 가지, 줄기, 잎, 눈(芽眼), 껍질 등 부위에 해충(벌레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을 포함), 충영(虫癭), 연체동물, 진드기류, 잡초종자 혹은 벌레구멍, 병반(病斑), 기형, 부패, 꽃잎과 곱팡이 등 이상이 있는 지 검사함. 필요 시 의심나는 샘플을 골라 실험실 검측을 실행하며, 육묘장 내 검역성 유해생물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육묘장의 나한송은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
- 2.3 각 나한송마다 표식을 걸어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라벨내용은 번호, 원산지, 육묘장 이식(移植)시간과 육묘장 명칭, 수출업체 등 정보가 있어야 함
- 2.4 나한송 뿌리에 묻어 있는 토양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함. 뿌리에 묻어 있는 흙덩어리의 좌우 직경이 50cm를 초과하면 안되고 뿌리를 감싸고 있는 상층부 흙 표면을 10cm 두께로 제거해야함. 살선충제, 살균제과 살충제 혼합약제로 처리한 후 합격한 재배 매개체 및 포장재로 감싸야 함. 그 밖에 나한송의 뿌리는 내흡수성 살충제로 약제처리를 해야 함.
- 2.5 오픈 톱 컨테이너로 나한송을 선적하고 위쪽에 방충망을 덮어야 하며, 방충망의 그물코

직경은 1.6mm보다는 작아야 함

3. 기타

관례에 따라 국외심사 및 예비검사 비용은 초청자가 부담하며, 초청자는 측정기구 제공, 교통수단 및 관련 인원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함

2012 임산물 해외시장동향
- 탈삼감, 밤, 표고버섯, 분재 -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조사참여 : 미국 - 뉴욕 aT센터(오형완 지사장)
 중국 - 베이징 aT센터(조학형 지사장)
 상하이 aT센터(전기찬 지사장) / 분재
 브라질 - 상파울루 Kotra무역관
 UAE - 두바이 Kotra무역관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 Kotra무역관
 총괄 - 식품수출정보팀
문 의 처 : 02) 6300-1394(윤미순)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자료실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게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 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